



여의도 테라스 원

Terrace One

설계자 | 박기성_KIRA | (주)원양건축사사무소

건축주 | (주)유수 홀딩스
감리자 | (주)원양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한미 글로벌

- 설계팀 : 김용표, 신재영, 윤서진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주)아이맥
 - 기계 / 기계소방 분야 : (주)삼신설계
 - 전기/통신/전기소방분야 : (주)협인
 - 토목 분야 : (주)한국지오 컨설턴트
 - 조경 분야 : (주)디알에이 디자인 그룹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주요용도 |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 5,541.00㎡

건축면적 | 616.31㎡ (증축분)

연면적 | 3844.06㎡ (증축분)

건폐율 | 11.12% (증축분)

용적률 | 48.22% (증축분)

규모 | 지하 2층, 지상 6층

구조 | 철근 콘크리트 / 철골조

주요마감재 |

- 외부 : THK1.5 예코탈STS (발색칼라) 시트, 골강판

- 내부 : 인테리어 마감

설계기간 | 2013. 02 ~ 2013.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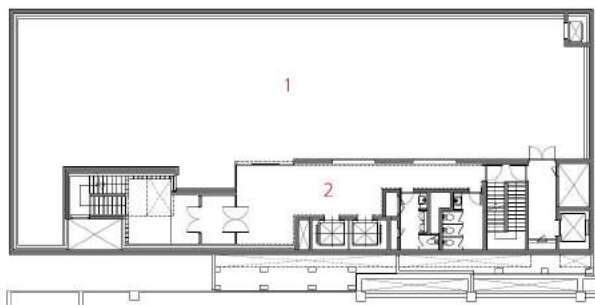
공사기간 | 2013. 09 ~ 2015. 09





배치도

0 3 6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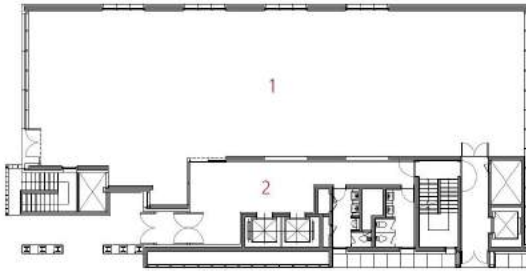


- 1. 일반음식점
- 2. 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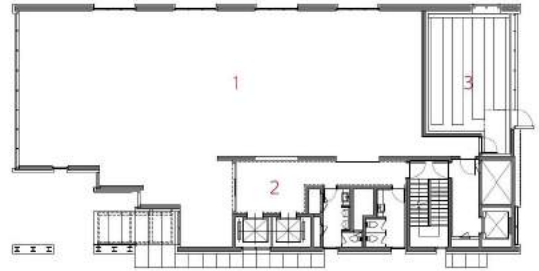
지하1층 평면도

0 1 3 6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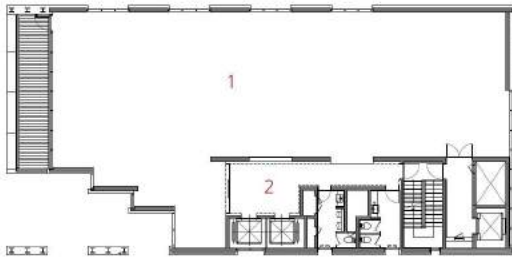
1. 일반음식점 2. 홀 3. 실외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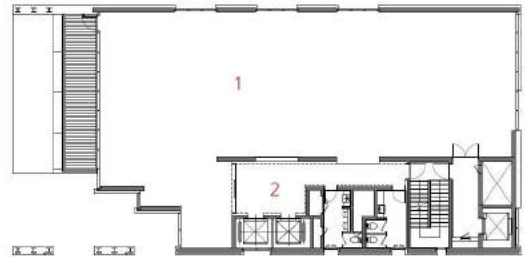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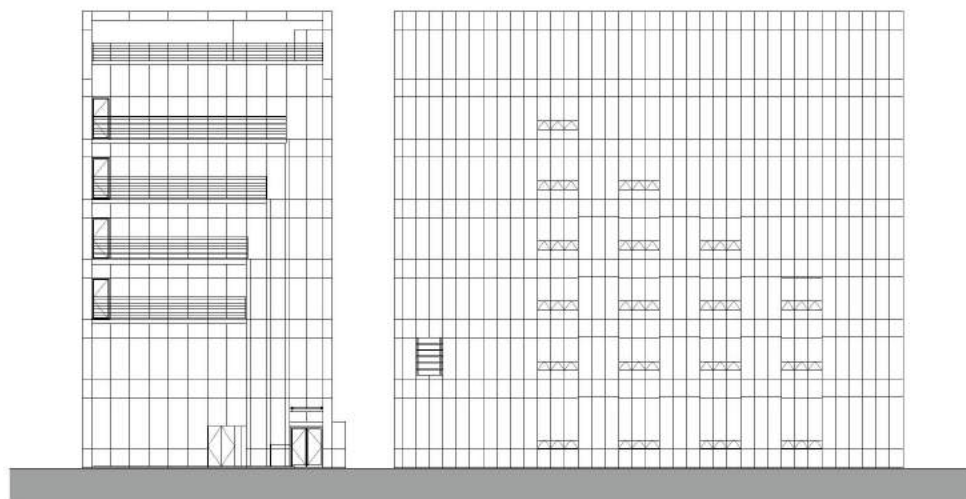
4층 평면도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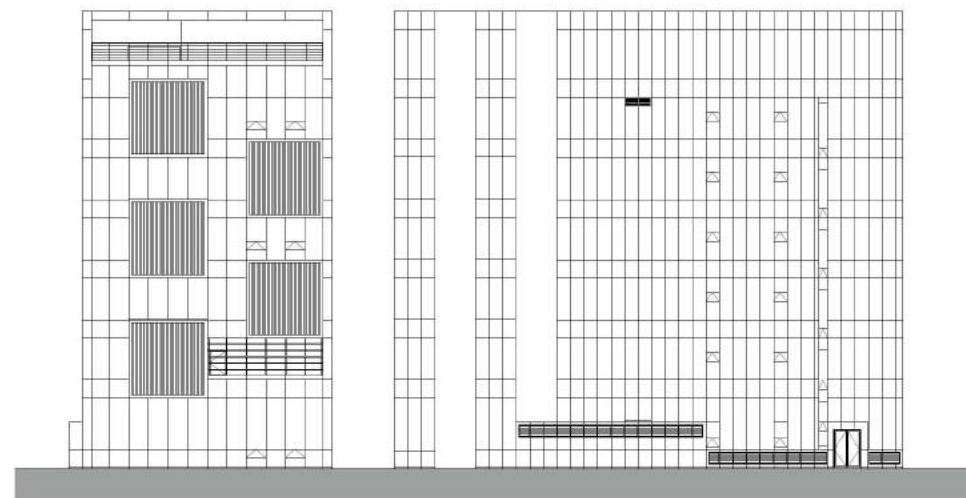


6층 평면도



정면도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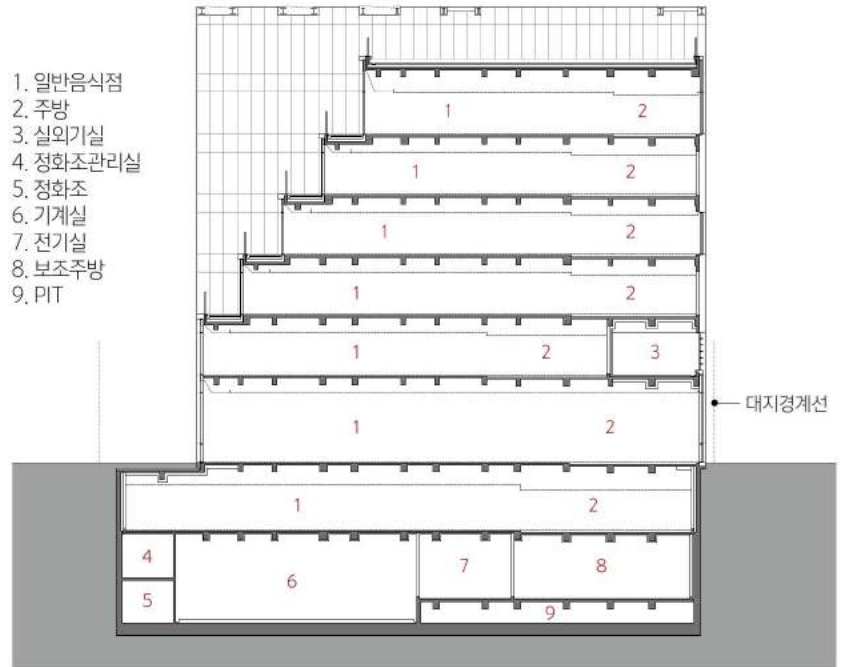


배면도

0 1 3 6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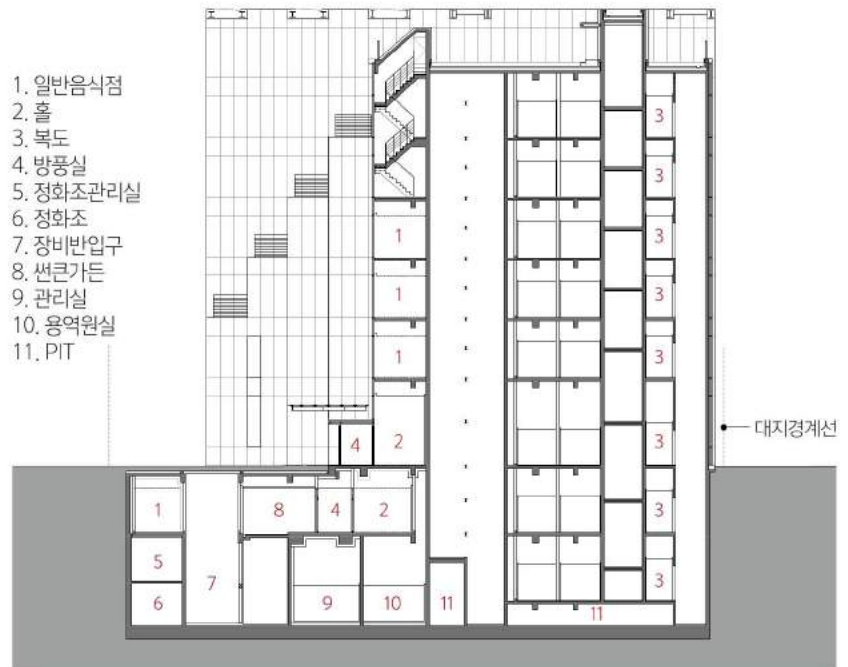
우측면도

1. 일반음식점
2. 주방
3. 실외기실
4. 정화조관리실
5. 정화조
6. 기계실
7. 전기실
8. 보조주방
9. PIT



단면도1

1. 일반음식점
2. 홀
3. 복도
4. 방풍실
5. 정화조관리실
6. 정화조
7. 장비반입구
8. 썬큰가든
9. 관리실
10. 용역원실
11. PIT



0 1 3 6m

단면도2

좁고 긴 대지의 상업성에 대한 고민

여의도의 오피스 건물사이 좁고 긴 공간에 상업시설을 계획하는 것으로 도로에 면한 부분이 좁게 구성되었다는 점과, 협소한 대지의 형상으로 상부로 적층되어야 하는 문제를 가진 상업시설이 가지는 상업성을 어떻게 극대화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층별로 적층된 건물의 경우 지층으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인지성이 떨어지게 되어 상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보행자의 시각에서 벗어난 상업시설이 가지는 상업적 한계성이다.

각 층별로 Set back된 형태를 제안하고 각층은 지층(보행자의 시각범위)에서 시작되어 각각의 층에서 마무리 되도록 제안한다. 이로써 상층부에 입주한 상업시설도 지면으로부터의 시각적 연계를 가지는 것을 기대한다.

Human Scale

대지 주변의 상황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으로 적절한 스케일의 외부공간이 필요해 보였다.

대형의 Mass로 구성된 주변의 건물들 사이의 외부공간에서(길가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스케일의 괴리감(거대한 건물과 대면했을 때의 위압감)으로 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적절한 규모의 외부공간의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각층별로 구성된 테라스 공간과 이를 감싸는 Cage 역할을 하는 프레임을 제안한다.

상업시설의 테라스로 외부공간을 구성하고 이 공간을 프레임으로 감싸도록 하여 외부에 직접 노출된 테라스 보다는 보호장치를 가지는 테라스로 구성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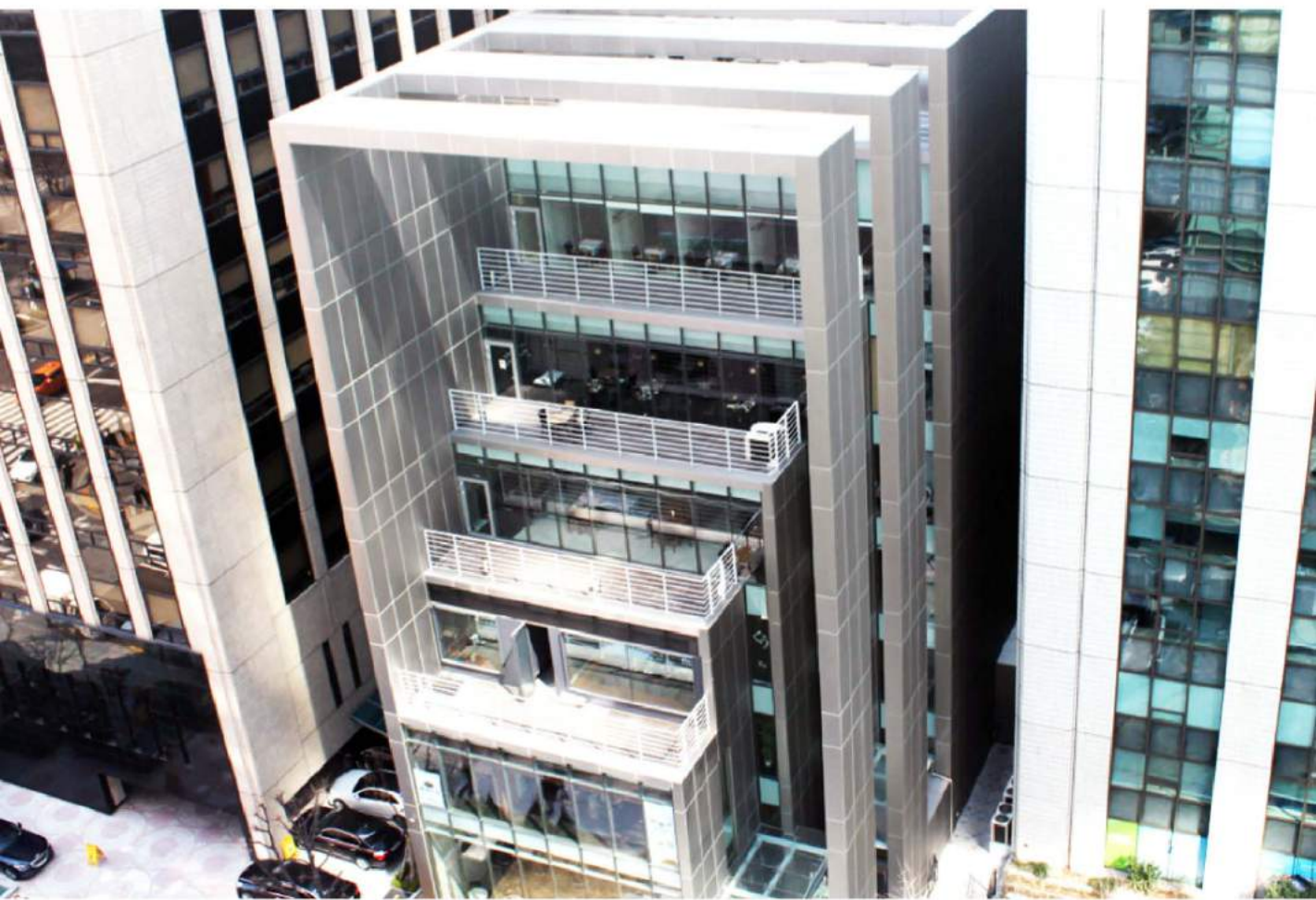
지역 명소 만들기

상업공간의 설계에서 주요한 요인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 공간을 각인 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다. 이는 어쩌면 상업공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요소일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층별로 구성된 테라스를 통해 단순히 독특한 건물의 형태로만이 아닌 행위가 담긴 풍경을 만들어 내고자 한다.















서울대학교 생명공학연구동

Seoul National Univ. Biotechnology Center

설계자 | 임진우_KIRA |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주 | 서울대학교
감리자 | 건축사사무소 삼원아트
시공사 | 올림건설주식회사

· 설계팀 : TL/PD : 모상진
DP : 백의현
STAFF : 원종호, 우소영, 정재선, 김동관, 김인기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주)센구조연구소
- 기계설비분야 : (주)H&C
- 전기/통신분야 : (주)정우종합기술
- 소방분야 : (주)남도 티이씨
- 조경 : JLA

대지위치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내 81동

주요용도 |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 3,895,659.00㎡

건축면적 | 1,649.85㎡

연면적 | 9,980.00㎡

건폐율 | 0.04%

용적률 | 0.20%

규모 | 지하2층, 지상6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

주요마감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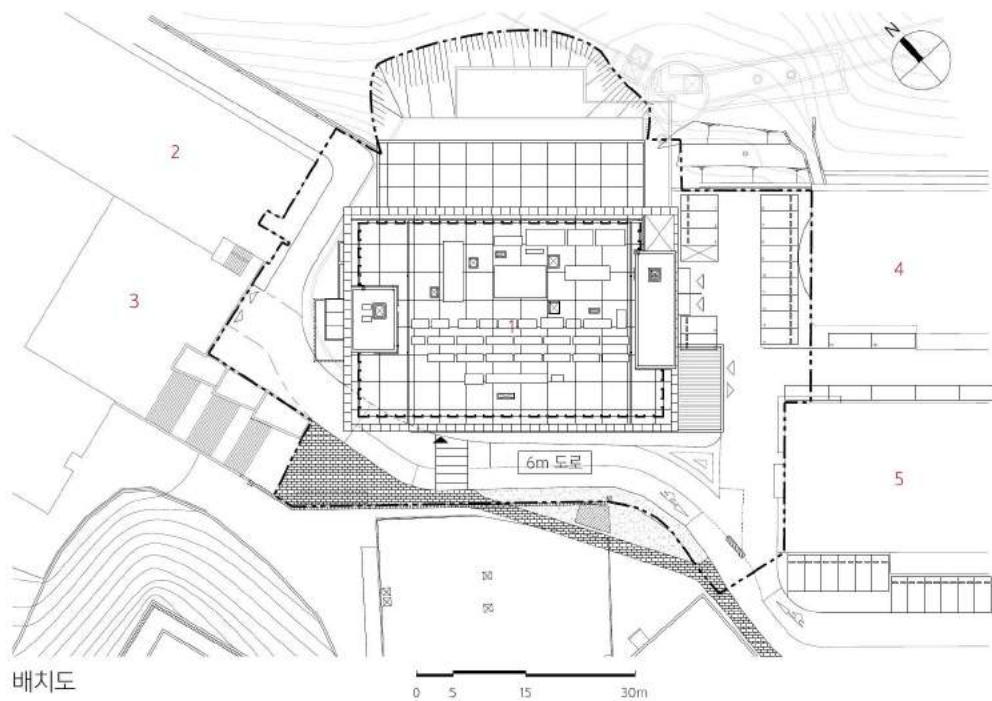
- 외부 : 노출콘크리트, 알루미늄도금강판,
THK24투명로이 복층유리, U-Glass
- 내부 : 비닐타일, 자기질타일, 아크릴페인트,
수성페인트

설계기간 | 2011. 07 ~ 2012.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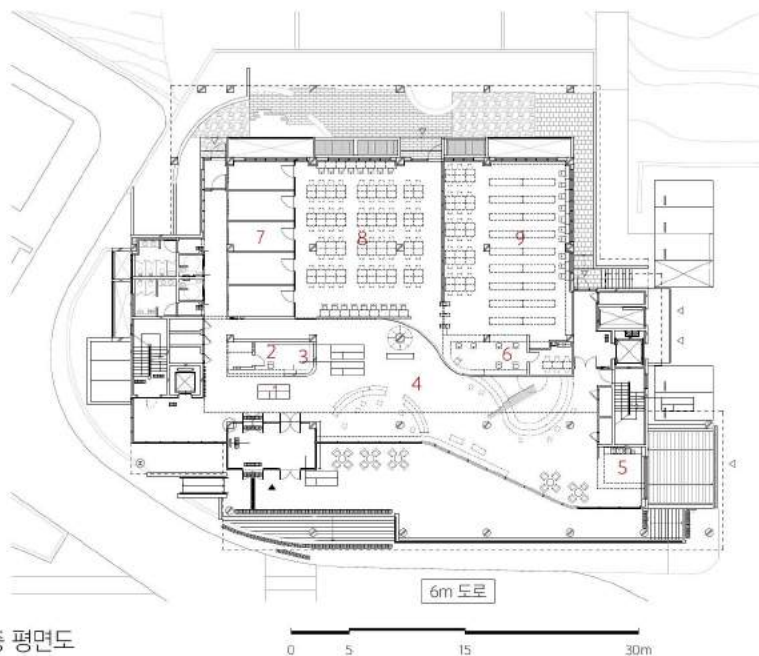
공사기간 | 2013. 03 ~ 2015. 05

사진 | 윤준환





1. 생명공학연구동
2. 기존 수의과대학
3. 수의과대학 외부광장
4. 기존 신림변전소
5. 기존 파워플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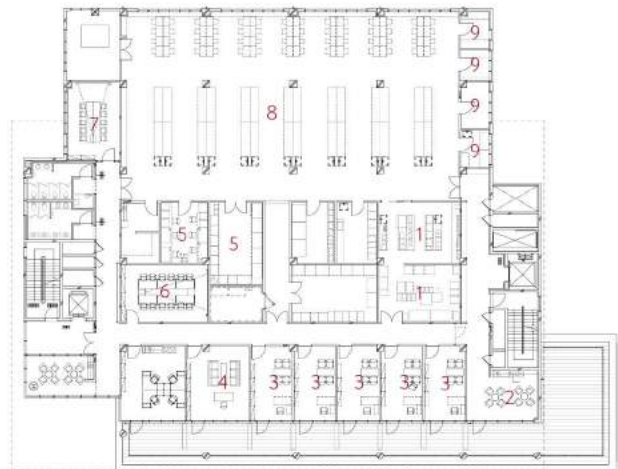
1. 로비
2. 안내실
3. 숙직실
4. 북카페
5. 북카페 주방
6. 사무실
7. 공동학습실
8. 열람실
9. 자료실

1. 교수연구실
2. 원장실
3. 프로젝트랩
4. 세미나실
5. 회의실
6. 다목적홀
7. WET LAB
8. 공용장비실
9. Dry Lab



2층 평면도

1. 공동기기실
2. 학생휴게실
3. 교수연구실
4. 원장실
5. 세포배양실
6. 회의실
7. 세미나실
8. 실험실
9. 분석실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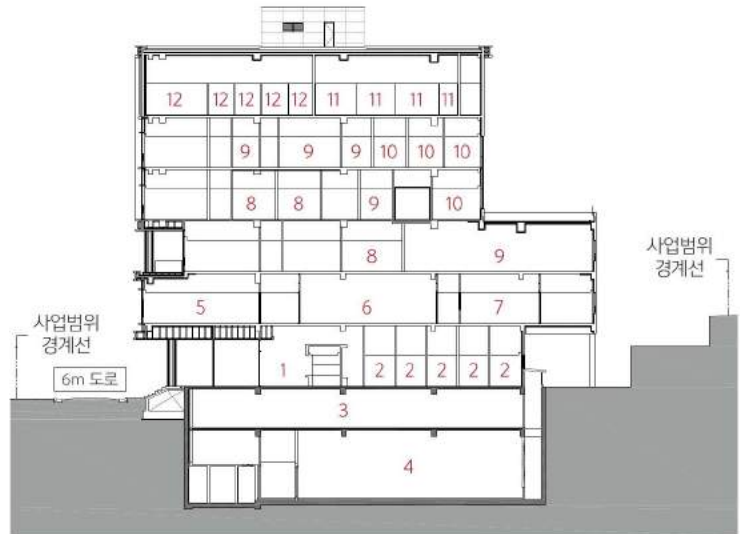
정면도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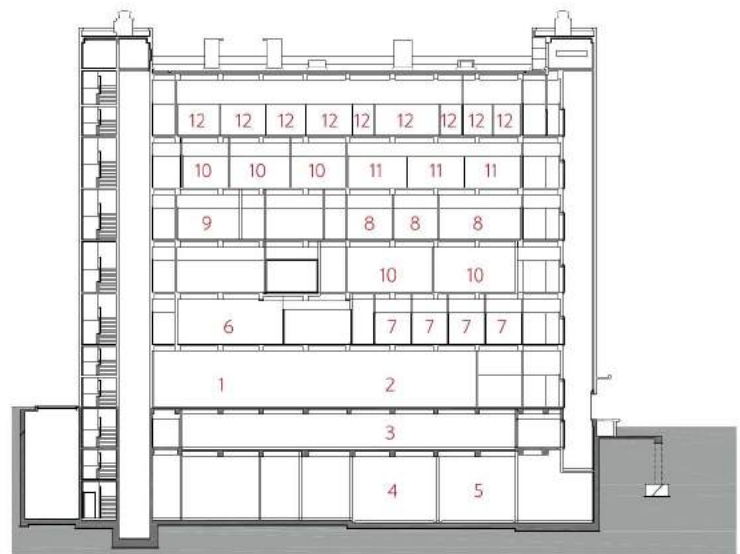


1. 로비
2. 공동학습실
3. 주차장
4. 전기실
5. 종합강의실
6. 다목적홀
7. WET LAB
8. 세포배양실
9. 실험실
10. 분석실
11. BSL3 실험실
12. 동물실험실



종단면도

1. 로비
2. 북카페
3. 주차장
4. 가스실
5. 기계실
6. 다목적홀
7. 교수연구실
8. 공동기기실
9. 세포배양실
10. 실험실
11. 청정실험실
12. 동물실험실



횡단면도



FLUX

생명공학연구동은 서울대학교 바이오공학의 활성화 및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수의과대학 캠퍼스의 다양한 문화가 소통하는 공간이 되고자 했다.

연구기관으로서의 Campus Icon,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에 대응이 가능한 Modular System, 자연과 함께 하는 쾌적한 연구환경을 위한 Vertical Land-scape, 캠퍼스의 문화와 소통하는 연구기관으로서 Community Space를 Design Issue로 정하고 발전되었다.

생명공학연구동의 저층부는 수의과대학의 축을 반영하여 부드러운 선형으로 캠퍼스 보행자로 하여금 시각적 개방감을 형성하고, 상층부의 떠 있는 사각형 volume을 통해 연구동만의 상징성을 갖고자 하였다.

서울대학교 캠퍼스에 주로 사용된 벽돌, 노출콘크리트, 석재, 압출성형시멘트패널과 대부분의 건물에 사용된 루버를 재해석하여 캠퍼스와 어울리고, 생명공학연구동으로서의 Identity를 갖기 위한 입면을 계획하였다.

저층부는 커튼월로 계획하여 내부의 카페테리아, 도서관과 시각적 개방감을 형성하고, 상층부의 교수연구실와 세미나실, 회의실 등은 일사차단 루버와 U-Glass를 통해 남서향의 일조가 차단되도록 계획하고, 수직적인 면과 선의 리듬감을 통해 생명공학연구동만의 생동감 있는 상징성을 갖도록 하였다.

















Concept

Campus Icon

정원상부와 연구기(관측소)의 상징성

Modular System

지하철, 버스, 자동차 등 다양한 연구시설

Community Space

연구기(관측소)와 연구기관



Project Floor Area Ratio Game

Project Floor Area Ratio Game

설계자 | 정웅식_KIRA | (주)온건축사사무소

건축주 | 이정현

감리자 | 김효선

시공사 | (주)남송종합건설

- 설계팀 : 김남수, 김혁기, 김민성, 정수지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주)오포스펠 엔지니어링
- 기계설비분야 : (주)금강DNS
- 전기분야 : (주)금강DNS

대지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644-61번지

주요용도 |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 142.0㎡

건축면적 | 78.03㎡

연면적 | 283.77㎡

건폐율 | 54.95%

용적률 | 199.84%

규모 | 지상5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주요마감재 |

- 외부 : 노출콘크리트 백색마감, 편칭메탈 절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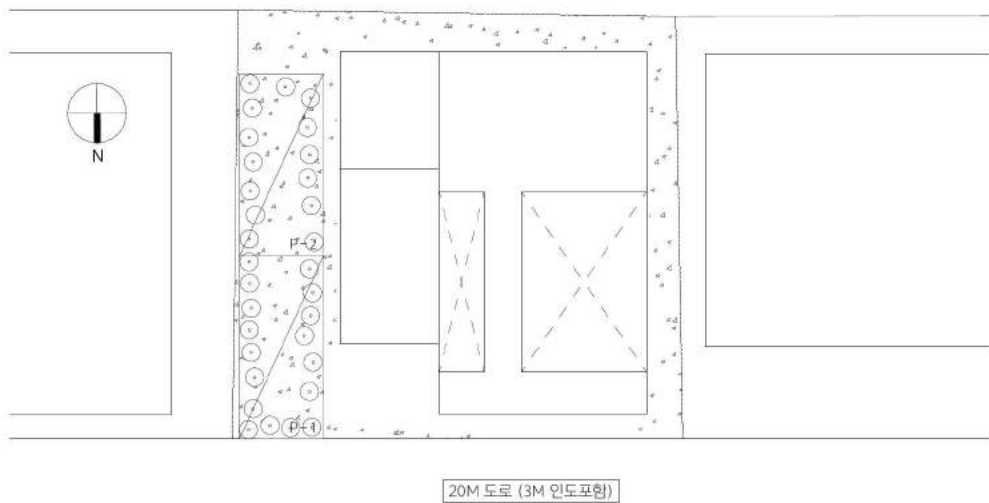
- 내부 : VP도장, THK20 미송목재

설계기간 | 2014. 07 ~ 2014.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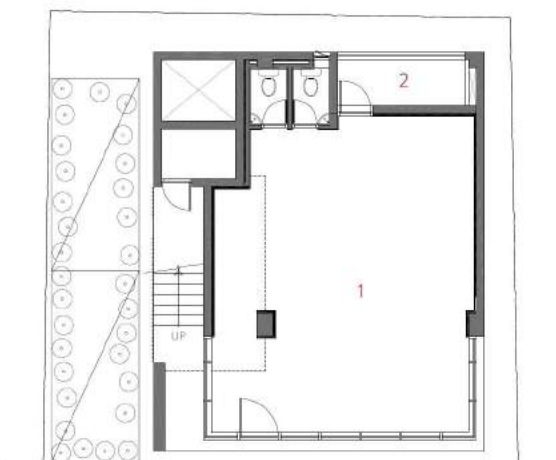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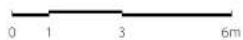
공사기간 | 2015. 03 ~ 2016. 03

사진 | 윤준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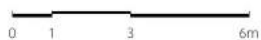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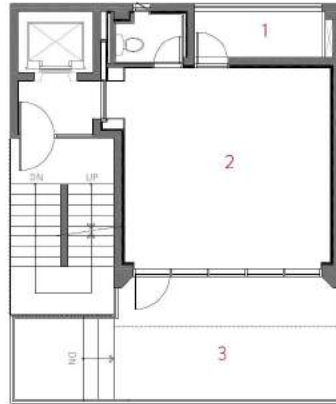


- 1. 근린생활시설
- 2. 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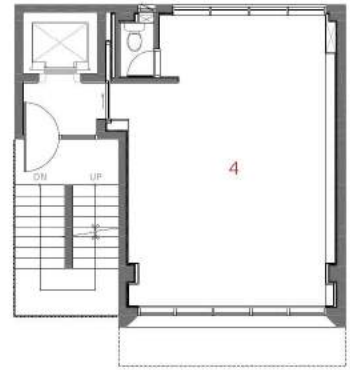
1층 평면도



1. 창고
2. 프로그램실
3. 야외데크
4. 관리샵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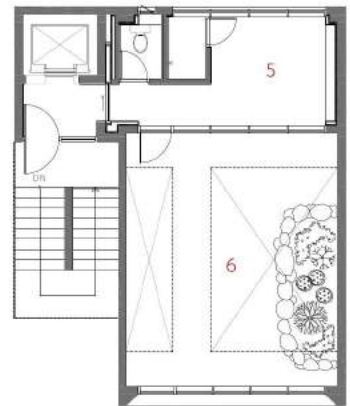


3층 평면도

1. 안내데스크
2. 대기실
3. 샤워실
4. 휴게실
5. VIP실
6. 하늘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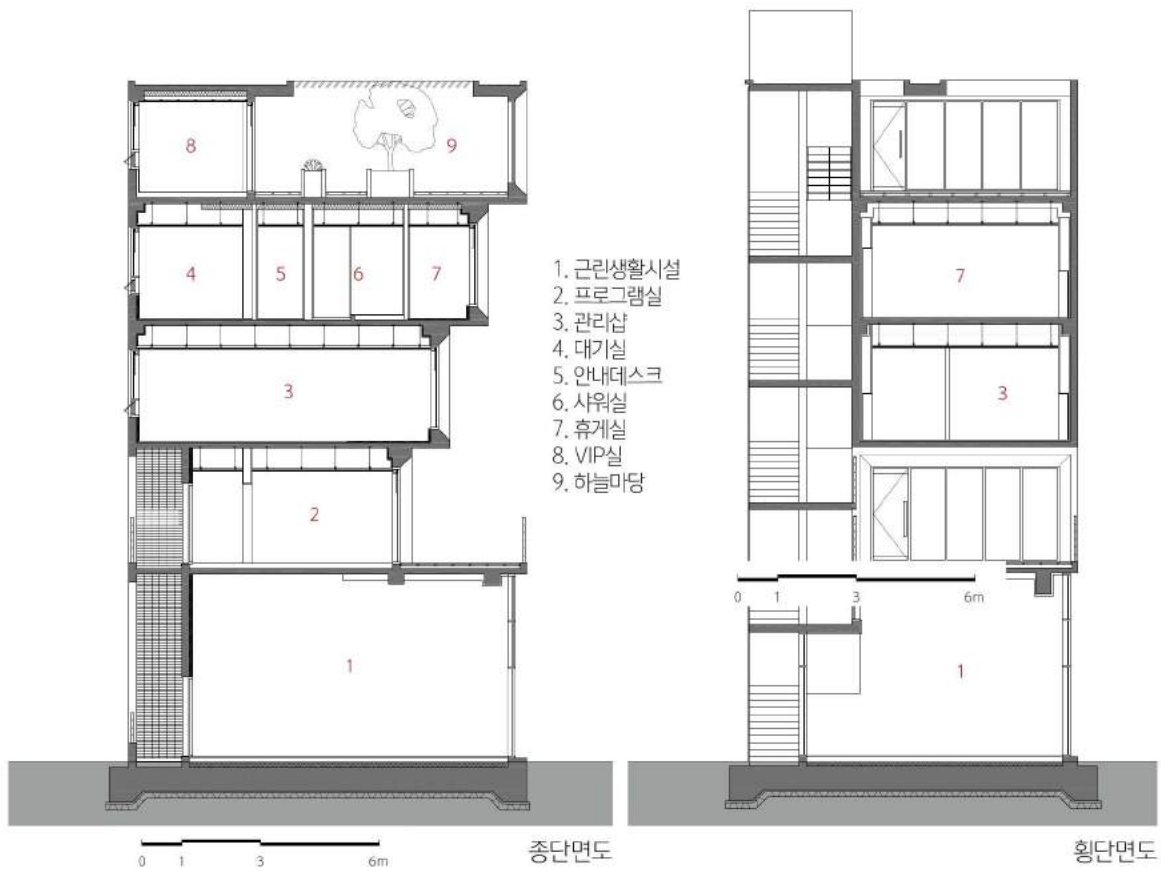


4층 평면도



5층 평면도





울산의 오래된 주택지역으로 이번 아파트 재개발(완공)로 인하여 북측으로 도로가 생겨서 상업적 가치를 가지게 된 곳이다. 건축주는 이곳에 있는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상업 건축물을 짓고자 하였고 건축주가 하는 사업의 사무실 본사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울산의 오래된 주택지 중에서도 특히 142㎡ 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대지임에도 건축주는 이곳에 많은 본사 프로그램을 담고자 하였으며 여느 건축주와 마찬가지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최대인 건축물을 요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추후에 임대 건축물로 전환할 경우 많은 임대료까지 받기를 희망하여 이런 다양한 요구 조건을 충족하면서도 기존과 다른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큰 과제였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60%와 용적률 200%가 이 대지가 가지는 최대 건축가능 영역이다. 보통의 주거지 상업 건축물은 건폐율 60%로 3층을 설계하고 20%로 일부 4층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대지 면적이 워낙 작기 때문에 20%에 해당하는 면적이 28.4㎡ 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계단실을 넣고 나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상가 건축물은 1층의 임대료가 가장 비싸고 위층으로 올라 갈수록 임대료가 저렴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용적률 범위 안에서 1층부터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찾을 수 있는 사용 가능한 면적을 최대한 찾아서 설계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의 풍경을 동일하게 만들며 숨 쉴 수 없는 답답한 도시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대지의 주변 경관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나는 이곳에 도시의 풍경을 새롭게 만드는 건축물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이 대지는 20m의 도로가 있는 북측으로 일조권을 받으며 이는 높이에 대한 자유를 주었다. 따라서 건축주에게 상업 건축물의 용적률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층과 3층의 북측 전면부를 일부 비움으로써 건축물의 용적률을 다시 확보하여 이를 4층과 5층에 재분배하여 5층의 건축물을 설계하였다. 그리고 건축물이 높아진 만큼 엘리베이터를 넣어서 동선을 해결하고 외부계단을 만들어서 엘리베이터 때문에 손해 본 용적률 또한 다시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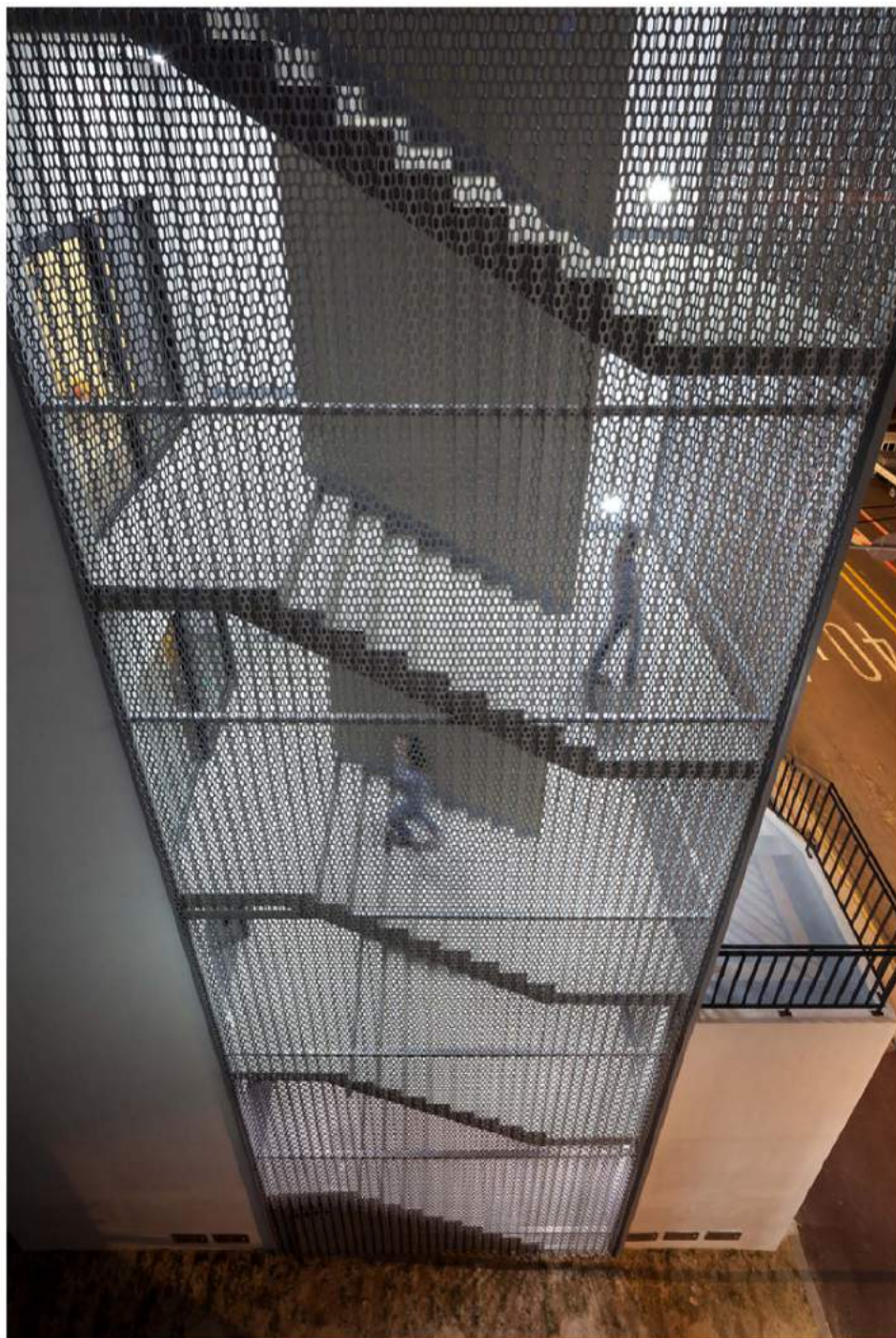
1층의 상가는 층고를 1.5배 높게 하여 엘리베이터 때문에 손실을 본 공간을 단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층에서는 외부공간을 만들어 도시와 소통 할 수 있게 하였으며, 5층은 하늘 마당을 만들어서 VIP실로 사용되도록 하고 추후 임대 건축물로 전환 되었을 경우에는 4층과 5층이 하나로 사용되어 임대 되도록 하였다. 하지만 가장 건축주를 설득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2층에서 용적률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외부공간으로 비워 두는 것이었다. 본사로 사용되지 않고 임대 건축물로 전환할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 소득이 감소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 건축물이 이러한 일반성을 탈피할 수 있다고 믿었다.

1층은 오히려 층고가 높아서 임대료가 높고 건폐율과 용적률 때문에 3층으로 밖에 구성될 수 없는 건축물을 5층으로 구성해서 1층과 2층 그리고 3층에 추가로 4층과 5층을 묶어서 임대 할 수 있으므로 임대수익이 오히려 증가하게 될 것이다. 2층과 5층은 외부공간이 있어서 임대에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실제로도 공사도중 2층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임대 문의가 들어 왔다. 너무나 작은 건축물이다 보니 외부계단이 전면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많아서 외부계단으로만 두면 건축물의 비워진 부분이 도로 쪽에서 눈에 띄지 않는다. 그래서 투시가 되면서 매스처럼 보이는 재료가 필요했다.

처음에는 수직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체인을 제안하였으나 건축주는 타공판을 선호하였다. 그래서 타공판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절곡하여 세로로 사용함으로써 수직성을 강조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작은 건축물 하나가 상업 건축물에 대한 접근의 변화를 야기 시키고 숨 쉴 곳 없는 삭막한 도시에 삶의 변화를 가져다주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미장아빔

Mise en abyme

설계자 | 임형남 · KIRA | 건축사사무소 가온건축

건축주 | (주)제이드애플마케팅
감리자 | 건축사사무소 가온건축
시공사 | (주)예지인종합건설

- 설계팀 : 노은주, 이상우, 최민정, 손성원,
이성필, 이한민, 문주원, 박선민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주)나우엔지니어링
 - 기계설비분야 : (주)협신설비
 - 전기분야 : (주)협신설비
 - 소방분야 : (주)명성소방이엔지
 - 유틸리티 : (주)시엔에스엔지니어링

대지위치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39-12

주요용도 |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 298.40㎡

건축면적 | 176.45㎡

연면적 | 992.97㎡

건폐율 | 59.13%

용적률 | 198.89%

규모 | 지하 2층, 지상 5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주요마감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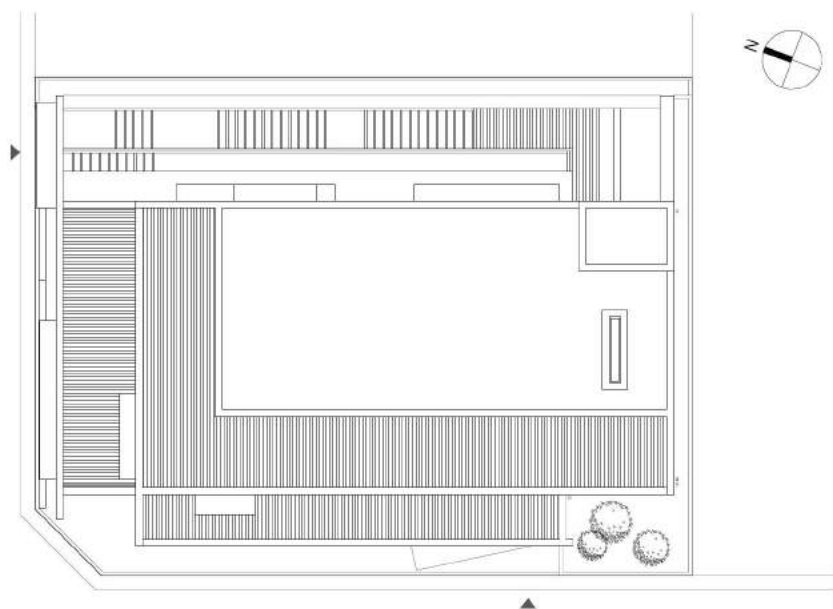
- 외부 : 노출 콘크리트
- 내부 : 친환경페인트, PVC타일마감

설계기간 | 2013. 11 ~ 2014. 01

공사기간 | 2014. 03 ~ 2014. 12

사진 | 박영채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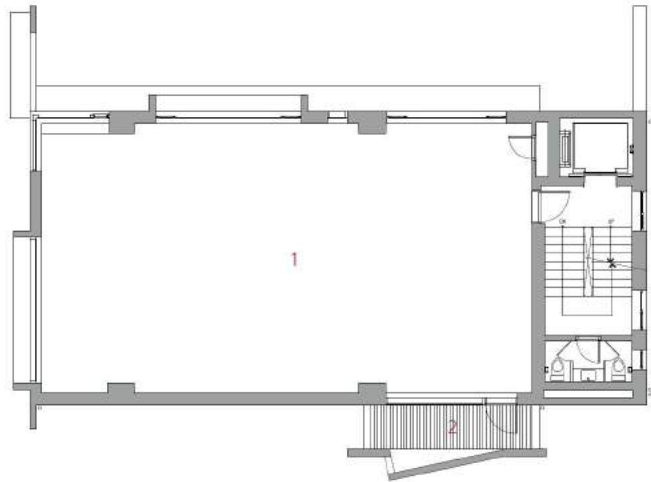
0 1 3 6m



- 1. 출입구
- 2. 홀
- 3. 테라스
- 4.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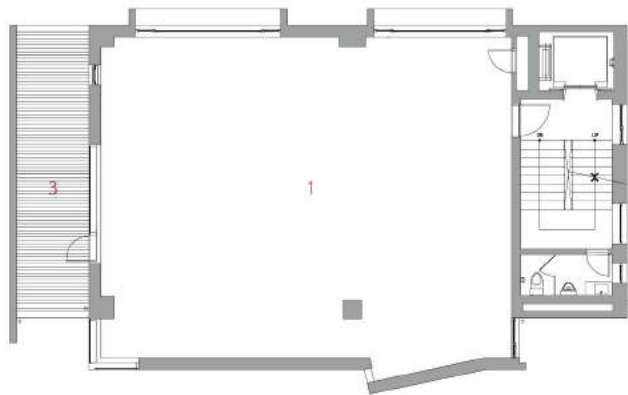
1층 평면도

0 1 3 6m



2층 평면도

1. 사무실 2. 데크 3. 테라스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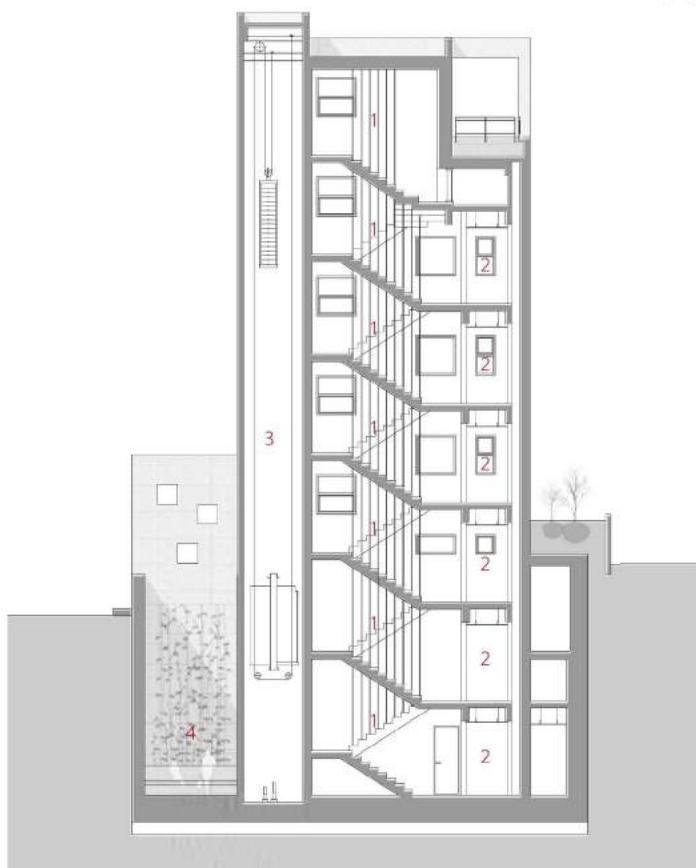
배면도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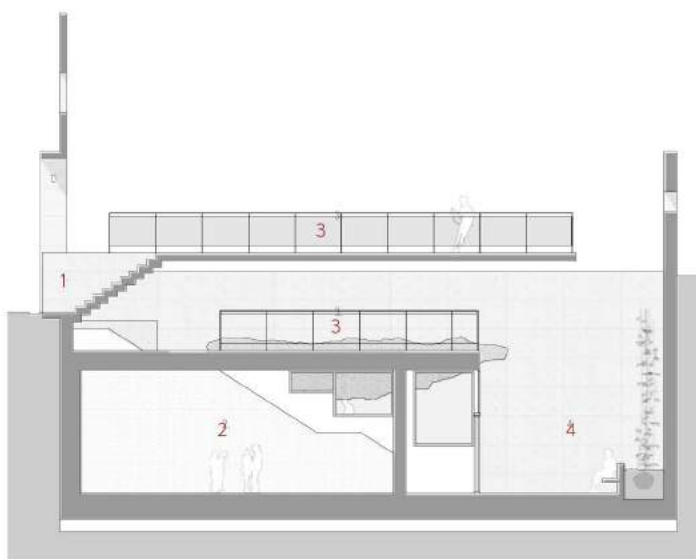
0 1 3 6m

1. 계단실
2. 화장실
3. 엘리베이터
4. 선큰 가든



종단면도

1. 출입구
2. 스튜디오
3. 테라스
4. 선큰 가든



0 1 3 6m

횡단면도

거울을 두 개 마주보게 세워놓으면 한없이 깊은 공간이 생긴다. 프레임 안에 프레임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미장아빔(mise en abyme)이라고 한다.

‘미장아빔’이 지어진 논현동은 맥락이 계속 변하는 도시의 한 복판이다. 원래 농사를 짓던 언덕에 주택이 지어지고 반듯한 구획이 생기고, 땅값이 무섭게 상승하자 다시 주택들은 허물어지고 상업용 건물들로 점점 대체되고 있다.

그곳에 입방체를 만들고 그 안에 프레임이 연속적으로 겹치며 공간이 중첩되는 건물을 만들었다. 변화의 방향을 예측하기 힘든 환경을 여과하는 틀을 세우고자 한 것이다. 또한 건축주의 직업이 프레임을 통해 세상을 보는 사진작가였기에, 일정한 시간동안 같은 자리에 카메라를 놓고 사진을 계속 찍어 변화를 담아내는 영화처럼, 이 건물의 다양한 프레임이 도시를 계속 관찰하면 재미있을 것 같았다.

대지의 네 면을 둘러싼 표정도 제각각이고, 남쪽과 동쪽으로 경사진 대지는 네 군데의 모서리 레벨이 각기 달랐다. 그런 조건을 감안해서 지하 2층은 사진 스튜디오로 쓰기 위해 4.5m의 높은 층고를 주고 선큰 된 계단을 통해 진입하도록 했다. 지하 1층은 지상처럼 느껴지게 길고 높은 창과 면하고, 1층은 주차장과 주 출입 로비가 있다. 2층부터는 사무실인데 각기 다른 형태의 프레임을 통해 북측은 오래 된 주택가를, 동측과 남측은 상업 건물의 풍경을 보고, 공동주택을 향한 서측은 벽의 각도를 틀어 세로로 긴 창을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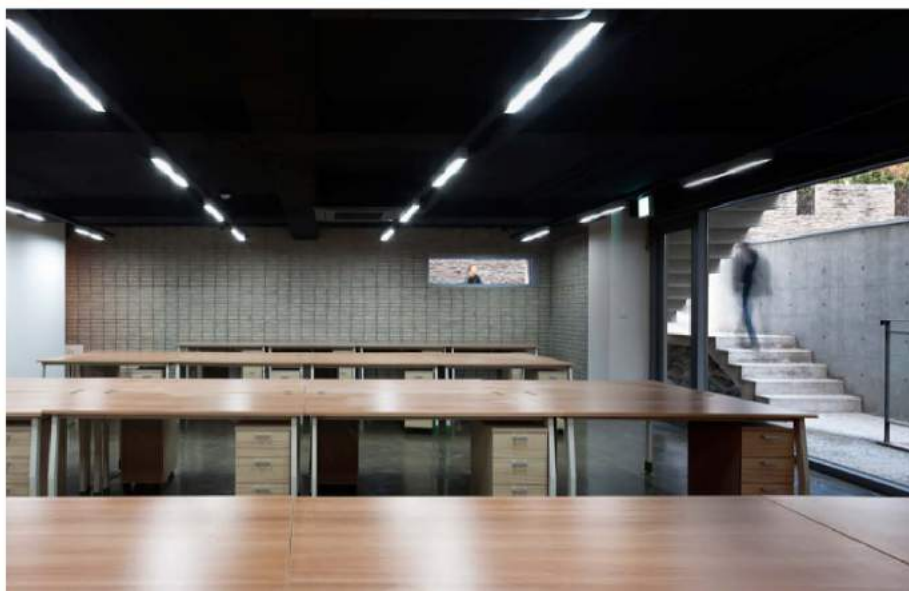
각 층에서 경험하는 각기 다른 프레임을 통해 건물에 도시가 담기고, 반복되고 변화하는 시간의 흐름이 담기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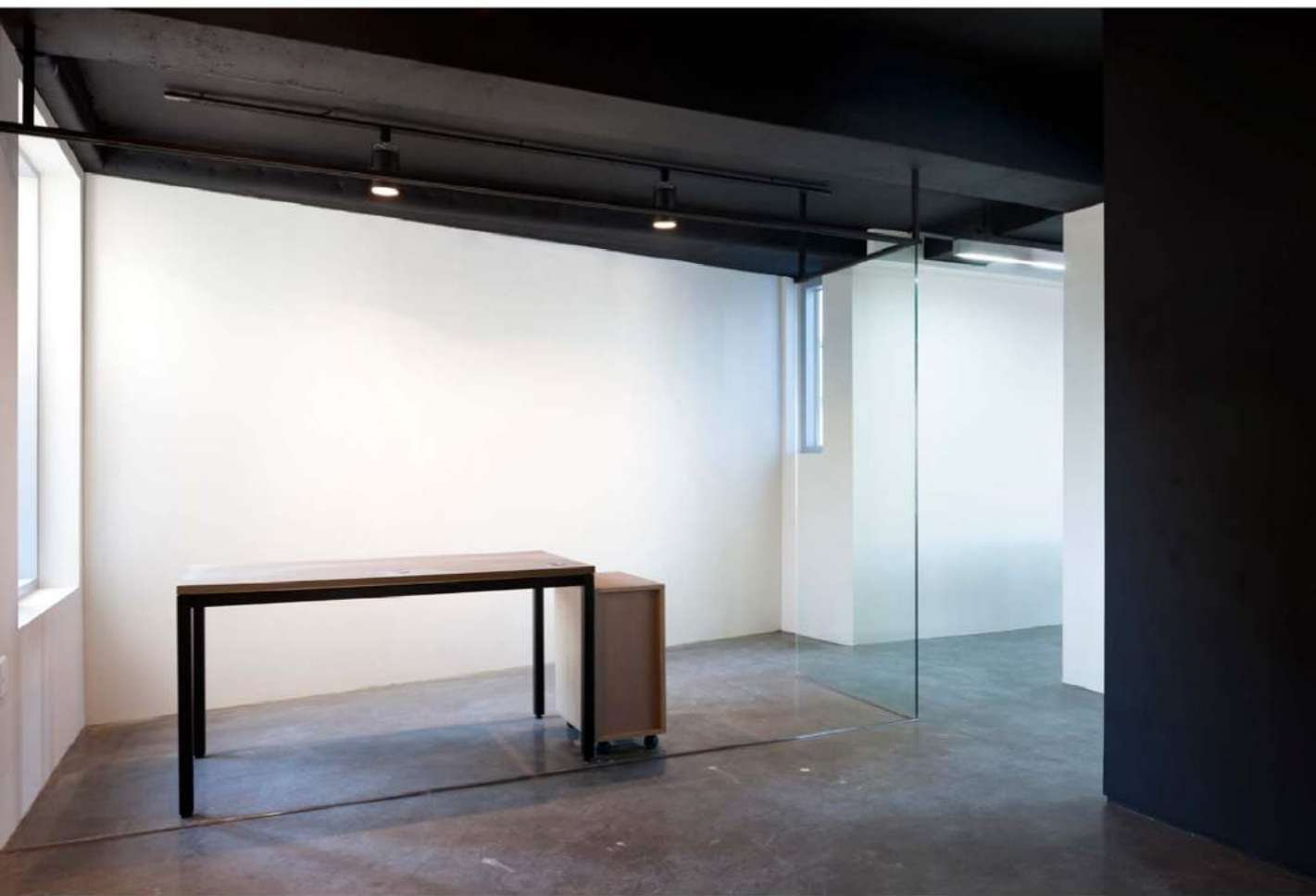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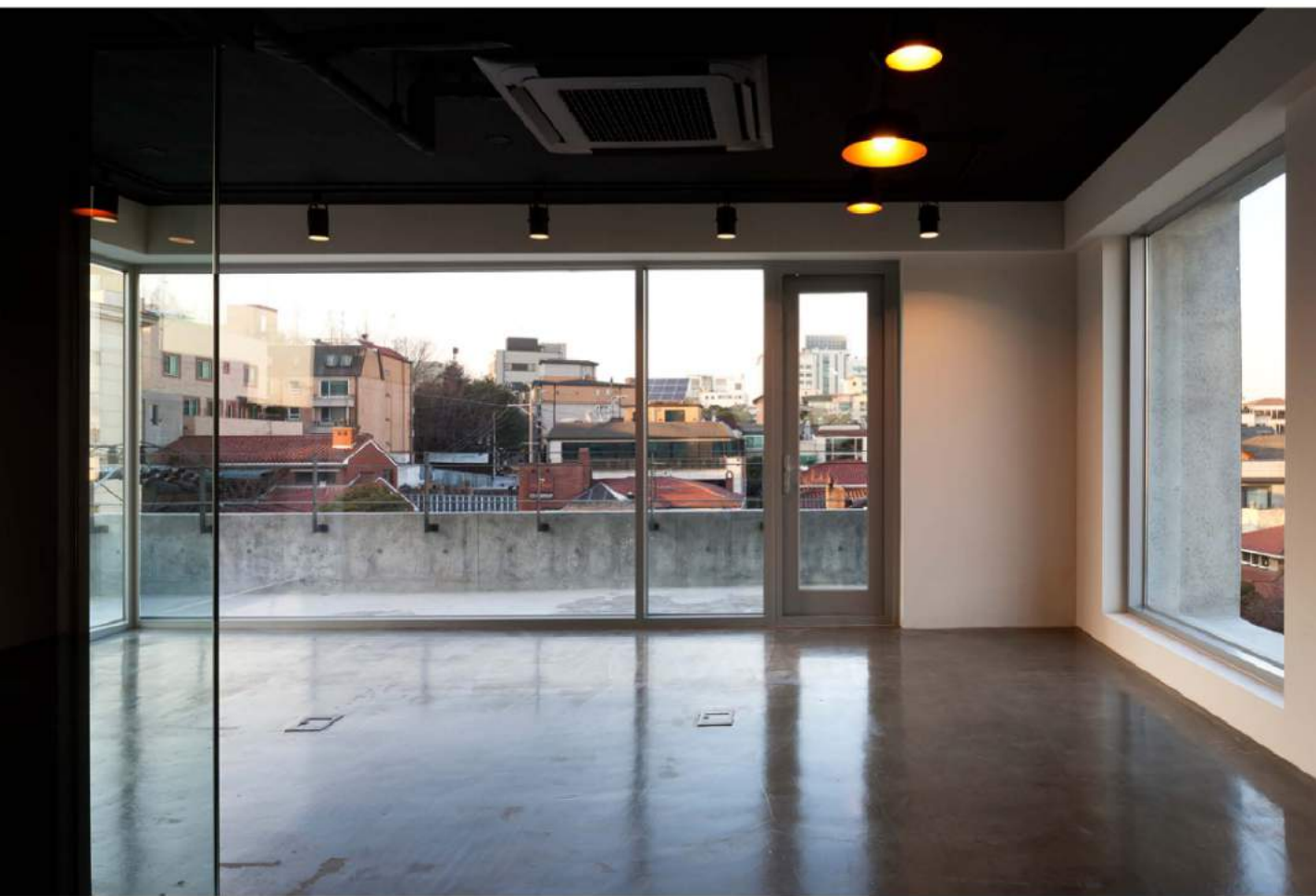












더 박스 빌딩

The Box Building

설계자 | 이순미_KIRA | (주)건축사사무소 미가온

건축주 | 류석진

감리자 | (주)이건 종합건축사 사무소 윤익상

시공사 | 정기채

- 설계팀 : 강현창, 신민주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도화구조
- 기계설비분야 : 삼원ENG
- 전기분야 : 청안ENG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의재로 136번길 26

주요용도 | 1종근린생활시설, 다가구 주택

대지면적 | 235.7㎡

건축면적 | 141.21㎡

연면적 | 299.88㎡

건폐율 | 59.91%

용적률 | 127.23%

규모 | 지상 4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 외부 : T52 삼중로이유리, 송판노출콘크리트,
코르텐 강판

설계기간 | 2014. 11 ~ 2014. 12

공사기간 | 2014. 01. 05. ~ 2015. 05. 31

사진 | 조성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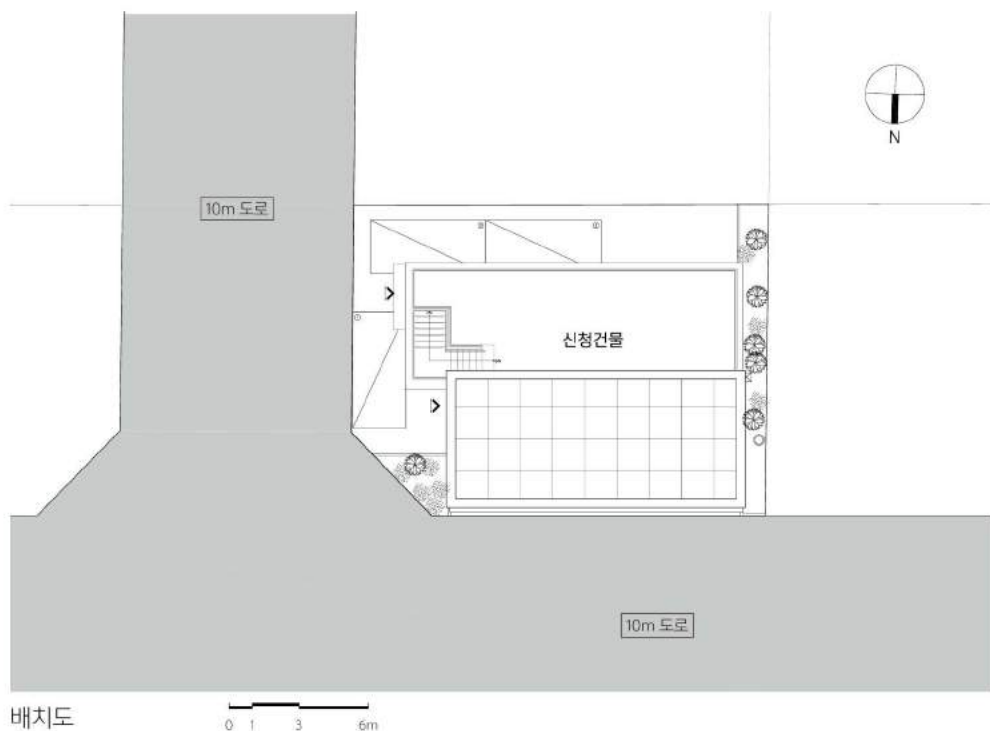


국립공원 무등산 자락에 접해있는 이 대지는 도심 속의 자연이라는 현대 도시인들이 가장 동경하는 주거와 휴양 모두를 만족 시킬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이상적 장소이며, 1층은 카페, 위층은 주거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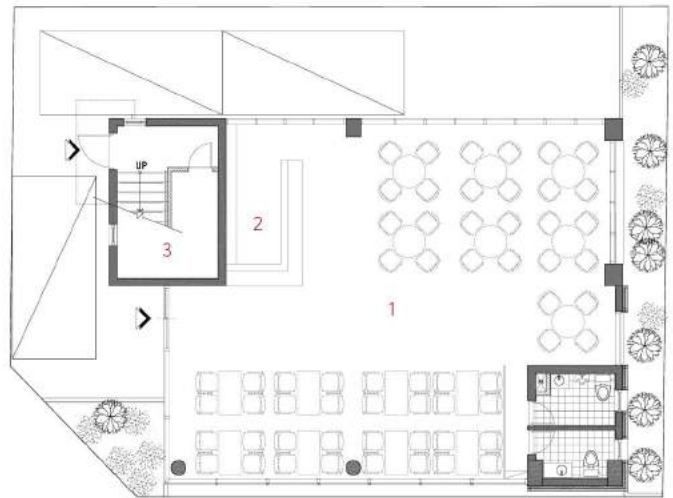
5개의 MASS들이 서로 중첩과 연계를 꺾이는 형태를 표현하였으며, 각각 자연재료와 시간성을 느낄 수 있는 외장재를 사용하여 주변 자연과 조화를 루며 각각의 박스를 더욱 부각시킨다.

MASS와 MASS가 만나는 부분은 각각 MASS의 입체감을 부여하여 실루엣이 생기도록 하였으며 각각 MASS의 텍스처와 조형미가 돋보이는 형태로 서로 다른 재료가 어우러져 조화가 되도록 하였다.

특히, 유리박스인 4층 MASS는 주변의 자연을 내부로 끌어들이는 내·외부 공간의 상호관통을 통해 무등산 풍경에 대한 시각적인 즐거움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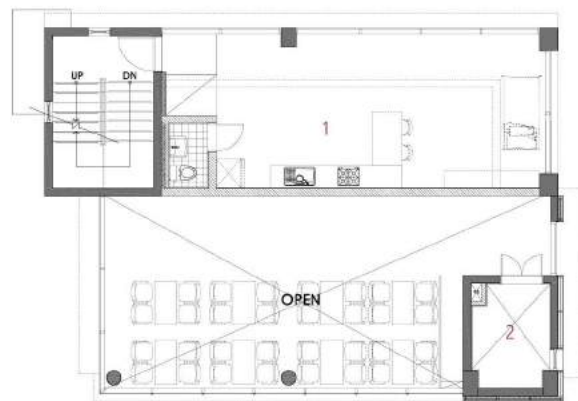
- 1. 근린생활시설
- 2. 주방
- 3. 창고



0 1 3 6m

1층 평면도

- 1. 주방
- 2. 물탱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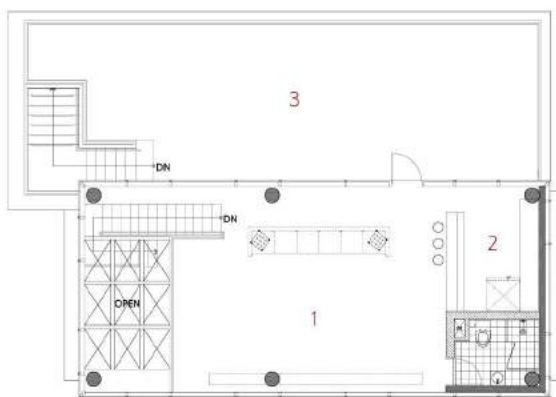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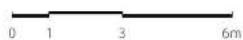
1. 현관
2. 침실
3. 안방
4. 파우더룸
5. 부부욕실
6. 다용도실
7. 주방
8.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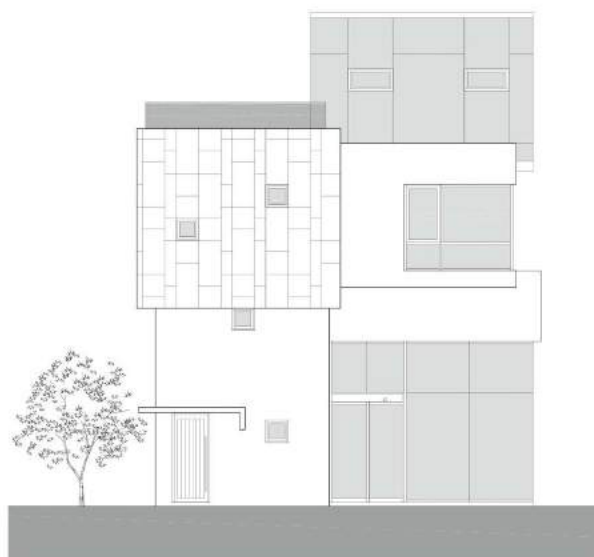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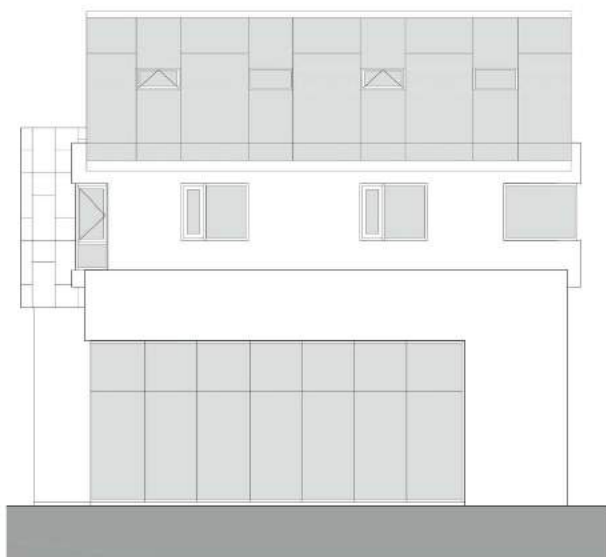
1. 거실, 서재
2. 홈바
3. 잔디마당

4층 평면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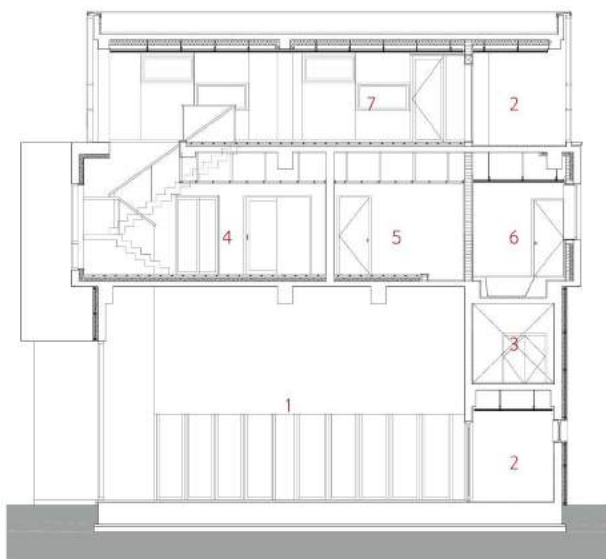
측면도

1.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2. 창고
3. 계단실 4. 식당 5. 잔디마당

1.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2. 화장실 3. 물탱크
4. 거실 5. 다용도실 6. 부부욕실 7. 거실, 서재



횡단면도



종면도

0 1 3 6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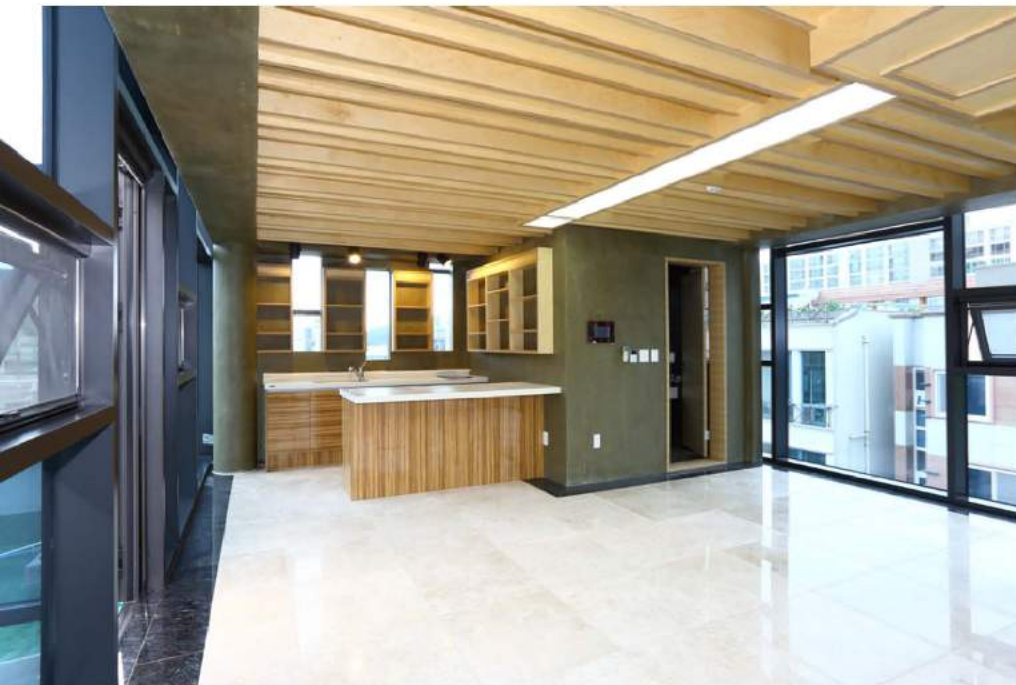




















지뜨 관광숙박시설

GITE tourist accommodations

설계자 | 조연준_KIRA | 건축사사무소창조

건축주 | (주)효신개발
감리자 | 우주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엠제이건설(주)

- 설계팀 : 이미순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주)한국구조물안전원
- 기계설비분야 : 테스(주)
- 전기분야 : (주)한울이엔지
- 소방분야 : (주)한울이엔지

대지위치 | 전남 여수시 종화동 282외 2필지

주요용도 | 관광숙박시설(호텔)

대지면적 | 1,498.00㎡

건축면적 | 558.18㎡

연면적 | 2,002.23㎡

건폐율 | 37.26%

용적률 | 108.73%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주1동) / 지상2층(주2동)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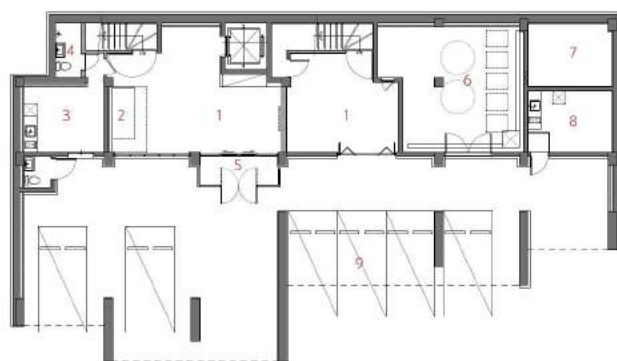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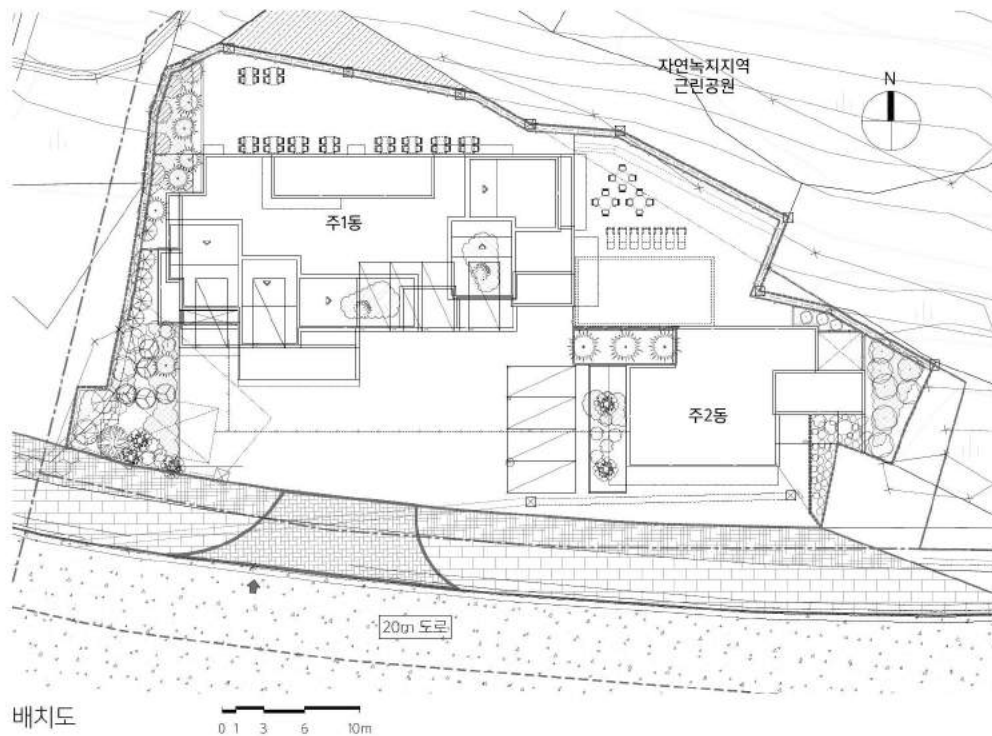
주요마감재 |

- 외부 : 스타코플렉스, 화강석, 대리석
- 내부 : 에폭시코팅, 인테리어마감

설계기간 | 2015. 09~2015. 12 (설계변경)

공사기간 | 2016. 01~2016. 07

사진 | 김귀룡



1. 로비
2. 안내실
3. 관리실
4. 화장실
5. 방풍실
6. 펌프 및 기계실
7. 물탱크실
8. 스텝실
9. 주차장

지하1층 평면도



1. 현관 2. 객실 3. 욕실 4. 발코니 5. 침실

주1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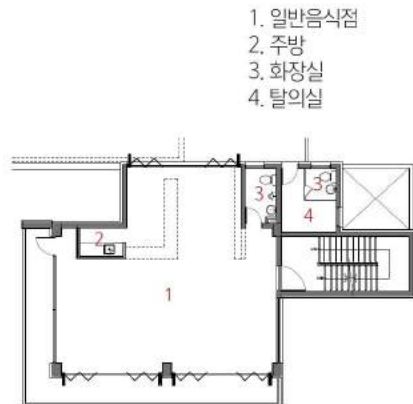
주2동

1층 평면도



1. 현관 2. 객실 3. 욕실 4. 발코니 5. 침실

주1동



주2동

2층 평면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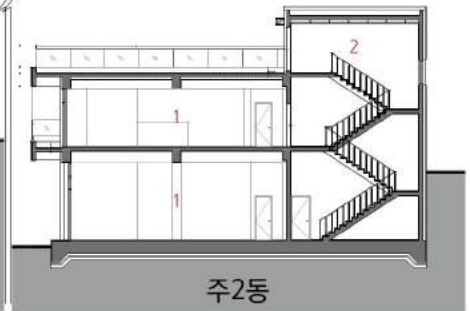
우측면도

0 1 3 6 10m

1. 객실 2. 침실 3. 발코니 4. 다락방 5. 옥상 6. 지하주차장



1. 일반음식점
2. 계단실



횡단면도

1. 객실
2. 계단, 홀 등
3. 복도
4. 다락방
5. 물탱크실
6. 지하주차장
7. 로비
8. E.V 홀



1. 일반음식점
2. 화장실



0 1 3 6 10m

종단면도

여수시 종화동 제2돌산대교 부근 경사지에 위치한 부지로 언덕을 등에 지고 있으며 전면은 푸른 바다와 하늘에는 해상케이블이 있어 숙박과 관광에 적절한 풍광을 담고 있는 건축물이다. 주1, 2동으로 분리하여 숙박과 관광의 카페테리어가 운영 중이며 주1동은 지하1/지상4층 규모, 주2동은 지상2층 의 규모로 그리 규모가 크지 않는 건축물이다.

언덕의 바람

바위 사잇길로 바람과 바다를 소화하는 바다바위를 닮은 풍성한 바람, 먹을거리, 체험하고 놀 거리...

특히 여수 밤바다의 아름다운 풍광을 객원들과 관광객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숨의 공간으로 조성함으로 자연과 숨을 공유할 수 있고 안식을 찾을 수 있는 쉼터이고 싶다.

자연과 모던함

박스형의 심플함이 건축주의 의도인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풀어내야 하는지 건축사는 고민과 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분절과 박스공간의 변화를 프레임으로 디자인하였으며 숨의 공간으로 풀어내는 장치로 실내와 실내, 실내와 실외가 유기적으로 숨을 나누는 한옥의 틈마루와 방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공간을 소통하면서도 사생활의 보호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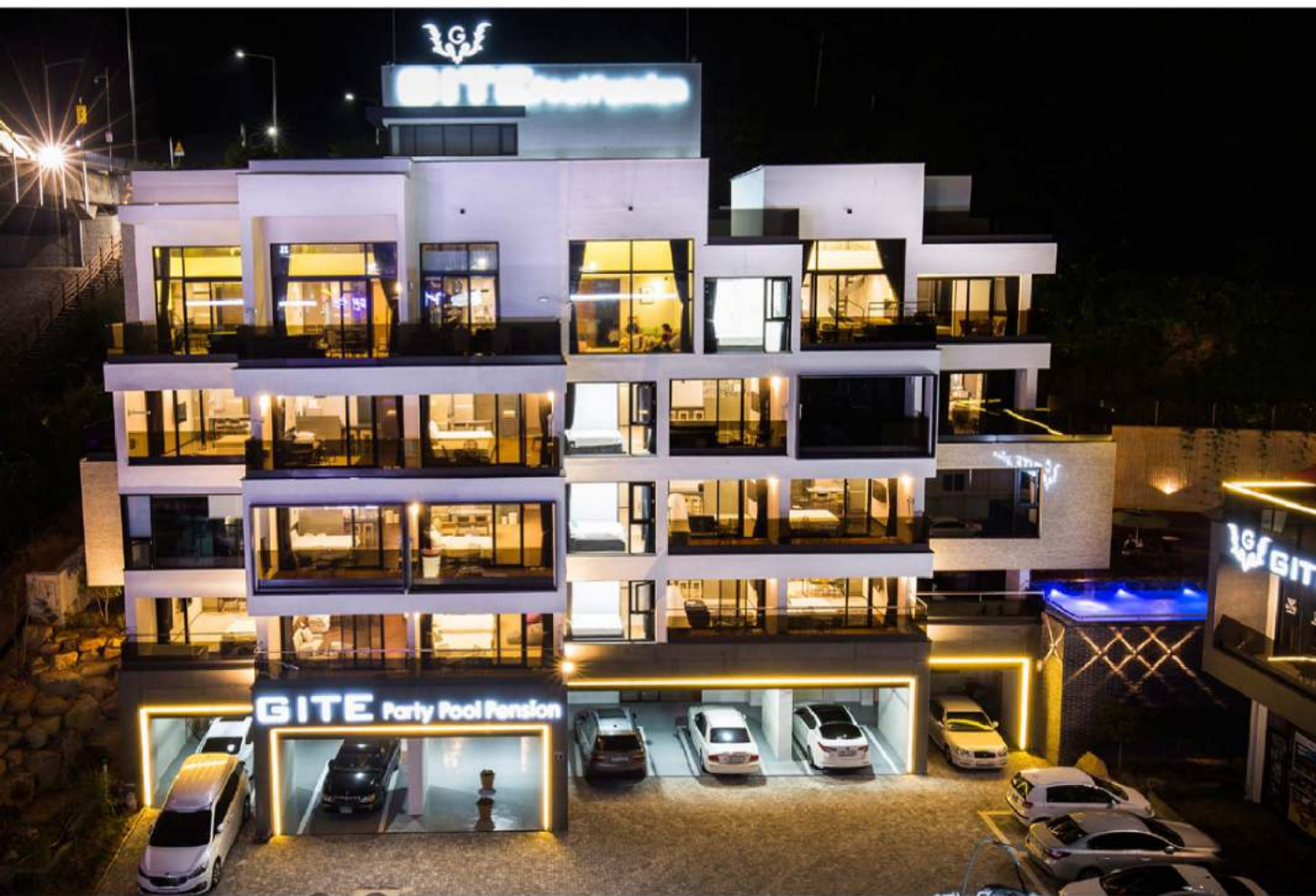
주1동의 지하1층은 주차장을 지남으로 로비를 2개의 매스로 분절, 상부층의 객실들이 모두 팔을 벌려 바다의 풍족함 받아드리겠다는 의도로 넓은 창을 활용하였으며, 보는 뷰에 따라 달라지는 풍광을 긴장감으로 환원하였고 각 객실에는 소규모의 풀을 설치함으로서 마치 바다위에 서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제공하며 하늘을 담은 분위기를 충분히 제공한다.

실 내부에 존재하는 복층의 공간은 실루엣의 프라이버시한 공간으로 또 다른 재미와 즐거움을 제공한다.

주2동은 음식점과 카페로 외피를 넓은 창으로 디자인함으로 외부의 다양한 정보와 풍광을 공유한다.

옥상의 공간은 또 하나의 분위기로 해상 공중을 떠다니는 해상 케이블카를 조망할 수 있으며, 먼 바다에서 살랑대는 파랑의 여유로움과 어선의 움직임을 담을 수 있으며 야간의 옥상은 관광객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자극하게 한다.

















발 주 자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설 계 자 송주경_KIRA | (주)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송하엽_AIA

설 계 팀 정인호, 이영구, 김상훈, 최천, 노현, 민주홍,
진규태, 김의섭, 유승현, 이한준, 이상헌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584

대지면적 10,093.40㎡

건축면적 4,318.00㎡

연 면 적 16,575.09㎡

건 폐 율 42.78%

용 적 륜 126.68%

규 모 지하 1층, 지상 5층

마 감

- 외부 : 로이복층유리, 테라코타패널, 알루미늄 시트, 화강석
- 내부 : 친환경페인트(벽), 비닐타일(바닥), 흡음텍스(천정)



나라키움 광주빛고을청사

Narakium Gwangju Bitgoeul Government Office



지속가능한 오피스

아트리움을 통한 자연환기 계획 및 업무환경 최적화를 위해 남향 업무공간을 배치,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지열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오피스를 실현하였다.

상징의 장소

광주천에 비춰진 이미지를 계획함과 동시에 통계청의 데이터와 중소기업청의 크고 작은 박스, 그리고 성장의 상징인 대나무를 형상화하여 하나의 통합청사의 이미지를 구현하였다.

소통의 청사

남측 광주천, 동측 경관녹지, 북측 고층주거, 서측 저층근린생활시설을 적극 수용하여 남동측의 광장, 북측의 숲속길, 서측의 가로 정원과 시민개방주차장 등 공공성 있는 통합청사를 계획하였다.

최적의 기능성

다양한 기능이 만나는 통합청사로서 통계청과 중소기업청, 업무동과 실험동 등 기능과 성격을 분석하여 기능적으로 최적화된 조닝을 계획하였다.

공공성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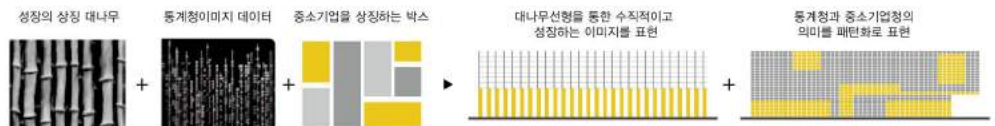
서측의 저층주거지역의 흐름과 동측의 경관녹지의 흐름을 적극 받아들이고, 천변에서 바라보는 업무동의 상층부를 고려한 투명한 입면을 계획하였다.



배치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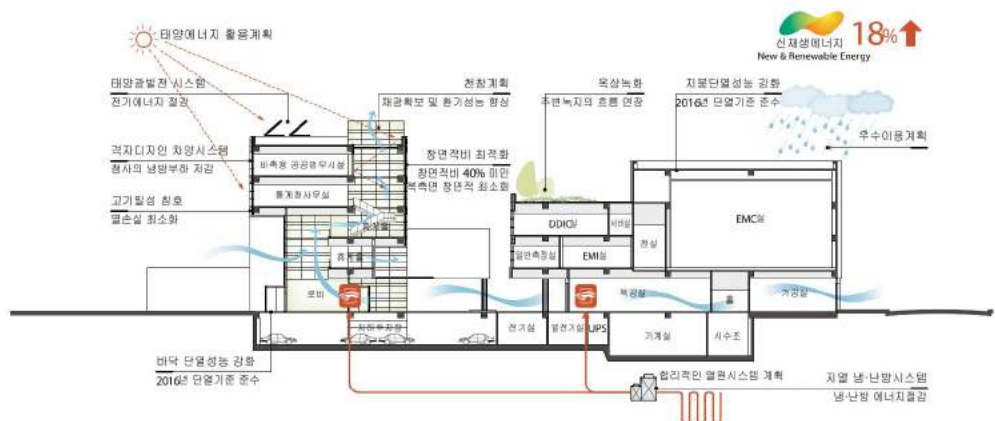
입면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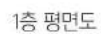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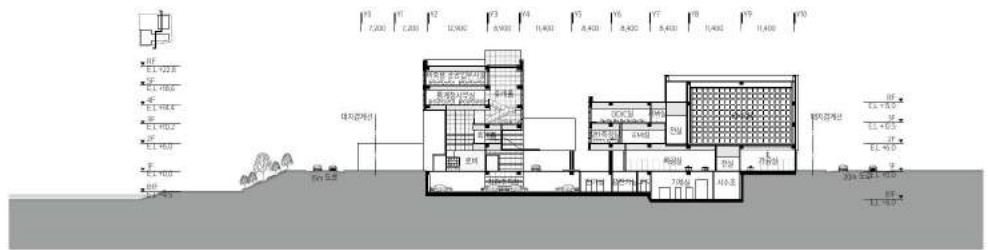
단면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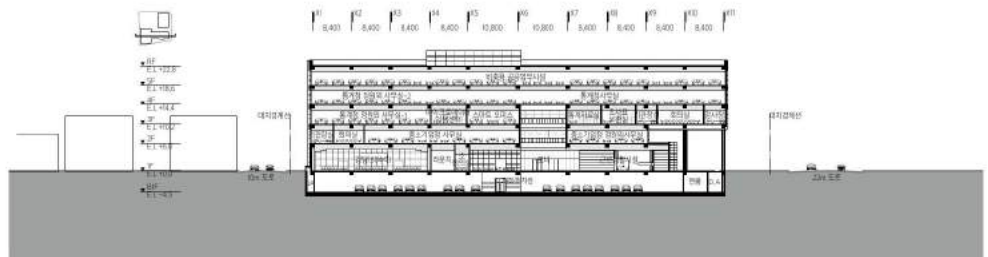
친환경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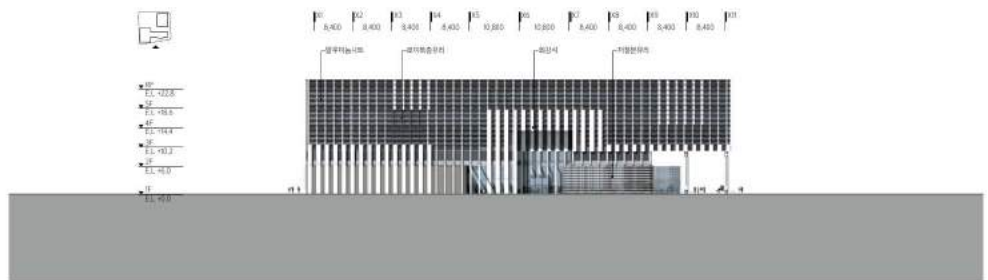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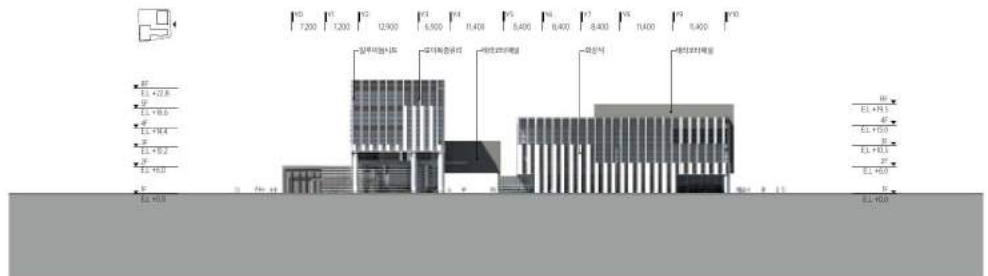
종단면도



횡단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파라메트릭 디자인 X

Parametric Design X

글. 성우제_ Sung, Woojae

Grimshaw Architects / Associate

www.wojsung.com, www.selective-amplification.net

이번 회 및 다음 회 두 회에 걸쳐서 파라메트릭 툴이 건축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디자인 툴로써 뿐만 아니라 설계를 진행하기 위해 주어진 설계 초기 조건을 분석하는 과정 및 시공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오차를 줄이기 위한 pre-construction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SHoP Architects에 재직 당시 작업하였던 Barclays Center의 Green Roof 프로젝트이며 경기장 안 이벤트나 경기가 벌어질 경우 주변에 들어서는 고층 주거 빌딩 및 기존 주거지역의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일차적 목적과 기존의 방수층이 노출된 지붕의 미관상 (fig.01)의 이차적인 목적으로 다른 한 겹의 지붕 층을 추가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Figure 1



먼저 한 겹의 지붕을 더 추가한다는 가정 하에 ARUP acoustics와의 협업을 통하여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두 가지의 파라미터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지붕이 가지게 되는 중량이었고 두 번째는 새로운 지붕면과 기존의 지붕면 사이의 빈 공간의 깊이였습니다. 첫 번째 파라미터를 만족시키기 위한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루프를 지지하기 위한 철골 트러스를 제외한 35psf(pound per square foot)에 달하는 단위 중량을 가지는 그린 루프 어셈블리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파라미터는 약 12' (3.65m)의 기존 루프의 최외각 면과 새로 만들어지는 루프의 가장 안쪽 면의 거리(공기층)였습니다. 기존의 weathering steel skin이 올라오는 파라펫의 외곽선이 기존의 지붕면으로 붙어 12'보다 낮게 위치함으로 인해 design surface는 지붕 중심점에서 약 12'를 유지하고 외곽으로 갈수록 그 깊이가 얕아지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시각화하고 추가적인 acoustic mass의 중량을 계산해 내기 위하여 Grasshopper를 이용해 design surface 상에 거리 값을 그래프 형식으로 표현하고 추후 그린 루프 모듈의 설계에 반영하게 됩니다(fig.02). 다이어그램 상에 점선으로 표현된 부분은 경기장 안쪽의 관람석과 외부로 배치된 MEP공간을 분리하는 acoustic wall이며 이를 새로 제안하는 루프 아래쪽까지 연장시킴으로써 루프의 네 모서리에 위치한 환기구가 새로 제안하는 루프에 의해 방해 받지 않도록 루프의 가장자리로 갈수록 모듈을 드문드문 배치하게 되는 gradient 컨셉을 제안하게 됩니다(fig.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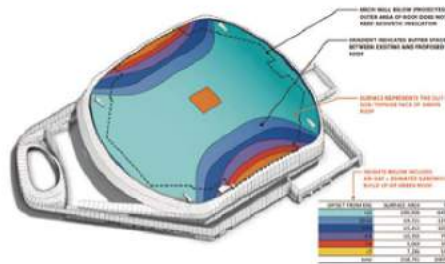


Figur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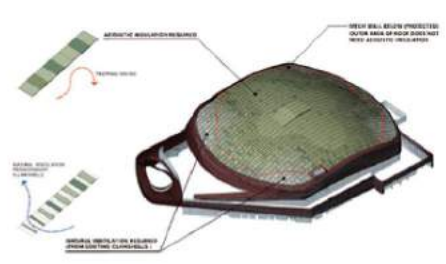


Figure 3

다음단계에서는 지붕의 곡면이 가지는 두 방향 곡면의 특성 및 경사와 넓은 지붕 면적으로 인해 일반적인 방식의 그린 루프 방식(sedum roll out)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 2' X 2'의 플라스틱 컨테이너 18개로 이루어져 있는 12' X 6'의 슈퍼 모듈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러한 pre-fabrication의 이점은 경사면과 자유곡면상에 설치시의 이점 외에도 그린 루프 설치 후의 현장에서 식물들의 안정화 작업이 별도로 필요 없어 그만큼 시간을 단축

할 수 있다는 점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지붕을 지탱하기 위한 트러스 구조물 위에 모듈을 얹기 위해 트러스 부재 상을 직각으로 가로지르는 purlin과 그 위에 얹혀진 metal deck, 그리고 모듈 설치신 가이드가 되어주는 purlin 라인을 따르는 수직 fin, 그리고 모듈이 경사로를 흘러 내리지 않도록 위치를 잡아주는 브라켓들이 fin에 수직으로 접합이 되도록 제안했습니다(fig.0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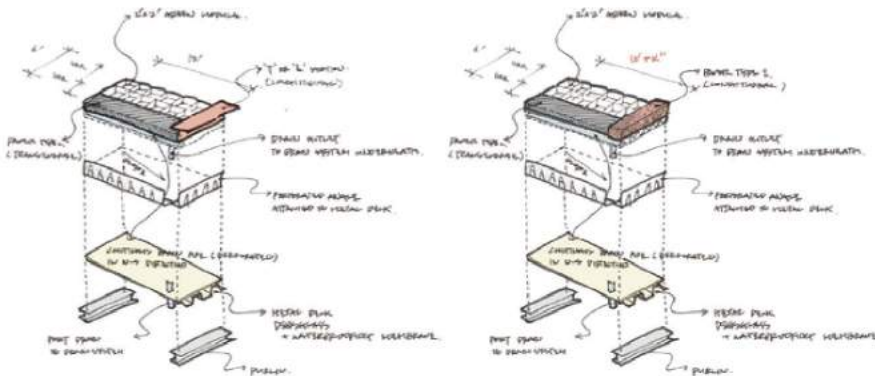


Figur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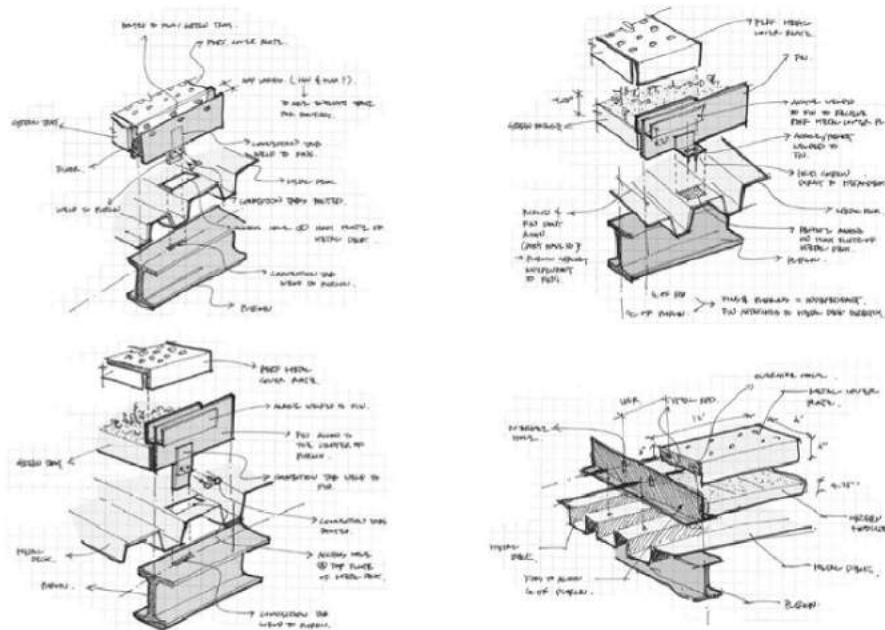


Figure 5

슈퍼 모듈들을 배치하면서 계절이 바뀔때 따라 서로 다른 변화를 보이는 네 가지의 식물 조합을 생각하였고 이를 지붕의 중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랜덤하게 섞이는 일종의 flocking pattern이 Grasshopper에 의해 적용되었습니다.(fig.06). 각각의 모듈은 Connecticut에 위치한 nursery에서 지정된 식물 조합 recipe에 의해 배양이 되고 모듈로 조립되어 현장으로 옮겨 진후 설치를 하도록 제안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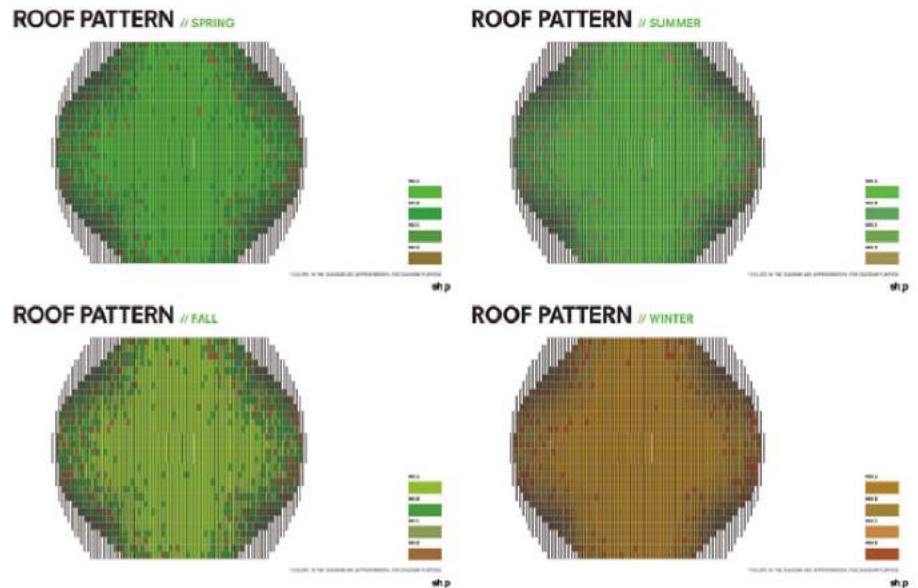


Figure 6

다음 회에서는 flocking pattern을 생성했던 Grasshopper의 알고리즘을 좀 더 자세히 살펴 보고 pre-construction단계에서 양방향 곡면에 사각형 모듈을 설치함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deviation의 해결을 위한 제안 사항과 시행착오가 없는 모듈 설치를 위해 진행했던 파라메트릭 툴에 기반을 둔 시뮬레이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젤미술관, Christ & Gantenbein

Kunstmuseum Basel, Christ & Gantenbein

글. 이지현_ Lee, Jihyun
jihyun.lee815@gmail.com

이번에 소개할 건물은 스위스의 Basel에 위치한 미술관인 Kunstmuseum(Art Museum)이다. 이는 스위스 바젤 출신의 젊은 건축사들인 Christ & Gantenbein에 의해 설계되었다. 기존 미술관의 확장에 대한 필요로 시작한 프로젝트였고 Zaha Hadid, Peter Zumthor, SANAA를 포함한 세계적인 건축사들이 여러 가지 설계안을 내놓았지만 결국 Christ & Gantenbein의 안이 선정된 이유는 그들 설계의 명료함과 단순성에 있다.

기존 미술관은 바젤의 역사적 중심지에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건물의 자체적인 구조가 자기 완료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즉 역사적인 서양의 박물관 대부분의 유형이 그렇듯이 공간의 중심에 중정을 가지고 관람자들이 일정한 복도 동선을 따라서 관람을 하고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구조를 가졌다.

새롭게 확장되는 미술관은 기존의 건물과 큰 길을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 자리를 잡을 것이었다. 그러므로 확장되는 공간을 생각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했던 주제 중 하나는 기존 건물과 역사적, 유형적 일관성을 가지면서도 새로운 시대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무엇이였다. 또한 새롭게 확장되는 미술관에 들어갔을 때 기존의 건물 군과의 관계, 도시의 문맥적 특성과의 관계는 이 건물의 설계에 있어서의 중요한 주제였다.

이 젊은 두 건축사는 이러한 도시와의 관계성에 대한 해결책으로, 새로운 건물이 위치할 사이트의 특성상 매우 신선한 방법으로 답했다. 첫째는, 도시의 주요 네 도로가 만나는 점이라는 것과 또 다른 셋길이 건물의 정면성을 이룰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위치적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도로의 수직선상으로부터 약간 비틀어진 각을 줌으로써 기존 건물의





드러나지 않는 전통적 입구성을 파괴하면서도 예기치 못한 공간을 수줍게 열어주어 주출 입구의 공간을 준 것이다.

둘째로 도시와의 관계성에 대한 해답은 기존 건물과 새로운 건물의 연결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다른 건축사의 현상 설계 안에서는 두 건물의 연결을 직접적으로 도로 위 공중에 뜨는 다리로 연결시키고, 다리 위에서는 기존건물과 새 건물, 그리고 도시를 시각적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Christ & Gantenbein은 꽤 다르게 새로운 건물과 기존건물을 도로 지하에 묻었고 외부에서는 시각적으로는 전혀 연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처음 방문하는 관람객은 이 두 건물이 하나의 미술관에 속해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심지어는 미술관의 공간의 구조에 의해서 움직이는 관람동선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적으로 여정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 Christ & Gantenbein은 기존 건물의 건축적 문법과 달리하는 새 미술관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명료하고 분명한 해법이라고 여긴 듯하다. 실제로 새 건물의 내부 구조는 기존 건물의 중정을 사이에 두고 복도식으로 이동하는 구조와는 완전히 다르다.

새 건물은 두 개의 분리되었지만 독립된 매스로 이루어져있다. 각각의 독립된 매스는 구조적인 요소를 최소한의 벽식 구조로 하여 빈 공간의 크기와 유연적 이용(flexibility)을 최대화하였다. 이들 매스의 배열 방식은 전통적 건축 문법인 기하학적 구성이 아니라 서로의 매스가 교묘하게 어긋나 있어서 도시의 도로와 반응하고 외부 공간을 형성한다. 두 매스 사이에는 기념비적인 중앙 계단이 있고 이는 수직 동선의 역할을 한다. 이 계단은 큰 원형 천창에 의해서 이색적인 공간의 무게감을 선사한다. 아마도 그 이유는 건물을 전체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마감재와도 깊이 관련이 있을텐데, 건축사는 이 건물의 형태를 구상하는 첫 단계부터 어떤 마감재가 이 건물에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가를 고민했다고 한

다. 그들이 내부 마감재를 선택할 때 가장 크게 고려했던 점은 기존 건물과의 통일성과 일관성이었다. 기존 건물의 마감재인 스투코(stucco ; 유럽에서 흔하고 비싸지 않은 마감재 중의 하나)와 Carrara 대리석을 천장과 벽, 그리고 바닥에 절제되었지만 두텁게 바르는 방식으로 사용함으로써 기존 건물의 재료적 물성을 그대로 연상시키면서도 새로운 건물의 독자성을 잃지 않았다.

이 건물의 육중한 무게감은 건축사가 의도한 것으로써 이들은 도시의 중심 안에 현대적 시대성을 표현하지만 동시에 고대(Classical)건물만이 가질 수 있는 시간성, 또는 역사성을 역으로 표현한다. 이는 건물 Façade의 마감재나 디자인 방식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고대건축 문법에서 미적 균형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상, 중, 하로의 분절 방식이나 회색 벽돌을 얇게 잘라서 가로줄이 강한 방식으로 쌓는 조적 방식에서 볼 수 있다.

더욱이 특이할 만 한 점은 고대건축에서의 상에 해당하는 frieze 디자인인데, 이 부분은 현대적으로 말하면 일종의 건물 “광고판”이다. 즉 미술관에서 하고 있는 전시의 내용이나 전시 내용의 주제를 시시각각으로 변화시키면서 표현 할 수 있는 interactive LED display를 벽돌 재료에 삽입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스위스 바젤의 통합적인 조명 디자인 전문회사인 “iart group”에 의해서 시도된 것으로써 건축사들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다. 건물의 상단부 frieze에는 건물을 전체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벽돌과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졌지만, 위 아래가 파인 제작 벽돌 안의 작은 공간에 LED를 삽입하고 이 조명이 벽돌의 홈을 비추는 방식에 의해 자연광과 함께 반사되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 벽돌이 어둡게 보인다는 것뿐이다. 실제로 이는 LED 전광판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단지 벽돌의 달라지는 패턴으로 인해 생기는 그림자라고 생각된다.

최첨단의 Interactive Façade를 역사성과 시간성이 물씬 묻어나는 육중한 벽돌 재료와 함께 통합적으로 Façade에 적용한 점은 놀라기만 하다. 이들이 바젤 도시에 선사한 이 건물의 얼굴은 도시의 새로운 심볼을 형성했을 뿐 만 아니라 상징적으로 현대인들에게 현대 미술 또는 새로운 예술을 경험하는 방식을 좀 더 자유롭고 독자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많은 점을 시사한다. 이들이 현대 건축을 생각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항상 기존의 도시적 문맥(Context), 기존의 재료, 또는 기존의 문법을 존중한 상태에서 첨단 기술이나 현재적 필요성을 적합하게 혼용했다는 점에서도 훌륭한 접근 방식이 아닐 수 없다.

사용승인제도를 가볍게 보지 마라

System of approval of using : Don't take it lightly

글. 김주덕_ Kim, Choodeok ·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1. 들어가는 글

리우올림픽 열기가 무척 뜨거웠던 여름이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피땀 흘리면서 연습을 하고, 4년 만에 국제무대에 나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TV를 통해 경기 못지않게 브라질 건축문화를 틔틈이 볼 수 있는 것도 좋은 기회였다. 지구촌 저편에서도 현대 건축물은 대개 비슷한 모양과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필자는 8월 29일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조충기 회장님으로부터 자문변호사 위촉패를 받았다. 자문변호사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협회장님께서 필자에게 건축사 잡지에 계속해서 법률 관련 글을 써주면 좋겠다고 격려해 주셨다.

변호사로서 건축사협회에 법률적으로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 본다.

건축사는 사실 설계와 감리만 잘 하면 된다. 그럼으로써 한국의 건축문화를 발전시키고, 아름답고 품위 있는 좋은 건축물을 만들어 사회에 기여하면 된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안전 때문에 점차 건축 관련 법령이 복잡하고 까다롭게 되고 있다.

극심한 경쟁 때문에 시공업자들이 면허를 빌려서 공사를 하고, 부실공사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안전사고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럴 때 설계·감리자도 같이 조사를 받고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원을 채용하여 건축사업을 하려면 복잡한 세금문제를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 근로계약도 체결해야 한다. 직원들의 업무상 횡령 문제도 발생하기도 한다. 건설경기의 장기불황에 따른 사무실 운영도 걱정해야 한다.

설계·감리비를 둘러싼 분쟁도 적지 않다. 건축물저작권 시비도 가끔 생긴다. 이중사무소를 개설하

거나, 건축사 명의를 빌려주는 사례로 문제가 되기도 한다. 결국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법이란 존재는 개인이 사회활동을 하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기 방어 차원에서 중요하다. 때문에 건축사 여러분들은 평소에 자신과 가족, 사업체를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을 조금씩 알아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II. 사용승인제도란 무엇인가?

잠실에 우리나라 초고층 빌딩이 세워졌다. 2010년 롯데월드타워를 123층, 총면적 83만745㎡로 확대하는 설계 변경안이 통과되었고, 서울특별시의 건축허가도 받았다. 2014년 10월 제2롯데월드몰이 개장하였다. 롯데월드타워는 금년 말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롯데그룹에서 30여년에 걸쳐서 이룩한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에는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이 오랫동안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무려 123층이나 되는 초고층건물이 생긴 것이다. 롯데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자살한 부회장의 운구차량도 그가 생전에 안전관리위원장을 맡는 등 각별한 애정을 쏟았던 롯데월드타워를 거쳐 갔다.

하지만 이런 큰일을 하고 나서 롯데그룹은 형제간 분쟁이 생기고, 검찰에서는 비자금과 탈세 등으로 특별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잠실 제2롯데월드에 대한 인허가과정에서의 의혹이 아직까지 불식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는 롯데몰산이 제출한 제2롯데월드 안정성 연구용역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허가관청이 제2롯데월드에 대한 사용승인을 어떤 절차에 의해 어떻게 결론내릴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있었다. 공무원이 아주 엄격한 잣대로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고통을 많이 받게 된다. 건축주는 공사업자를 탓하게 되고, 설계와 감리를 맡은 건축사를 원망하게 된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분쟁이 시작된다. 사용승인을 제대로 받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지연되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공사를 설계도서대로 하지 않았거나, 부실공사를 한 경우, 또는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사용승인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허가기관에서 사용승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행정소송까지 하게 된다.

지금까지 사용승인을 둘러싼 소송에서 많은 대법원판결과 고등법원판결이 나와서 중요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 법원의 판결은 어떤 경우에 사용승인을 해주어야 하는가? 또 어떤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가?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공익과 사익의 균형 있는 조화를 도모하려는 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

Ⅲ. 사용승인신청절차

건축을 하는 과정은, ① 설계도서 작성 ② 건축허가서 수령 ③ 시공과 감리 ④ 공사완료보고서 작성 ⑤ 사용승인의 절차를 거친다. 이 중에서 사용승인은 건축의 마지막 단계로서 가장 중요하다. 사용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건축물을 본래 의도대로 사용할 수 있다.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건축공사를 완료한 다음,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축주는 사용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사용승인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감리완료보고서 ②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③ 건축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에는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등이다.

신청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7일 이내에 ①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②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는다.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서를 발급받는다.

건축주는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임시사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일 건축주가 이를 위반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건축법 제110조 제2호는 이러한 경우 건축주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건물이 허가된 용도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구청에서는 무단용도 변경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건축법 제19조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고 판단했다.

IV. 사용승인처분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

건축물(建築物)이라 함은 땅 위에 지은 구조물 중에서 기둥과 벽, 지붕이 있는 건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사용(使用)은 사물을 필요로 하거나 소용이 되는 곳에 씌운 의미한다. 승인(承認)이라 함은 어떤 사실에 대하여 정당하다고 인정함을 뜻한다. 사용승인은 허가받은 설계도서대로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함과 동시에 이제는 건축물을 용도대로 사용해도 좋다는 승낙을 의미한다.

종래에는 오랫동안 사용승인이라는 용어 대신 '준공검사(竣工検査)'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다. 준공이라는 말은 한자말로 공사를 다 마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준공검사(final inspection)라 함은, '완성된 공사의 위치, 치수, 계획고, 형상, 품질이 계약서의 규정과 합치하고 있는 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준공검사는 단순히 건축물의 공사완료 여부를 검사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준공검사가 끝나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사용승인은 적극적으로 건축물의 '사용'에 초점을 두고, 허가청이 사용을 허가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V. 사용승인은 허가처분에 종속된다

건축주는 반드시 허가받은 대로 건축을 하여야 한다. 만일 필요하면 설계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승인은 허가청이라는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사용승인과 건축허가는 명백하게 구분되는 행정처분이다. 사용승인은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그 내용대로 공사가 되었는지를 전제로 하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건축허가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건축허가처분에 종속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용승인은 건축허가와 동떨어져 생각할 수 없다. 사용승인은 건축주에게 새로운 권리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건축허가를 통해 포괄적으로 부여된 건축물을 생성할 수 있는 권능을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허가청이 법령에 의해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대법원 1993.11.9. 선고 93누13988 판결은, '건물준공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다.

다시 말하면, '건축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사용승인이라는 행정처분의 내용이다. 그럼으로써 건축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건축주가 받은 건축허가가 유효하게 성립하여 효력을 가지고 있는 한, 건축허가에 존재하는 하자를 이유로 허가청이 나중에 사용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4.4.29. 선고 93누11968 판결은 '건축물준공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소송'에 관한 것이다. 건축허가가 적법한 것으로 믿고 허가 내용대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건축물사용검사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건축주가 건축허가 내용대로 건축하였으나 건축허가에 하자가 있어서 위법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허가관청이 사용검사를 거부하려면 건축허가의 취소에 있어서와 같은 조리상의 제약, 즉 사용검사의 거부로 인하여 건축주가 입게 될 불이익과 건축행정상의 공익 및 제3자의 이익과 허가 조건의 위반의 정도를 비교교량하여 개인적 이익을 희생시켜도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건축허가가 적법한 것으로 믿고 그 허가내용대로 건축한 원고의 개인적 이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건물의 사용검사신청을 반려하여야 할 정도의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VI. 사업승인도면의 성질과 하자담보책임

어떤 아파트에서 입주자들이 사후에 확인을 해보니, 당초 분양한 회사에서 허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그러자 입주자들은 분양자가 처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사업승인도면과 달리 시공을 한 사실을 이유로 하자담보책임을 지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분양자는 비록 이 아파트는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는 다르게 시공되었지만,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분양자에게는 하자담보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그렇다면 아파트가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하기만 하면 그 자체로는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①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②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③ 주택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아파트 분양계약에서의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은 분양된 아파트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하거나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인정된다. 다시 말하면, 특별한 약정이 별도로 있으면 그에 따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업승인도면은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기본설계도서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업승인도면은 대외적으로 공시되는 것이 아니며

서 사업주체와 수분양자 사이에 사업승인도면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아파트를 분양할 때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업승인도면을 기준으로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건축과정에서 공사의 개별적 특성이나 시공 현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공사 항목 간의 대체시공이나 가감시공 등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설계변경의 경우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경미한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 대한 통보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변경된 내용이 모두 반영된 최종설계도서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게 된다. 그리고 사용검사 이후의 하자보수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실시하게 된다.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통상적으로 목적물의 설계변경 등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고, 주택 관련 법령이 이러한 설계변경절차를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계약에서의 분양받는 사람은 사업승인도면에서 변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최종설계도서에 따라 하자 없이 시공될 것을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체도 이를 계약의 전제로 삼아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되었더라도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14.10.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Ⅶ. 사용승인을 거절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공사가 완료된 다음 사용승인을 허가권자에게 신청하였는데,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해주지 않고 사용승인반려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허가권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OO구청장이 언제 건축주 OO에 대하여 한 사용승인반려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취지로 소장을 제출하게 된다. 사용승인을 해주지 않은 허가권자의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만일 법원으로부터 취소판결을 받게 되면 허가권자는 당연히 사용승인을 해주게 된다.

구체적인 사건을 보자. A는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을 매수하여 건물 내 주차장을 사무실로 용도변경하고 대신 주차타워를 건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도변경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그 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B구청장은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하였다. 그 대신 사무실로 용도변경하였던 것을 다시 원래대로 주차장으로 원상복구하라는 시정지시를 하였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이미 구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용도변경을 하였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해주지 않으니 답답했다. 변호사와 상의했더니 행정소송을 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건축주는 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사용승인반려처분을 취소하고, 시정지시처분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시작한 것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결국 건축주가 소송에서 이겼다.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해주지 않은 것과 시정지시를 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대법원은 ‘건축주가 용도변경 등의 신고 내용대로 용도변경 등을 하였으나 그 신고수리에 하자가 있어서 위법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관할관청이 사용승인을 거부하고 시정명령을 하려면 사용승인의 거부 내지 시정명령으로 인하여 건축주가 입게 될 불이익과 건축행정상의 공익 및 제3자의 이익과 관련 법령의 위반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개인적 이익을 희생시켜도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건축주가 신고수리가 적법한 것으로 믿고 그 신고내용대로 용도변경 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의 개인적 이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하고,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까지 할 정도의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건축주의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을 따져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하고 시정명령까지 해 가면서 지켜야 할 공익이 있느냐 하는 것을 면밀히 따져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선불리 건축주의 개인적 이익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사용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다.

현실에 있어서는 건축공무원들은 조금이라도 법령에 위반되거나 하자가 있으면 그것을 문제 삼아 사용승인을 거부한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지시를 한다. 그러나 법원에 가서는 사안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우선 행정법규에 의한 개인의 권리제한, 자유제한이 정당화되기 위한 정도의 공익적 목적이거나 법익의 침해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다. 이것이 말하자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개인의 사법적 구제절차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VIII. 대지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의 사용승인 여부

원래 당초 허가받은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완료되었으면 허가권자는 당연히 사용승인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사용승인을 받는 것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허가를 받은 다음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사용승인이 거부되는 경우가 문제 된다.

어떤 사안에서 건축주는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받은 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당초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대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렇게 되자 허가권자는 건축주의 사용승인을 반려하였다. 이 사안을 보면, 무려 24명이나 되는 건축주가 OO구청장으로부터 적법하

게 건축허가를 받았고, 공사를 마친 다음 임시사용승인까지 받았다. 그런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대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처분이 되지 않자, 건축주들은 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도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대법원은 ‘건축주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건축행정상의 공익 및 제3자의 이익 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커서 건물의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이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논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즉,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그 허가를 기초로 하여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건축허가를 받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건축행정상의 공익 및 제3자의 이익과 허가조건 위반의 정도를 비교·교량하여 개인적 이익을 희생시켜도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건축주가 건축허가 내용대로 완공하였으나 건축허가 자체에 하자가 있어서 위법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허가관청이 사용승인을 거부하려면 건축허가의 취소에 있어서와 같은 조리상의 제약이 따르고, 만약 당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사용승인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미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적법하다고 내준 경우에 건축허가 자체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위법한 건축물이라고 단정하고, 사용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하자가 있어서 위법한 건축물인 것은 맞더라도, 이미 허가가 난 건축물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려면 조리상의 제약이 따르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리상의 제약 때문에 이미 해준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이다.

IX. 건축주 아닌 제3자가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가?

어느 아파트에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였다. 그러자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허가권자에게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즉, 사용검사처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한 사용검사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한 것이다.

이 소송에서 가장 커다란 쟁점은 과연 아파트 입주자들이 아파트에 시공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분양자가 이미 받은 사용검사처분 자체를 취소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소송에서 법률상 이익이 없으면 소송은 각하된다.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에서 아파트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이와 같은 사건에서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때문에 아파트 입주자와 입주예정자들이 낸 행정소송은 각하결정되고 말았다.

대법원의 논리는 무엇이었을까 살펴보자. '사용검사처분은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데에 그친다. 그러므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검사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건축물에 있는 하자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또한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사용검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에 그칠 뿐 곧바로 건축물의 하자 상태 등이 제거되거나 보완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들은 사용검사처분을 취소하지 않고서도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및 하자 등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사업주체 등으로부터 하자 제거·보완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볼 때 아파트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X. 공장등록취소가 잘못이라는 소송

A 회사는 B 시장에게 공장설립을 신청하여 공장설립승인을 받았다. 그 후 회사는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였고, 공장등록증명서를 교부받고 공장건축물사용승인까지 받았다.

인근 주민들이 A 회사의 방사능 안전성 때문에 반대 시위를 벌이자 B 시장은 A 회사에 대해 공장등록취소처분을 하였다. 공장을 지은 회사로서는 커다란 손해를 보게 되었다. 때문에 허가권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게 되었다. A 회사는 B 시장을 상대로 공장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 과정에서 시청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공장등록처분이 법에 위반된 것이 아니라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회사는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시청에서는 회사가 시청 공무원들 속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에서는 회사가 시장을 속인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위 부정한 행위는 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장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B 시장이 공장등록처분을 취소한 사유, 즉 처분사유가 모두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처분을 그 취소요건을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판결하였다.

원래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와 같은 침해적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때문에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사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청이 공장의 등록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와 같은 침해적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사

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법원칙과 논리에 따라 결국 법원은 위 사안에서 시장이 한 공장등록취소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법원에서 이러한 판결을 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시위를 하여도 시장은 더 이상 공장등록을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XI. 업무대행자제도의 문제점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제도를 둘러싸고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14년 6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제도개선'을 의결하여, 대상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에게 권고하기도 하였다.

업무대행 검사원은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도서를 인수하여 허가사항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현장조사·검사·확인 후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는 공사완료보고서에 의하여 구조안전, 품질시공 등 모든 시공과정에 대해 책임지고 감리업무 수행한다. 허가권자는 업무대행자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받아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사용승인 신청서를 처리한다.

업무대행자가 위법사항 묵인 등 불성실하게 사용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09조에 의거 형사고발당한다. 업무대행자는 공무원신분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위 규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건축사법 제28조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XII. 맺는 말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3만원, 5만원, 10만원의 제한이 있다. 이 법에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동안 몇 십 년 간 사회적 관행처럼 되어 왔던 공직자등의 접대문화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사도 이 법의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정한 사안에 있어서는 건축사도 공무원의 신분으로 의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관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인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해서도 안 된다. 일단 법으로 정해졌으면 무조건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법을 무시하거나 법을 몰랐다는 경우 그 불이익은 고스란히 그 사람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건축물 사용승인을 둘러싸고 업무대행자와 허가 담당공무원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거래, 또는 법을 위반하는 접대행위는 모두 금지되어야 한다.

UIA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 조직위원회 출정식 개최



UIA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가 개최되기까지 1년을 앞두고,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 출정식이 개최됐다. 개최 365일 전인 9월 2일 서초동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이번 출정식에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재해성 위원장, 국토교통부 안충환 건축정책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정유승 국장, 한국건축단체연합(FIKA) 조충기 대표회장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건축인 100여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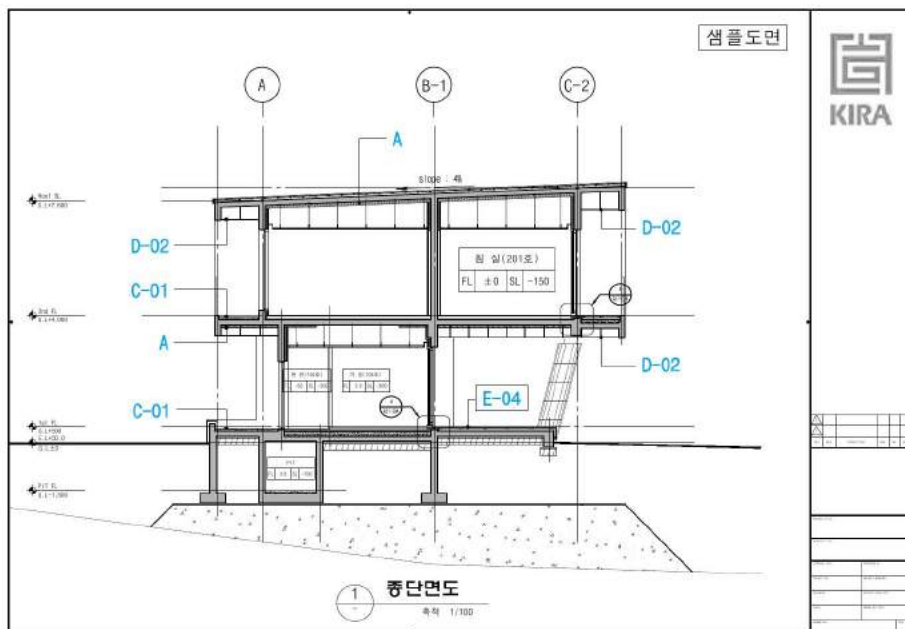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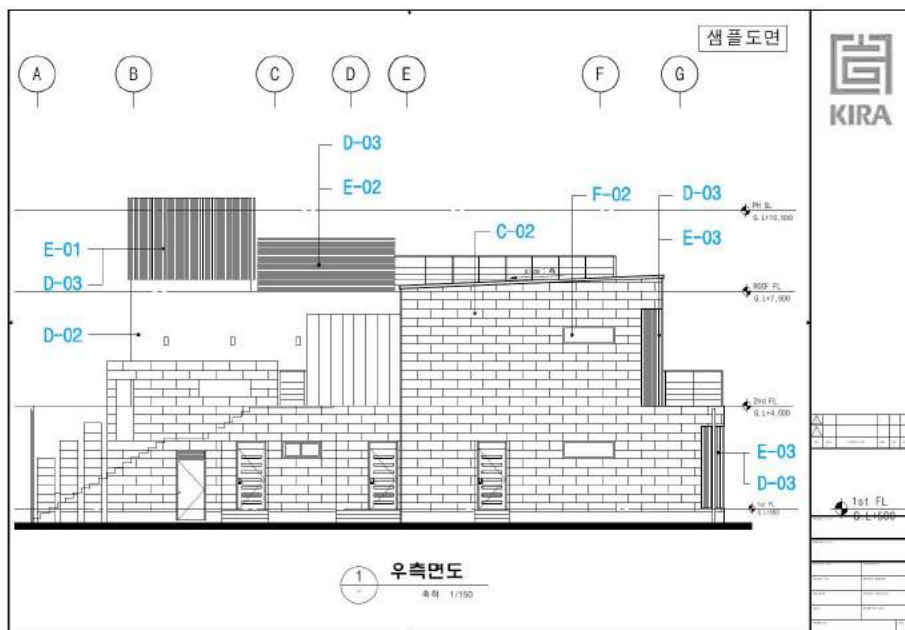
UIA 세계건축대회는 1948년 스위스 로잔에서 첫 대회를 시작으로 약 7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대회로 3년마다 세계적인 건축 문화 축제이며 건축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국제행사이다. 2017년에 개최될 이번 서울 대회는 중국과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3번째로 열린다.

<UIA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 개요>

일시	2017년 9월 3일(일)~10일(일)
장소	서울 삼성동 코엑스 및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대주제	'도시의 혼(SOUL of CITY)'
소주제	'지속가능도시(Nature)', '역사문화도시(Cul-ture)', '하이테크도시(Future)'
프로그램	학술발표 및 전시, 현장투어 등 - 학술프로그램 : 기초연설과 기조포럼, 논문·디자인 작업 발표 세션, 특별 세션 등 - 학생 및 젊은 건축인 플랫폼 : 학생공모전, 어린이 건축 한마당, 포럼·전시 등 - 공식사교행사 : 환영연, 개회식, UIA 시상식, 공식만찬 등
초청연사(예정)	데이빗 래더배로우(David Leatherbarrow) 교수 / 펜실베이니아 대학 도미니크 페로(Dominique Perrault) 교수 / 로잔공과대학 빌리 치엔(Billie Tsien) / TWBTA 공동설립자 존 페포니스(John Peponis) / 조지아공과대학 켄고 쿠마(Kengo Kuma) / 일본건축사 하니 라쉬드(Hani Rashid) / 아심토프 공동설립자,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자재 품명표기 방법' 배포

 KIRA



대한건축사협회(이하 사협)이 설계도서 건축자재품명표기 방법을 내놨다. 사협은 9월 19일 기존 자재표기 문제점을 보완한 '건축자재 품명표기 방법'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자재 품명표기 방법은 2015년 10월 5일 시행된 '착공신고 때 건축물의 설계도서 건축자재품명 등의 표기 의무화'에 따른 것이다. 건축사의 자재선택 권한·책임 부여를 주요골자로 해 시행된 제도다. 하지만 '착공 시 자재표기 구체화' 법안에 자재표기 방법이 별도로 제시돼 있지 않아 자칫 설계자와 자재·유통업자 혼란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사협은 건축사업계 혼란과 피해를 예방코자 그간 '건축자재 품명표기 방법'을 검토·연구하고, 그 결과를 전국 시·도건축사회 의견을 수렴해 내놓은 것. 향후 사협은 자재관련 서방서, 상세도면, 시험성적서 및 각종 자재속성 정보도 회원이 열람·활용할 수 있게 건축자재정보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건축자재 품명표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건축자재일람표를 개요 이후에 별도로 도면으로 신설배치한다. 그런 후 건축자재일람표에 표기된 기호를 입면도, 실내재료마감표, 실내재료 마감 상세도에 기재하면 되는데, 일람표 상의 기호는 설계자가 임의(예 : A, B, C)로 지정하면 된다.

2016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대상 수상자 발표

올해의 신진건축사를 가리는 '2016 대한민국신진건축사대상' 수상자가 선정됐다. 대상 수상자인 한보영 건축사는 '하동 두 마당집+정금다리카페'로 자연과의 조화, 전통적인 내외부 공간의 연결, 주변경관을 고려한 재료선택과 마당을 통한 배치계획이 높이 평가 받았다.

대상과 최우수상은 국토교통부장관상이 수여되고, 우수상 5명에게는 대한건축사협회장상이 수여된다. 수상자에게는 전 사회 개최, 수상작품 소개자료 배포, 중앙·지방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 및 국토부 시행 각종 공모전·시범사업의 자문 위원 등으로 위촉하며 신진건축사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한 대학생 인력고용을 지원한다.

시상식은 10월 25일 서초동 건축사회관에서 한국건축문화대상과 함께 개최되고, 수상작 전시회는 2차로 나뉘, 1차는 10월 25일~28일까지 건축사회관 1층 로비에서, 2차는 11월 16일~19일까지 코엑스에서 한국건축산업대전과 연계해 개최될 예정이다.

구 분		작 품 명	성 명 / 사 무 소
국토교통부 장관상	대 상	하동 두 마당집 + 정금다리카페	한보영 / 종합건축사사무소 이한
	최우수상	온유재	정우석 / 건축사사무소 공장
		도서출판 갈무리 독립공간[빨]	조한준 / (주)건축사사무소 더함
대한건축사 협회장상	우수상	사이를 이어주는 집: LIFE_FACTORY 間	남기봉 / 남기봉 건축사사무소
		신설동 한옥 리모델링	유종수 / (주)코어 건축사사무소
		나풀나풀	전상규 / 보편적인 건축사사무소
		스페이스 인 핸드	정웅식 / (주)온 건축사사무소
		남원읍사무소	홍광택 / 건축사사무소 홍건축

건축종합정보센터 CAD 구매자 사용후기 조사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종합정보센터(KIRA-HUB)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구매서비스 중 BricsCAD와 ZWCAD프로그램의 구매자 만족도와 불편사항을 조사했다.

대한건축사협회 강주석 정보전산실장은 “지금까지 대안 CAD들이 처리 속도와 프로그램 다운 등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됐는데 반해 이번 사용 후기 조사 결과 협회 차원에서 공동구매로 판매하고 있는 BricsCAD와 ZWCAD는 속도와 안정성에서 매우 큰 만족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또한 “3rd Party와 ZWCAD2017은 협회가 추진하는 공동구매서비스를 통해 최초로 배포되는 점에서 시행착오가 있지만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당 업체와 조율해 조속히 해결할 것이며,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사용자의 불편사항을 체크해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로그램	사용후기
BricsCAD	안정성과 속도에 문제를 못느꼈으며 A**사 CAD와 비교해 명령체계가 거의 유사해 큰 불편 없이 사용중
	안정성과 속도에 문제가 없었으며 A**사 CAD 대비 기능이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어 초반 1주 정도 약간의 혼동이 있었으나 현재는 직원들도 만족하고 잘 사용중
	A**사 CAD와 비교해 기능면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가격대비 크게 만족하며 사용중
	A**사 CAD와 큰 차이 없이 사용중
	3rd Party의 경우 메뉴구조가 혼동스러움
	3rd Party 동영상 필요함
	엔진은 이상 없으나 3rd Party에서 사용자정의 문그리기, 벽체선 그리기에서 오류 있어 담당자에게 연락 후 조치를 기다리고 있음
ZWCAD	안정성과 속도가 좋고 현재까지 큰 지장 없이 사용중
	- 속도도 빠르고 다운 등 애러도 없음 - 기능상 소소한 오류가 있으나 A**사 CAD와 비교해 80% 정도 만족함
	A**사 CAD로 작업한 Block이 사라지는 현상이 있었으나 담당자와 통화 후 10월 서비스팩1이 나오면 개선된다고 해 기다리는 중임
	기능상 소소한 오류가 있는데 일부는 업체와 연락해 조치 받았으며 버그리스트를 정리해 업체로 메일 발송해 개선을 기다리고 있음

대한건축사협회, 경주 지진 피해 현장조사



대한건축사협회는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경북 경주시의 건축물 피해유형과 원인 조사 등을 실시하고 조속한 피해 복구와 향후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지진 피해 직후 현장 피해조사에 경북건축사협회와 지역건축사회 회원들이 참여했고, 9월 23일에는 대한건축사협회 조충기 회장이, 9월 26일에는 법제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협회 차원의 지원 방안과 제도개선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경주지역건축사회 장부기 회장은 “경주지역건축사회 회원과 인근 지역 건축사회 회원들이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건축물 피해 조사에 나섰다”며 “조사된 안전점검 대상 건축물은 3,232건으로 그 중 건물균열이 1,132건, 기와탈장 등 지붕파손이 2,101건으로 조사됐다”며,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전통 목조기법으로 지어진 한옥 등은 피해가 경미하거나 안전했지만, 콘크리트 블록에 기와를 올린 건축물이 피해가 컸다”고 말했다.

9월 23일에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해성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안충환 건축정책관과 함께 대한건축사협회 조충기 회장이 경주 한옥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한옥 건축물의 피해상태를 점검하고, 보수·보강 방법 등의 조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에서 조충기 회장은 “최근 한옥의 내진 성능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이번 피해는 천년을 이어온 경주 한옥의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기와와 같은 지붕재료의 문제로 보여진다”며 “국민이 안전하게 경주관광을 하기에는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경주지역건축사회 장부기 회장은 “이번 지진을 계기로 재난 피해 조사와 복구 등 대응 매뉴얼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현장을 방문한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회 김영훈 위원장은 “지자체별로 노후 건축물 전수조사 후, 건축물 유지관리점검을 시행해야 하며,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자 발표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서울경제신문이 공동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가 주관하는 2016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작이 발표됐다. 올해 출품작은 준공건축물부문 114점, 계획건축물부문 309점 등 총 423점이 응모됐다. 시상식은 10월 25일(화) 14:00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리며, 수상작은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건축사회관 1층에서 전시된다.

□ 준공건축물부문

◦ 大賞

부문	작 품 명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사회공공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	고성호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대림산업(주)	경기도
민간	씨마크 호텔	최현재 (주)현대종합설계건축사사무소	현대건설(주)	현대중공업(주)
공동주거	LH 강남 힐스테이트	김동수 (주)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현대건설(주)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반주거	유 리트리트	곽희수 (주)이မ် 건축사사무소	동우공영(주)	서윤원, 김선옥

◦ 本賞

부문	작 품 명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사회공공	세종특별자치시 청사	정영균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계룡건설산업(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민간	호텔 오라	임재용 (주)건축사무소 오씨에이	(주)이든종합건설	정흥채
공동주거	래미안 이촌 첼리투스	오찬재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삼성물산(주)	렉스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
일반주거	한옥 3.0	허진성 (주)유현준 건축사사무소	김세영	김세영

※ 작품명 한옥 3.0은 시공자, 건축주가 동일인이므로 건축주만 시상

◦ 優秀賞

작품명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홍현, 북촌마을 안내소 및 편의시설	윤승현 건축사사무소 인터카드	(주)일이종합건설	종로구청
경상북도 본청 및 의회청사	정영균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대우건설	경상북도지사
태화강생태관	김진한 (주)씨에스종합건축사사무소	태성종합건설	울주군수
대가야 문화누리	신동재 (주)다울건축사사무소	다인산업개발(주)	고령군수
독립기념관 겨레누리관	박재유 (주)제이유건축사사무소	(주)금성백조건설	독립기념관장
청년공간 무궁역지대 대방동	강주형 (주)생각나무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	서울특별시SH공사	서울특별시
대통령기록관	박도권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대림산업(주)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장
현대카드 뮤직라이브러리	고대곤 (주)가이건축사사무소	현대건설(주)	현대카드 주식회사
블랑블루	김성일 건축사사무소 숲	이승연	이승연
제니타스 빌딩	류재은 (주)종합건축사사무소시건축	(주)평화종합건설	유한회사 제니타스프로퍼티즈
CJ BLOSSOM PARK	정영균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씨제이건설(주)	씨제이제일제당(주)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이정훈 조호 건축사사무소	(주)제호	(주)태진인터내셔널
동해화력 사택 및 체육관	조영돈 (주)유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신일	한국동서발전(주)
위례신도시 아이파크 1차	임진우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현대산업개발(주)	(주)하나자산신탁
진 집	김경희 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주식회사 태인건설	도대석
다락다락 근린생활시설	이충철 (주)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김성식	박평희
켜	곽상준 (주)건축사사무소오비비에이	효상건설(주)	김성연, 전성자
청라파크 자이 더테라스	이강우 (주)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	GS건설(주)	김성민

※ 작품명 블랑블루는 시공자, 건축주가 동일인이므로 건축주만 시상

□ 계획건축물부문

◦ 大賞

작 품 명	출품자(학교명)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확장하는 도시 공간제안	이건엽, 신새벽, 권오균(경희대학교)

◦ 最優秀賞

작 품 명	출품자(학교명)
TELESCOPIC NETWORK	이선미, 이여빈, 김수환(중앙대학교)
엇갈린 시간을 잇다	임재선, 최세린, 이범호(청주대학교)
놀이터	김선민, 김지훈, 기민지(중앙대학교)

◦ 優秀賞

작 품 명	출품자(학교명)
맨발의 도시인 _변화한 일상 속 새로운 연결고리 탐색	정은호(명지대학교)
방들의 사회	박현민(국립 목포대학교)
레인보우 시티	조병호(한밭대학교)
삼정목	박경용, 김해성, 박찬희(인하공업전문대학)
라이블리지	김현규(중앙대학교)
#다운 #타운	이민호(한밭대학교)
오래된 미래	윤소희(경기대학교)
서촌 홍길동	이상철(공주대학교)

◦ 入選

작 품 명	출품자(학교명)
서문시장, 기억의 길, 새로운 길	김상민, 성은주, 김소연(공주대학교)
진주성, 그 옛 향취의 현대적 재구성을 통한 역사문화와의 소통	최순기, 이경준, 백승엽(홍익대학교)
행연行緣; 행위를 통해 연결되는 우발 공동체	현원철, 이창열(중앙대학교)
Den-co villa:1인 창업가들을 위한 협업 사옥	김연진, 조병찬, 이건희(공주대학교)
유쾌한 고립	김이슬(한밭대학교)
가치 공유를 위한 복합주거 계획안	이강혁, 김윤진(홍익대학교)
경계흐리기를 통한 공유하기	민기홍, 주대한(고려대학교)
여정으로써의 주거	성주엽, 조혜신(홍익대학교)
인(人)큐베이터	김준길, 박현규, 최종민(청주대학교)
참여_1인가구 협동조합공동주택	김대천(서울시립대학교)
인큐베이팅 - 이지트	이대훈, 김진우(경남대학교)
1.8평, 살 맛나는 이야기	오정미(전주대학교)
향교로 가는 길, 그 세 개의 공간	배정기, 장우동, 조현서(공주대학교)
다시부는 목척시장의 바람	이용진, 이다화, 이수연(충북대학교)
소유를 공유하여 배려를 나누다	이영조(창원대학교)

건축사공제조합 공식 출범식 개최



건축사공제조합이 공식 출범식을 갖고 새출발을 다짐했다.

9월 22일 디 TOWER에서 개최된 건축사공제조합 출범식에는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와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제해성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과 안충한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조충기 대한건축사협회 회장과 유관단체 장, 조합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새로운 출범을 축하했다.

이번 출범식에서 김영수 이사장은 “미래성장을 위한 시장 점유율 향상, 사업다각화를 통한 신 성장동력 확보, 공제조합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힘쓰겠다”며 “고객감동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 제공, 대외 신인도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건축사협회 조충기 회장은 축사에서 “건축사공제조합이 건축사를 위한 전문 금융기관으로서 건축사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건축사공제조합은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계약·선금금 지급과 하자이행 등의 보증사업,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 등의 공제사업뿐만 아니라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을 제공한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제2회 중·고등학생 건축사진공모전



서울특별시건축사회가 9월 26일 서초동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제2회 중·고등학생 건축사진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서울의 건축 II'을 주제로 이준(대청중 1년·사진)군 외 41명이 수상했다. 전시는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건축사회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됐고 10월에는 시민청 시티갤러리와 광화문역 대합실에서 진행된다.

경기도건축사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건축사회가 9월 2일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도와 농협 경기본부, 경기도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기도축산발전협의회와 경기도 내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조기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건축사회는 지역건축사회에 대한 정보와 적정수준의 용역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라북도건축사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전달



전라북도건축사회가 9월 9일 추석을 맞아 전북도청을 방문해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종성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양주지역건축사회, 불우이웃돕기 쌀 150포 기증



양주지역건축사회가 9월 2일 양주시청을 방문해 이성호 양주시장을 접견하고 추석을 맞아 불우이웃돕기 쌀 150포를 기증했다. 전달된 물품은 양주시 관내 11개 읍면동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주지역건축사회, 사랑의 백미 500kg 전달



전주지역건축사회가 전라북도건축사회와 공동으로 9월 5일 전주시 서서학동주민센터를 방문해 '2016 추석명절 사랑나눔봉사'의 일환으로 사랑의 백미 500kg을 관내 불우한 이웃에게 써달라며 전달했다.

춘천지역건축사회,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



춘천지역건축사회가 9월 26일 춘천시 동면 지내리의 한국해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현장을 방문해 후원금 200만원을 전달하고 집짓기 봉사활동에 참가했다. 춘천지역건축사회 회원과 가족들이 지붕 아스팔트 싱글 작업에 일손을 보탬으로써, 춘천지역건축사회 석근호 회장은 "건축전문가 단체로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6년도 건축사자격시험 5,347명 응시

2016년도 건축사자격시험이 9월 3일(토) 전국의 15개 시험장(서울 10개, 부산 2개, 대구 1개, 광주 1개, 대전 1개)에서 시행됐다.

지난 7월 6일~13일까지 8일 간 대한건축사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원서접수 프로그램을 통해 6,147명이 접수한 이번 자격시험에는 현장집계 결과 5,347명이 응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각 교시별 응시현황으로는 1교시 '대지계획'에 원서접수 5,341명 중 3,901명이 실제 응시해 응시율 73.0%로 집계됐고, 2교시 '건축설계 I'에는 5,707명 중 4,478명이 응시해 응시율 78.5%로 집계됐다. 3교시 '건축설계 II'는 5,588명 중 3,991명이 응시해 응시율 71.4%로 집계됐다. 시험과목별 응시자수는 '건축설계 I'의 응시자가 제일 많았고, '건축설계 II', '대지계획' 순이었다. 건축사자격시험은 각 과목 당 180분씩 진행되며, 응시 자격은 5년제 건축학과 졸업 후 3년 이상의 실무수련을 완료한 자나 건축사예비시험을 통과하고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이다.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는 5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필요로 한다. 외국건축사는 1교시가 면제된다. 과목별 합격으로서 각 60점 이상, 5년 동안 3과목 합격 시 건축사 자격증이 부여된다.

합격예정자발표는 10월 28일(금) 국토교통부(www.molit.go.kr)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알립니다

본지 제569호 본문내용 중 「일본 소형·대형 건축사사무소 및 대학 BIM 관련 인터뷰」와 「중소건축사사무소 BIM 도입 사례」는 국토교통부 도시건축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비지원(15-AUDP-C067817-03)에 의해 수행된 연구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부록1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Q&A 사례

※ 본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Q&A 사례집과 매뉴얼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일부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저작권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습니다.

I. 적용범위

Q. 공직유관단체와 출연·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도 법 적용대상인지?

- A. 공직유관단체와 출연·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사람은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공직유관단체 소속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Q. 모든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 A.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고,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경우 그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음

Q.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 A.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관련 규정만 적용되고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Q. 공무수행사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공무 수행과 관련없이 받아도 처벌되는지?

- A.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만 제8조의 금품등 수수 금지규정이 적용되므로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경우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경우에만 금지됨

<구체사례>

공무수행사인의 범위(1)

Q. (1)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2) 청탁금지법 제 2조 제2항 제 1호·제 2호에 따라 법인·단체가 권한을 위임·위탁받아 공무수행사인이 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도 공무수행사인인지?
- (3) 공무수행사인이 되는 경우 수탁된 공무 외에 다른 업무와 관련하여서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 A. (1)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공무 수행을 위해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수행 사인으로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함(제11조제1항제1호내지제4호)
- (2)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대표자와 실질적으로 수임·수탁 업무 종사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함(제11조제1항제2호·제4호)
- (3)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수행에 관하여 부정청탁 금지 및 수수 금지 금품등 수수의 금지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제11조제1항)

공무수행사인의 범위(2)

Q.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 역시 공직자로 간주되는데 이러한 “법령”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외에 각종 조례 고시 내규 등도 포함되는지?

- A.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시행령), 국무총리령, 부령(시행규칙)이 포함되고 상위법령에 위임근거를 두고 있는 조례 고시 훈령 등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역시 공무수행사인으로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도 공무수행사인으로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제11조제1항제1호)

※ 일반적으로 ‘법령’은 법률,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됨(헌재 2009. 7. 30 2007헌바75 결정)

※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법령’에 조례·규칙이 포함됨을 명시

‘공직자등’에 포함되는 자 중 ‘직원’의 범위

Q. 공직자 등의 정의와 관련하여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 및 언론사의 경우에는 임직원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물리적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예컨대 수위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자 운전자 등이나 계약직 임시직 등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지?

A.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 포함. 다만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용역·도급 계약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공적 업무 종사자의 업무 범위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적 업무'는 해당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전체 업무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 언론사의 경우 보도, 논평, 취재 외에 행정, 단순 노무 등에 종사하는 자도 '공직자등'에 해당
- ▶ 학교법인,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직원으로서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
- ▶ 한편, 학교법인 및 언론사의 고문의 경우에도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되면 "공직자등"에 해당될 수 있음

‘언론사의 임직원’의 범위

Q. 언론사 비등기이사 프리랜서 기자 언론보도와 무관한 업무를 하는 직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인지?

A. 비등기이사 언론사 비등기이사는 언론사 임원 이사 감사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프리랜서 기자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라 언론사와 용역·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언론보도와 무관한 업무를 하는 직원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 ▶ 임원 :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하며, 상임 및 비상임을 모두 포함
- ▶ 직원 :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
 - 보도·논평·취재와 그 밖에 경영, 기술, 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도 직원에 포함
 - 다만 언론사와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은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언론사의 임직원에 포함되지 않음

사외보 발행 회사가 ‘언론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Q. 회사에서 사외보를 발행하고 있지만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상 신고나 등록은 하지 않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언론사에 해당하는지?

A.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기간행물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언론사 해당하지 않음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언론사’는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함

- 이 중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함

인터넷신문사업자인 비법인사단 임직원 전체가 ‘공직자등’인지 여부

Q. 케이블 방송협회 이하 협회 는 케이블 방송사업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 이면서 케이블 이라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이기도 한 경우, 협회의 대표자와 임직원 전체에 대하여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A. 케이블 발행 부서 책임자와 그 소속직원만 적용대상에 해당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언론사’는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함

- 협회는 ‘□□케이블’이라는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이므로, 언론사에 포함됨

▶ 다만, 사보·협회지 등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법인·단체 등이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간행물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대상에 해당

II. 부정청탁 금지

Q.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란 무엇인지?

- A.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패 빈발분야의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함(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를 포함)

Q. 법에 열거된 14가지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외의 청탁은 해도 되는지?

- A. 청탁금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부정청탁행위 외에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은 공무원 행동강령 또는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행동강령이나 윤리강령에 따라 규율됨

Q.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그에 따라 공직자등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대상이 되는지?

- A.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한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청탁 내용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 자는 제재대상에 해당함

Q.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도 제재대상인지?

- A. 미성년자를 위한 부정청탁도 그 효과가 제3자인 미성년의 자녀에게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하여 제재대상임

Q. 가족을 위해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 A.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에 따른 법적 효과(이익·불이익)가 직접 청탁행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가족을 위한 부정청탁도 그 효과가 제3자인 가족에게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함

Q.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누가 제재를 받는지?

- A. 법인 소속 임직원의 업무 관련 부정청탁은 제3자인 법인을 위한 부정청탁이므로 부정청탁을 한 임직원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법인도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지 않았다면 법 제24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함

Q. 이해당사자는 자신의 일에 관하여 직접 부정청탁을 해도 되는지?

- A. 이해당사자가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지만 금지되는 행위이므로 부정청탁자가 공직자등인 경우 징계대상은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형사처벌 대상임

Q.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직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해도 되는지?

- A.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형식적 요건)에 따르는 이상 그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예외사유에 해당함

Q. 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에서 공개적으로요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A. 공개적으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요구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이상 그 방법은 불문함. 다만 공개적으로 요구한 후 다시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부탁하는 행위는 별개의 요구행위로 부정청탁이 성립될 수 있음

Q.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 A.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함

Q.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는지?

A.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라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함

Q. 기관장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았으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A. 결재선상에 있거나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도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라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함

Q. 공직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를 하였는데, 그 후 다른 사람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는지?

A.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동일한 부정청탁인지 여부는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공직자등을 기준으로 내용의 본질적 동일성 여부로 판단하므로 처음 부정청탁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동일한 내용으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함

<구체사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의 범위(1)

Q. 지역주민 A가 지인인 ○○시청 건축과 과장 甲에게 관계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축허가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甲은 같은 과 소속 건축허가 담당 주무관 乙에게 증축허가를 하도록 지시하고, 乙이 이를 이행한 경우, 甲, 乙,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는지?

A. ▸ A는 토지형질변경의 이해당사자로서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됨
 ▸ 甲은 건축과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부정청

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제6조, 제22조제 2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제21조)

- ▶ 乙도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도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제6조, 제22조제 2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제21조)

▶ 부정청탁행위의 상대방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의 의미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①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 ②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 국장 등 ③ 내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결권을 위임받은 경우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봄
- 다만,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직책에 있는 공직자등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포함되지 않음(신고의무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질 우려)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의 범위(2)

Q. A회사 직원 B가 지역유지인 사업가 C를 통해 ○○시청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甲에게 관계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허가가 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甲은 □□구청 사업허가 담당공무원 乙에게 위 부탁을 전달한 경우 甲, 乙, A, B, C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는지?

- A. ▶ 직원 B는 제3자(A회사)를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 해당하므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함(제5조제1항, 제23조제2항)
- ※ '제3자(A회사)를 위한' 부정청탁(제23조제2항)임과 동시에 '제3자(C)를 통한' 부정청탁(제23조제3항)인 경우에는, 제23조제3항이 아니라 제23조제2항이 적용됨
 - ▶ A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나, 직원 B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면책될 수 있음(제24조)
 - ▶ 사업가 C는 제3자(A)를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 해당하므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함(제5조제1항, 제23조제2항)
 - ▶ 甲은 담당공무원 乙의 업무처리 관련 결재권 또는 지휘감독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직무를 수

행하는 공직자등”에는 해당하지 않고 제3자(A회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 乙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제5조제1항, 제23조제1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함(제21조)

- ▶ 乙은 거절·신고의무 등을 이행할 경우(제7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니지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제6조, 제22조제2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함(제21조)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1)

Q. 이해당사자가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것은 괜찮은지?

A. 청탁금지법상 이해당사자가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것은 금지되나(제5조제1항), 공공기관과 국민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 기회 보장 등을 위해 입법정책적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 청탁금지법상 제3자를 통해 공직자등에게 청탁하는 행위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청탁하는 행위도 금지되나(제5조제1항), 입법정책적으로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본인이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 한편, 이해당사자가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담보(제6조, 제22조제2항제1호)
- 참고로, 이해당사자가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므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고(제21조), 이해당사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2)

Q.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군청 담당 공무원 甲에게 토지 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甲을 직접 찾아가 허가를 내 줄 것을 청탁한 경우 甲과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는 받는지?

- A. ▶ A는 토지형질변경의 이해당사자로서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됨
- ▶ 甲은 거절·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제6조, 제22조제1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함(제21조)
- ▶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토지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제5조제1항제1호)
- ▶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가 직접 청탁행위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의미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의 의미(1)

- Q. 법령을 위반하여 행위를 하도록 요청한 경우에 부정한 청탁이 성립하는 것이라면 공직자등에게 어떠한 행위를 부탁하면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재량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또는 법대로 하여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 A. 형식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처리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이었고 이에 대해 청탁을 하는 자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간에 내심의 의사가 합치하여 법령을 위반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음
- ▶ '법령을 위반하여'에서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이 포함되고, 부정청탁 대상 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의 일반 법령도 포함되며, 각종 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절차법도 포함됨
-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훈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의 위반은 곧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음. 다만, 행정조직 내부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경우는 법령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무처리준칙 위반 자체가 상위법령위반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경우라면 법령 위반에 해당함

- 비례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등과 같은 일반 법원칙은 개별 법령의 해석·적용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있으나, 법령의 매개 없이 일반 법원칙이 바로 법령을 위반하였는지의 판단기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법령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는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제정한 규칙을 의미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의 의미(2)

Q. 건설업체 직원 A가 구청 인·허가 담당자 甲에게 ‘민원을 빨리 처리해달라’ 또는 ‘서둘러 허가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이런 부탁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 A. ▶ 형식상 ‘서둘러 허가를 해 달라’는 부탁이 실질적으로는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이었고 이에 대해 청탁을 하는 자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간에 내심의 의사가 합치하여 법령을 위반한 직무수행(관계법령상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해줌)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음
- ▶ 다만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 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 문의 등을 하는 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음(제5조조제2항제4호)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의 의미(3)

Q. 지역주민 A가 ○○시청 소속 건축허가 담당공무원 甲에게 ‘이번에 어떻게든 증축허가를 꼭 받아야 하니, 잘 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한 경우 甲과 A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지?

- A. ▶ 부탁의 의미가 실질적으로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증축허가가 나도록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이었고, 이에 대해 청탁을 하는 자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간에 내심의 의사가 합치하여 관계 법령상 증축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축허가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음
- ▶ A의 부탁이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A는 직접 자신을 위하여 청탁한 경우로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됨

- ▶ 甲은 거절·신고의무 등을 이행할 경우(제7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니지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제6조, 제22조제2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함(제21조)
- ▶ 다만, '잘 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의 의미가 증축허가 절차나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질의하는 취지일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를 해달라는 것은 아니므로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 ※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음(제5조제2항제6호)
- ▶ 직무수행 공직자들은 부탁의 취지가 불명확하거나 부정청탁인지 여부가 애매할 때에는 부탁의 내용과 취지 등을 확인하여 문서화하고 청탁방지 담당관과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인·허가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

Q.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군청 담당 공무원 甲에게 토지 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친구인 B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토지소유자 A의 친구 B는 다시 자신의 친구인 ○○군청 지방세 담당 공무원 乙을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경우 甲, 乙, A, B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는지?

- A. ▶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토지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음(제5조제1항제1호)
- ▶ A는 제3자(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함(제5조제1항, 제23조제3항)
 - ▶ B는 제3자(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함(제5조제1항, 제23조제2항)
 - ※ '제3자(A회사)를 위한' 부정청탁(제23조제2항)임과 동시에 '제3자(乙)를 통한' 부정청탁(제23조제3항)인 경우에는, 제23조제3항이 아니라 제23조제2항이 적용됨
 - ▶ 乙은 제3자(A)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함(제5조제1항, 제23조제1항제1호)

- ▶ 甲은 거절·신고의무 등을 이행할 경우(제7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니지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제6조, 제22조제2항제1호)이며, 징계대상에도 해당함(제21조)
- ▶ 부정청탁의 요건 : 제5조제1항 각 호의 대상 직무에 해당 + 법령 위반
 - 형질변경허가는 제5조제1항제1호의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며,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토지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음
- ▶ 여러 명이 순차적으로 특정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모두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자로서 과태료 부과대상임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제1호)

Q. 일반국민 A가 국회의원 甲에 대해 입법(법률 제·개정)을 제안 건의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 A. ▶ 일반국민 A가 국회의원 甲에 대해 법률의 제·개정을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제1호부터 14호까지 열거된 부정청탁의 대상 직무로 보기 어려워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음
- ▶ 한편, 일반국민 A가 국회의원 甲에 대해 법률의 제·개정을 제안·건의하는 행위가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 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과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라면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음(제5조제2항제1호)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제2호)

Q. 민원인 A가 건축법령에 따른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허가 통지를 받자 ○○구청 민원실 앞에서 건축허가를 내 달라고 피켓팅 시위를 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지?

- A.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A의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님(제5조제2항제2호)

- ▶ '공개적으로'는 물리적·장소적 개념이라기보다, 청탁의 내용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
 - 공개된 장소에서의 피켓 시위 또는 TV·신문 등의 언론매체를 통한 요구는 공개적인 요구에 해당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제3호)

Q.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중 하나인 제 조제 항제 호의 시민단체 등 에 법으로 정한 법정단체(예를 들어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가 포함되는지?

A.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법정단체도 제5조제2항제3호의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 에 포함될 수 있음

- ▶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로서 제재대상 아님(제5조제2항제3호)
 -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에 준하는 공익성을 추구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각종 협회 등 직능단체, 이익단체, 공인된 학회 등은 위 예외사유에 포함될 수 있음

법정기한 내 처리요구 등(제4호)

Q. 민원인 A는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구청에 증축 허가를 신청하였고, 자신의 친구인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甲을 통해 진행상황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지?

A. 진행상황에 대한 확인·문의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제5조제2항제4호),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님

- ▶ 건축법령상의 건물 증축허가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나(제5조제1항제1호), 증축허가 관련 업무의 진행 상황에 대한 확인·문의를 한 것은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제5조제2항제4호)

III. 금품 수수 등의 금지

Q.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면 언제나 처벌되는지?

- A.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됨. 다만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이나 법 제8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8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됨

Q.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3만원 저녁식사를 접대 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000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

- A. 식사접대행위와 음료수 접대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 가능하며, 음식물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임

Q.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범위 내의 선물, 식사 가액도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를 산정함에 있어 합산하는지?

- A.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 산정 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가액은 제외됨

Q. 골프접대의 경우도 선물로 인정되어, 가액기준 내라면 수수가 가능한지?

- A.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은 물품이나 유가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한정되며, 편의제공에 해당하는 골프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어 가액기준(5만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음

Q.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연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A.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 산정 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가액은 제외됨. 그러나 사례의 경우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연 100회 넘게 제공한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예외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Q.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도 위반인지?

A. 공직자등은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도 금지됨

Q. 공직자등이 대형마트에서 행해지는 행사에 참가해 추첨을 통해 받은 상품도 제재 대상인지?

A.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은 허용됨

Q. 월 정기 회비를 납부하는 같은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모임에서 회원의 경조사가 발생하여 회칙에 따라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

A.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 상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법 제8조제3항제5호)에 해당되어 지급 가능

Q. 미혼의 공직자등인 A가 공직자등이 아닌 미혼의 이성 B와 교제하며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

A. 원칙적으로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나, A와 B는 연인관계에 있으므로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되어 수수 가능

Q. 식사를 한 후 1인당 식사비가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은 제공자가 결제 하고 2만원은 공직자등이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A.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등이 지불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Q. 가액기준 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는 직무관련성·대가성 유무에 관계없이 수수해도 되는지?

A. 가액기준 내라도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으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형법상 뇌물죄로 형사처벌됨

Q. 식사를 했는데 각자에게 소요된 비용이 불분명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A. 원칙적으로는 실제 각자가 소비한 음식물의 가격으로 판단해야 함. 다만,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 즉, n분의 1을 한 금액으로 판단

Q.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지체없이 반환하고 신고한 경우 선물 제공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A.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에게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선물을 제공한 경우 실제 공직자가 수수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청탁금지법 위반임

Q. 직무관련자가 공직자에게 금지된 금품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공직자가 그 자리에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A.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에게 금품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도 청탁금지법 위반임. 이 경우 금품등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됨(다만, 공직자는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처벌대상에서 제외)

Q.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배우자가 처벌받는지?

- A.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은 처벌됨. 즉,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아님(다만, 변호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Q.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1인당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받고, 4만원 상품권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 A.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며, 가액기준이 5만원 범위 내의 경우만 허용되므로, 해당 사안에서 2만원 식사를 접대받고 4만원 상품권을 받은 경우 5만원을 초과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임

Q.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가 언제나 금지되는지?

A.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고,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 없으면 수수 가능

Q. A가 식당에 미리 결제를 해 두고 공직자 B에게 연락하여 해당 식당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 허용되는지?

A. 예외사유인 사고·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등을 의미하므로 허용되지 않음

Q.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점심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저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다음 날 오전에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받은 경우 허용되는지?

A.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식사와 선물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법적으로 평가할 때 1회로 평가할 수 있고 선물과 식사를 함께 제공받은 경우 합산하여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1회 11만원 상당의 선물과 식사를 제공받았으므로 허용되지 않음

Q. 공직자등이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A.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거나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제재하고 있을 뿐,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규율대상이 아님

Q.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허용되는데, 여기서 경조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A.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과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에 한정됨. 그 밖에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Q. 공직자등에게 5만원의 범위 내에서 백화점·전통시장·모바일 등의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는지?

A.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의 한도에서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음. 다만 사고·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가액한도 내라도 허용되지 않음

Q. 5만원의 범위 내에서라면 음식물 상품권도 줄 수 있는지?

A. 음식물 상품권은 음식물이 아니라 선물에 해당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의 한도에서 줄 수 있음. 다만 사고·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가액한도 내라도 허용되지 않음

Q.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에게 제공되는 가액범위를 초과하는 식사는 허용될 수 없는지?

A.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에게 접대하는 식사는 우리 사회의 전통 관습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함

Q. 직무관련자를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물을 제공한 경우 허용되는지?

A. 식사 초대 시 음식물의 가액산정은 재료비 구입 영수증 등 신빙성이 담보되는 자료가 우선하되, 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함

Q.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책상에 놓고 가거나 택배로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A.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인도하고 신고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됨

Q. 공직자가 자진하여 신고는 하였으나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재가 되는지?

A.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지체 없이 신고한 경우에만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다만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제재가 감면될 수 있음

Q. 공직자등이 경조사비로 15만원을 받은 경우 가액한도를 초과한 부분(5만원)만 반환하면 되는지?

A.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부분만 반환하면 제재대상에서 제외됨

<구체사례>

100만원을 기준으로 한 제재수준이 정당한지 여부

Q. 100만원을 기준으로 101만원이면 형사처벌, 100만원이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 기준이 정당한지?

- A. ▸ 100만원 기준은 청렴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을 반영하고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자문 등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사처벌 대상의 합리적 기준으로 설정한 것임
- 또한 동일하게 100만원 초과 금품 제공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등 다른 입법례도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하였음

‘동일인’ 및 ‘회’의 의미

Q. ○○도 터키심사위원회 설계심의회분과위원회에 A건설회사(주)의 설계가 심의대상으로 상정되었는데 심의 1주일 전 A건설회사(주) 직원 B는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건축사 甲과 점심을 먹고 20만원을 결제하였고, 같은 날 오후 직원 C는 甲과 골프를 친 후 그린피 50만원을 결제하였으며, 같은 날 저녁 직원 D는 100만원 상당의 술과 식사를 접대하고 택시비를 하라며 30만원을 甲에게 준 경우, 甲, A, B, C, D는 청탁금지법상 어떤 제재를 받는지?

- A. ▸ 甲은 B, C, D로부터 금품등을 받았으나 금품등의 출처는 A회사이므로 동일인(A회사)으로부터 115만원 상당의 금품등(점심식사 10만원 + 그린피 25만원 + 저녁식사·술 50만원 + 택시비 3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 음식물·주류 등의 접대·향응을 받은 경우 실제 접대에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 각자의 소요 비용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또한, 甲이 B, C, D로부터 금품등을 받은 행위는 같은 날 근접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시간적 계속성·근접성이 인정되어 1회로 평가할 수 있음
- 甲은 A회사로부터 1회 115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받았으므로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함(제8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호)
- B, C, D는 甲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각각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제공하였으므로, 각각 제공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함(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 ※ 금품등 제공 금지의무가 부과된 제8조제5항의 '누구든지'에는 실제 제공행위를 할 수 있는 자연인만 포함되고, 법인은 제외
- ※ B, C, D가 상호 의사연락 하에 공동으로 제공행위를 하였다면, 「형법」상 공동정범(1회 100만원 초과 제공)으로서 모두 형사 처벌될 수 있음
- ▶ A회사는 B, C, D가 공동정범이 아닐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세 개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나(공동정범으로 인정될 경우 1개의 벌금 부과 대상), 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면책될 수 있음(제24조)

- ▶ 건축사 甲은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으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제11조제1항제1호)
- ▶ 동일인 여부는 금품등을 직접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동일인'은 금품등의 출처가 어디인지가 중요하므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될 수 있음
- ▶ 1회는 자연적 의미의 행위의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 수를 고려하여 판단하며,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 가능

‘1회’의 의미

Q. ○○중앙부처 甲국장은 해당 부처 산하 기관장 A(직무관련성 있음을 전제)로부터 2만원 상당의 식사대접을 받았다. 3만원을 넘지 않는 식사를 했지만, 식사 뒤 산하 기관장 A가 택시비로 하라면서 甲에게 20만원을 주었고, 甲이 이를 수수했을 경우 甲과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는지?(산하기관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기관임)

- A. ▶ 甲은 식사대접을 받은 뒤 바로 A로부터 택시비로 20만원을 받았으므로, 시간적·장소적 근접성과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되어 식사접대행위와 택시비 제공행위를 1회로 평가할 수 있음
- ▶ 甲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A로부터 1회 22만원(20만원 + 2만원)을 받았으므로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함(제21조)

- ▶ A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甲에게 22만원을 제공하였으므로, 해당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함(제21조)
- ▶ 甲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제2조제2호가목)
- ▶ ‘1회’는 자연적 의미의 행위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 수를 고려하여 판단,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 가능
 - 음식물 가액은 3만원 이하지만, 식사대접 행위가 택시비 제공행위와 함께 1회로 평가되면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수 가액에 포함됨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

Q. 민원인 A가 ○○구청 직원 甲으로부터 최종 민원회신결과를 받은 후 甲에게 민원처리에 대한 감사표시로 편지와 함께 A가 직접 생산하는 5만원 상당의 꿀을 보내 온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는지?

- A. 최종 민원회신결과를 받았다 하더라도 甲과 A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고, 5만원 상당의 선물은 5만원 가액 한도를 초과하지는 않으나, 甲과 A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된 선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과 A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함(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

동일인으로부터 음식물, 선물, 부조금을 함께 받은 경우

Q. 동일인으로부터 음식물, 선물, 부조금을 함께 받은 경우 어떤 가액기준이 적용되는지?

- A. 동일인으로부터 부조금, 선물, 음식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각각의 가액을 모두 합산하되, 이 경우 수수가 허용되는 가액의 상한액은 10만원으로 하고 있음

음식물 3만원 초과 부분 더치페이외의 경우 가액 평가

Q. A업체의 부장 B와 팀장 C는 공공기관의 직원 3명과 오찬을 갖게 되었는데(직무관련성이 있음을 전제), 1인당 5만5천원이 나왔다. B부장은 음식물접대 허용 상한액이 3만원이므로 15만원을 결제했으며, 1인당 5만5천원 중 3만원을 넘는 2만5천원 부분은 오찬 참석자 각자가 더치페이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받는지?

A. 3만원 초과 부분은 각자 더치페이 했으므로, 음식물 접대 허용 상한액인 3만원 범위 내에서 식사 접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제재대상이 아님(제8조제3항제2호)

- ▶ 청탁금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실제 더치페이한 부분에 대한 현금 보상이 이루어졌고, 그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당연히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며, 영수증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가액범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 ▶ A업체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이므로 직무관련성 인정됨

과도한 이자율의 가액 평가

Q. ① 공직유관단체 임원 甲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A로부터 1억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일주일 후에 갚는 경우, 또는 ② A가 甲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현저히 낮은 이자만 받고 빌려주는 경우, 甲이 A로부터 '금품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A. ① 금전을 무상으로 차용한 경우 수수한 금품등은 금융이익 상당액(금융기관 대출이율 또는 법정이율) 이고, ② 현저히 저리로 차용한 경우는 대출이율이나 법정이율과 약정이율의 차액 상당액임(제2조제3호다목)

- ▶ 甲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제2조제2호나목)
- ▶ 가액평가 결과 100만원 초과한 경우
 - 甲과 A는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을 불문하고(제8조제1항)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제22조제1항제1호, 제22조제1항제3호), 甲은 징계대상에도 해당(제21조)

▶ 가액평가 결과 100만원 이하일 경우

- 甲과 A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제8조제2항) 차액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제23조제5항제1호, 제23조제5항제3호), 甲은 징계대상에도 해당(제21조)

택배비, 부가가치세, 봉사료도 금품등 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Q. (1) 45,000원 상당의 선물을 서울에서 서울로 보낸 경우에는 49,000원(택배비 4,000원), 같은 선물을 서울에서 제주도로 보낸 경우에는 51,500원(택배비 6,500원)인데, 모두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선물에 해당하는지?

(2) 28,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접대하는 경우, 부가세(10%)를 포함하면 30,800원, 부가세를 제외하면 28,000원인데, 이러한 경우 음식물 가액평가 시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는 것인지?

- A. (1) 택배비는 선물 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제8조제3항제2호)
- (2) 부가가치세는 음식물 가격에 포함되어 표시되므로, 음식물 가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 ▶ 택배비는 발송 지역·중량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택배비를 선물 허용가액에 포함시킬 경우 발송 지역 등에 따라 청탁금지법상의 제재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물 가액 산정 시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상당함

<우체국 택배, 중량 2kg까지 기준>

지역	택배비
동일지역	4,000원
타지역	5,000원
제주(익일배달)	6,500원

- ▶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는 영업소 내·외부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 손님이 실제 내야 하는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하도록 규정

※ 봉사료는 영수증에 표시되는 경우에만 포함하여 가액산정

여러 명의 공무원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가액 평가

Q. 건축사업을 하는 자영업자 A는 10명의 구청 토지 인·허가 업무 관련 공무원에게 각 99만원씩 총 990만원의 돈 봉투를 돌렸을 때,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는지?

- A. ▶ 구청 공무원 10명이 공모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인당 99만원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각각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제8조 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함(제21조)
- ▶ 반면, 구청 공무원 10명이 상호 의사연락 하에 공동으로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10명 모두 「형법」상 공동정범으로서 99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제8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호)
- ▶ A는 구청 공무원 1인당 99만원의 금전을 제공하였으므로, 모두 10개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나(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구청 공무원 10명이 공동정범일 경우에는 A는 990만원을 제공한 자에 해당되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제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3호)
- ▶ 구청 공무원 10명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제2조제2호가목)
- ▶ 구청 공무원 10명은 모두 토지 인·허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므로 각각 건축사업을 하는 자영업자 A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음(제8조제2항)

기관이나 부서로 온 선물의 경우 수수 주체

Q. 명절에 직무와 관련된 협회의 직원으로부터 기관이나 부서로 배송되어 온 선물은 받아도 되는지?

- A. ▶ 만일, 선물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거나 선물의 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함
- ▶ 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제2항에 규정된 신고·반환·거부의 의사표시의무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정 직원 앞으로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이나 부서로 온 선물은 기관장이나 부서장에게 온 선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반환이나 신고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함

- ▶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는 주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라고 하여 법인이 아닌 자연인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됨

언론사 자체에 협찬 명목으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Q. A기업체 대표 B가 신문사 소속 특정 개인이 아닌 신문사 자체에 대한 협찬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지?

- A. ▶ 협찬 업무를 담당·처리하는 신문사 임직원이 신문사 자체에 대한 협찬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경우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에 따른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
- ▶ 협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신문사 임직원은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았으므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8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호) 및 징계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제21호),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됨(제22조제1항제1호 단서)
 - ▶ 대표 B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3호), A기업체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부과대상에 해당함(제24조)
- ▶ 신문사에 대한 협찬을 받는 주체는 법인, 법인의 대표자, 임직원 등이 될 수 있으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는 주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라고 하여 법인이 아닌 자연인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자연인으로서의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가 어려울 수 있음
- ▶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는 '공직자등'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 자연인을 의미(제2조제2호)
- 비록 협찬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신문사 임직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소속 신문사의 이익을 위해 협찬을 받았더라도,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법 제정취지를 고려할 때, 실제 행위자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있음
- ▶ 참고로,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는 양벌규정의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A기업체는 대표 B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나 하더라도 면책되기 어려움(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4817 판결 등 참조)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제2호)(1)

Q. 지인인 공무원 甲에게 오랫동안 일과 관계없이 추석 선물을 계속 보내 왔는데 앞으로는 못 보내는지? 공무원 甲의 승진 선물로 난을 보내거나 결혼식 화환을 보내는 것은 괜찮은지?

- A. ▶ 공무원 甲과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에는 1회 100만원 이하의 선물을 보내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직무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음(제8조제3항제2호)
- ▶ 승진의 경우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교·의례 등 목적의 5만원 이하 선물일 경우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결혼식의 경우 경조사에 해당하므로, 사교·의례 등 목적의 10만원 이하 화환일 경우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음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제2호)(2)

Q.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는 음식물과 선물을 같이 받은 경우 가액을 합산하고 허용가액을 5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무원이 45,000원 상당의 식사대접을 받으면서 5,000원 상당의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 합계 5만원 이하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것인지?

- A. ▶ 45,000원 상당의 식사대접과 동시에 5,000원 상당의 선물을 받는 경우, 음식물 가액이 3만원을 초과하여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한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 ▶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받은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만원 이하일 때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게 됨. 이 때 음식물 가액은 3만원 이하, 선물 가액은 5만원 이하 기준을 각 충족하면서 동시에 합산한 금액이 5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제8조제3항제2호, 시행령 [별표1])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제2호)(3)

Q. A민간회사에서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직원 경조사시 일률적으로 화환을 제공하거나 일정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청탁금지법상 예외 기준(경조사비 10만원)을 상회함. 그런데 그 회사의 직원들의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직원들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직원에게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 A. ▶ 비록 배우자가 공직자등인 직원이라 하더라도 그 직원의 배우자와 A민간회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해당 직원이 A민간회사 내부복리후생규정에 따라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지급받아도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한편, A민간회사와 직원의 배우자(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수수하면 원칙적으로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나, 해당 공무원을 특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제8조제3항제8호)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제8호)

Q.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사회상규라는 기준이 너무 어렵고 추상적이지 않은지?

- A.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회상규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그 개념과 판단 기준은 이미 여러 판례를 통해 확립되어 있으므로 적용과정에서 불명확성 문제는 없다고 봄
- ▶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특수한 사적 친분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수수 방법, 청탁과 결부 여부, 직무관련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 ▶ 대법원은 일관되게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

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 아래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등 참조)

- ▶ 헌법재판소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부정청탁금지조항에 규정된 ‘부정청탁’, ‘법령’, ‘사회상규’라는 용어가 다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어느 정도 가치 판단이 필요한 일반개념이지만, 부정청탁금지 조항의 입법배경 및 입법취지와 관련 조항 등을 고려한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충분히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시(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412·662·673병합 결정)]

‘지체 없이’의 의미

Q. 공직자 甲은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받고 두 달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불안하기도 하고 내사 등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 나중에 신고하고 돈을 돌려주었을 경우 공직자는 면책되는지?

- A. ▶ 甲의 경우 두 달 정도 돈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지체 없이 신고·반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지체 없이 신고·반환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 다만, 신고·반환이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자진하여 신고·반환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함(제15조제3항)
- ▶ 공직자들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 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함(제9조제1항, 제2항, 제6항)
- 이 때 ‘지체 없이’라 함은,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하며,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
 - 공직자들이 이 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 대상(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한 공직자들은 제재대상에서 제외
- ▶ 공직자들이 자진하여 신고하였으나 신고가 지체된 경우에는 제재를 감면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제15조제3항)

‘건축사업계’ 관련 주요사항 Q&A

※ 대한건축사협회 정책연구실에서 건축사업계내 관련내용을 공문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하여, 국민권익위 담당자로부터 유선상 답변을 받은 일문일답 내용임

Q1. (공공기관, 공직자등, 공무수행사인 관계 관련) 청탁금지법 제2조(정의)에서 공직자등은 공공기관에 소속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수행사인은 동법 제11조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인 경우 해당되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규정을 공직자등에 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공직자등에 준하여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공직자등은 공공기관에 소속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한건축사협회가 법 제2조제1호나목의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이로 인해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 법 제11조제2호에 해당한다면 협회의 대표자나 임직원이 공무수행사인이 될 수 있는지?

공무수행사인이 “공직자등”의 요건으로서 공공기관에 소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공공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 공무수행사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 향후 대한건축사협회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다면 대표자 및 임직원은 모두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공직자등이 되는 것인지?

향후 협회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이 되므로 이에 소속된 대표자 및 임직원은 공직자등이 되어 동 법의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Q2. (공직자등 해당여부) 언론사의 대표자 및 임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되는데 대한건축사협회가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신문, 잡지)을 하는 경우,

- 1) 대표자는 신문사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 등록시 발행인으로 신고한 협회장인지? 협회장은 공직자등에 해당되는지?
- 2) 협회의 임원(상임, 비상임)이 담당업무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모든 임원이 공직자등에 해당되는지?
- 3) “해설집 17p”에서 언론활동을 부수적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공직자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언론활동을 부수적으로 하는 기업의 “신문 발행업무 종사자”는 공직자등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와 신문사업자 두 가지를 모두 등록한 대한건축사협회는 일반 언론사와 똑같이 적용하여 협회의 모든 근로자가 공직자등에 해당되는지?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월간 건축사,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발간 'PAPER A',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간 '건축문화사랑')”인 경우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것과는 달리 “신문사업자(건축문화신문, 부산광역시건축사회 발행 '건축사신문')”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되는 것이며 해당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관계없이 대표자와 모든 임직원이 공직자등에 해당됩니다.

Q3.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국토부로부터 여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특정 부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및 담당직원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공무수행사인을 협회 자체로 보아(법인, 단체도 공무수행사인이 될 수 있으므로) 협회 모든 직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대한건축사협회는 아래와 같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 부서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① 건축사보 배치현황 수리 및 관리(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8항, 제9항)
 - ② 건설기술자 경력관리(건설기술진흥법 제82조제2항, 영 제117조제1항 및 제2항)
 - ③ 실무수련자 관리, 건축사보 신고 접수, 건축사 자격시험 관리, 건축사 등록관리 및 실적관리, 실무교육(건축사법 제38조의11)
- 이에 위 ①~③에 해당하는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및 담당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③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법 제38조의12에 따라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를 받습니다.)

Q2에 따른 답변에 따라 협회가 공공기관에 해당되므로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를 검토할 실익이 없습니다.

Q4.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건축사는 건축법 및 관련 법에 따라 여러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 1), 2), 3), 4), 5)의 업무수행을 하는 건축사가 각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1)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 근거 : 건축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 내용 :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를 받고 있음.
- 검토사항 : 동 업무대행이 청탁금지법 제11조제2항의 “권한을 위임, 위탁 받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상 허가권자(공공기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므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2) 허가권자가 지정하여 공사감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

- 근거 : 건축법 제25조제2항
- 내용 : 공사감리란 건축물 등이 건축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해 지도 감독하는 업무로서 원칙적으로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규모 건축물 및 분양건축물 등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직접지정토록 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음.

- 검토사항

- ①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 법령에서 직접적으로 위임, 위탁의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으나, 그 지정하는 절차 및 세부적인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제5항).
- ② 이에 따라 조례에서 해당지역 대한건축사협회 산하 17개 시도건축사회가 공사감리자 지정에 대한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할 가능성이 큼(아직 조례가 개정되지는 않은 상태임)
- ③ 업무를 위탁받은 시도건축사회가 해당지역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경우, 그 지정된 건축사가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검토 필요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는 그 업무의 성격이나 취지가 본래 공공기관의 업무였다면 해당되는 것으로,

개정된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은 건축주의 역할을 대신 한다는 것보다는 허가권자의 역할(위법, 부실건축물 방지)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건축사가 건축지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 근거: 건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내용: 허가권자는 건축법 및 관련 명령 및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지도하기 위해 건축지도원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건축직렬 공무원과 건축사 등 건축 관련 전문가가 지정됨.

실질적으로 허가권자(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됩니다.

4) 건축사가 서울시 공공건축가로 활동하는 경우

- 근거: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37조
- 내용: 매년 서울시가 모집하고 공공건축가로 선정되면 공공건축물의 기획, 계획, 설계 및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함.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에 어떤 업무를 위탁했는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공건축가에 속한 개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공공건축가가 참여하여 위원회 형식으로 자문내용에 대해 의결한다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건축사가 지자체 내 법률상담을 하는 경우

- 근거: 서울특별시 서초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타 지역도 유사조례가 있음)
- 내용: 지자체가 주민편의를 위해 전문가를 통한 무료상담코너를 운영하며, 변호사·세무사·건축사·변리사·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 등을 법률상담관으로 지정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성격으로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Q5.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대한건축사협회는 17개 시도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시도건축사회
라 함) 건축법령 및 각 지역 건축조례에 따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선정 절차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건축사회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시
도건축사회의 대표자, 임직원은 모두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임직원은 해당업무
수행자만 해당하는지?

- 근거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19조제6항(타 지역도 유사 조례규정 있음)
- 배경 : 대한건축사협회 임직원 중 법령에 따라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 공무수행사인
에 해당한다면, 시도건축사회도 대한건축사협회의 지부로서 동일 법인이므로 시도건축
사회 및 그 임직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그 시도건축사회의 대표
자와 해당 업무 담당 임직원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시도건축사회의 대표
자와 임직원이 모두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

Q2에 따른 답변에 따라 협회가 공공기관에 해당되므로 대한건축사협회의 지부로서 동일법인인 시도
건축사회도 공공기관이 되며, 각 시도건축사회의 대표자 및 모든 임직원이 공직자등이 되는 것입니다.

Q6. (부정청탁 해당여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는 전제)가 업무대행시 청탁을 받은 경우로서, 동일 건축물 공사에 대해 건축관계자인 건축주, 공사감리자, 시공자로부터 각각 “잘 부탁드립니다.” 정도의 전언을 받은 경우 이를 부정청탁으로 볼 수 있는지? 부정청탁으로 본다면 각 건축관계자(건축주, 공사감리자, 시공자)의 청탁을 3회 부정청탁으로 보아야 하는지?

- 해설서에는 청탁의 내용이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재량권을 행사해달라는 취지”라면 적법하고, 재량을 벗어나는 청탁인 경우 위법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표현이 검사자로서의 말은 바 직무를 철저히 해달라는 의미인지, 다소 위법한 부분이 있더라도 눈감아 달라는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 부정청탁 판단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모호함.
- 아울러, 부정청탁을 1회 받은 경우 거절하고, 2회 받은 경우 소속기관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공사 건의 건축관계자인 건축주, 공사감리자, 시공자로부터 각각 청탁을 받은 경우 각각 1회로 보아 거절 및 신고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는지 해석 필요

“잘 부탁드립니다.”의 표현만으로는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그 의도가 불법, 부실을 묵인하고자 하는 것인지, 공정한 검사를 요청하는 것인지 내심의 의사에 의해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부정청탁이 된다면 그 횟수는 그 청탁이 “1건”에 관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공사 건에 대해 건축주, 공사감리자, 시공자로부터 청탁이 있다면 각 1회로 보아 1회 받은 경우 거절하고, 2회 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동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Q7. (제3자를 위한 청탁 해당여부) "해설집 43p"에서는 법인의 소속 임직원이 청탁하는 경우 그 법인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제3자를 위한 청탁"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인 (주)○○건축사사무소는 법인으로서 해당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주식회사가 아닌(=법인이 아닌) △△건축사사무소의 임직원이 청탁한 경우의 △△건축사사무소도 "제3자"에 해당되는지?

법인 아닌 개인사무소의 직원인 경우에 사무소를 위한 청탁인 경우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8. (공무수행사인의 금품수수 해당여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는 전제)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인 건축사와 이미 친분이 있었고, 그로부터 100만원 이하의 식사 등을 제공받았는데, 그 시기가 업무 대행 수행기간 중이었다면 업무 대행 수행기간이라는 그 시점만으로 직무관련으로 보아 100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에도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 직무관련성의 판단기준이 단순히 업무수행기간이라는 시점이 아니라면 다른 판단기준이 있는지?

업무수행기간이라면 직무관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친분이 있다고 하여 금품수수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직무관련성의 판단기준은 단순히 업무수행기간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로 지정받을 것이 확정된 때부터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이 때 받은 식사대접, 선물, 금품 등은 금품수수에 해당됩니다. 또한 대행업무가 시기적으로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았다면 동 법령에 저촉됩니다.

Q8-1. (공무수행사인의 금품수수 해당여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가 해당업무 수행기간이 아닌 업무대행 착수 전이거나 완료한 후에도 공무수행사자인 것으로 보는 것인지? 공무수행사인으로 본다면 친분이 있던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인 건축사로부터 업무대행 기간이 아닐 때 100만원을 초과한 식사대접을 받은 경우에, 직무관련이 아니어도 공무수행사인이기 때문에 100만원 초과시 금품수수에 해당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법령 위반인지?

- 공무수행사인은 공무수행과 관련해서만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등 수수금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해설서 18p),
- 이때, 건축사(공무수행사인)가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의 금품수수라면 무조건 “직무관련”으로 보아 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도 위반인지 여부와(즉 업무수행기간이 직무관련 판단기준 인지)
- 건축사(공무수행사인)가 해당 업무를 하지 않는 시기에도 공무수행사인으로 보는지 여부와, 공무수행사인으로 본다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도 위반인지 여부가 모호함.

<배경>

- 업무대행의 경우 보통 해당 지역 내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해당 건축물의 설계나 공사감리를 수행하는 건축사와 친분이 있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상호간의 금품등 수수가 위반인지의 판단기준을 “공무수행 기간”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공무수행사인인 기간은 언제인지 해석 필요

Q8의 답변에서 “직무관련성”의 기준을 업무수행기간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처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 기간도 동일하게 간주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업무대행을 착수하기 전이거나 완료한 후에도 해당 업무대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식사대접 등을 받다면 공무수행사인일뿐 아니라 직무관련이므로 친분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도 제한됩니다.(식사의 경우 3만원 이하만 가능)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공무수행사인이 아니므로 금품수수 등의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록2

국민안전처 내진보강 가이드라인

1. 건축물의 내진보강
2. 기초구조물의 내진보강

※ 본 내용은 국민안전처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2단계(2016~2020)] 부록」
일부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저작권은 국민안전처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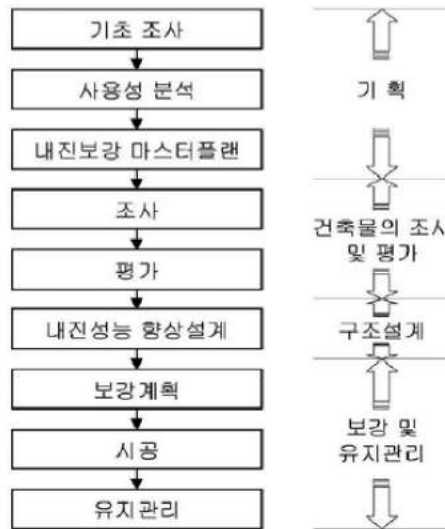
1. 건축물의 내진보강

가. 방법

- ▶ 기술적 보강전략과 계획적 보강전략 중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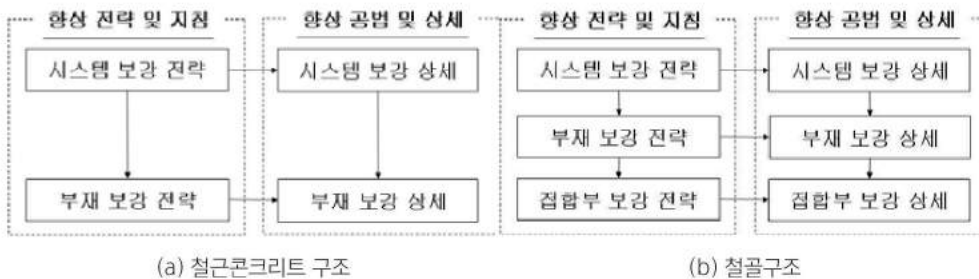
나. 절차

- ▶ 내진성능 향상 절차



〈그림 1.1〉내진성능 향상 절차

- ▶ 보강계획 및 구조설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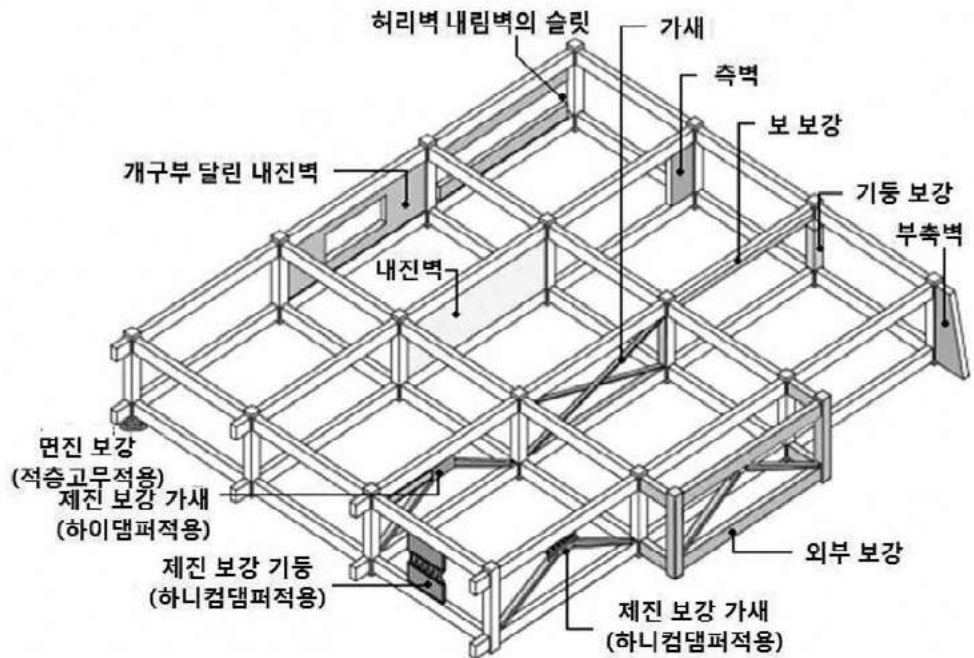
(a) 철근콘크리트 구조

(b) 철골구조

〈그림 1.2〉보강계획 및 구조설계의 절차

다. 내진성능 향상방법 일반

- ▶ 기존건물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다음 3개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 새로운 내진요소 부재를 만들고 설계강도를 크게 하는 방법
 - 보강으로 기존부재의 인성을 향상시켜, 인성이 열악한 내진 요소부재를 제거하는 방법
 - 불필요한 부위를 없애 건물 중량을 경감하는 방법
 - 면진 또는 제진장치를 사용하는 방법
- ▶ 이때 필요한 보강량 및 보강 후 건물의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강방법을 선정하는 등의 보강계획이 작성되어야 한다. 그림 B.2.1.3에 일반적인 보강공법의 종류를 나타내었다.



<그림 1.3>보강공법의 종류

▶ 이들 공법을 보강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표 1.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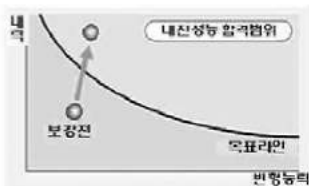
(표 1.1) 보강목적에 따른 보강방법

보강목적	보강방법	
강도의 상승 (강도, 연성의 향상)	내진벽의 증설	· 현장타설 벽 / · 프리캐스트판 벽 · 콘크리트 블록벽 / · 철판벽
	날개벽의 증설	· 현장타설 날개벽 / · P.C. 판 날개벽
강도의 상승	버트리스 골조의 증축	· 버트리스 설치 / · 벽이 있는 골조증축 · 순수골조 증축
연성의 향상 혹은 강도의 향상	기둥의 보강	· 용접철망 / · 강판감싸기 · 아라미드, 탄소섬유감싸기
	보의 보강	· 덧침 / · 강판감싸기 · 아라미드, 탄소섬유감싸기
	가새 증설	· 철골 가새 / · R.C. 가새 / · P.C 가새
연성의 향상	슬릿트 설치	· 기둥과 벽의 분리
산정 지진력의 저감	중량저감	· 보호콘크리트벽 철거 / · 비내력벽의 경향화
보강에 따른 중량증가를 부담 (혹은 말뚝강도의 상승)	기초의 보강	· 기초밀면의 증감 / · 말뚝의 증설 · 말뚝본체의 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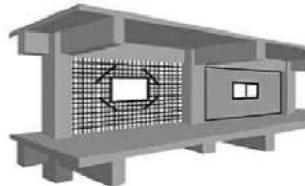
1) 기술적 보강 전략

(1) 강도 증가

▶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이 부족한 경우 강도를 증가시켜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연성도 보강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과 동일한 반응수정계수(R)를 사용한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강도 증가 방법으로는 새로운 수직재 설치, 가새 및 전단벽 설치, 버팀벽 설치 등이 있다.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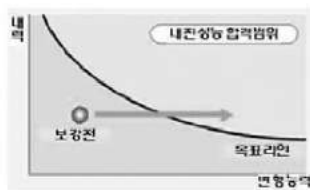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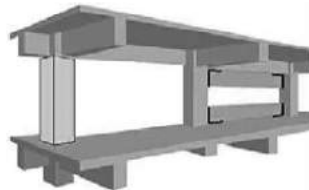
이미지

(2) 연성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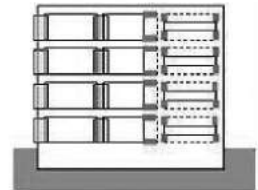
- ▶ 내진성능이 부족한 경우 강도 증가 없이 연성도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연성도 증가에 대한 R 값을 증가시켜서 강도요구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연성능력의 향상법에는 기존부재의 횡구속, 붕괴기구의 변화를 위한 기둥보강, 취성파괴가 예상되는 부분의 국부보강 등이 있다.



개념도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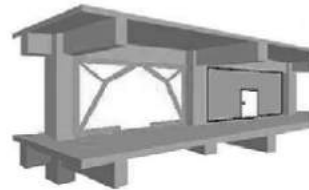
이미지

(3) 강도와 연성도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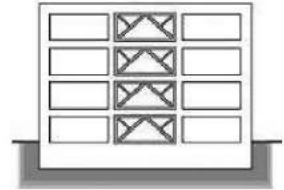
- ▶ 내진성능이 크게 부족한 경우 강도와 연성능력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다.



개념도



방법



이미지

(4) 중량의 저감

- ▶ 건물의 중량 감소를 통하여 지진하중을 저감시킬 수 있다. 대체가 가능한 비구조재를 경량재로 대체한다.

(5) 면진 및 제진장치의 설치

- ▶ 기존 건축물의 보강이 경제적 또는 사용성 측면에서 어려울 경우에는 면진 또는 제진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2) 계획적 보강전략

- ▶ 보강 위치, 시기 및 건축물의 용도변화를 통하여 지진하중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또는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1) 용도의 변경

- ▶ 건축물이 용도상 성능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용도를 변경하여 성능목표를 만족시킬 수 있다. 즉,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중요도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지진하중을 감소시킬 수 있다.

(2) 부분 철거

- ▶ 구조성능 향상 비용이 과다할 경우나 용도 변경을 하여도 성능목표를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건축물의 해당부분을 철거하는 방법을 택한다.

(3) 임시적 보강

- ▶ 단기간의 사용을 위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강을 해야 할 경우가 있다. 이 때의 보강은 구조 부재를 노출하여 임시적으로 건축물을 보강한다. 이러한 방법은 최종적인 건축물의 보강전략이 제시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4) 단계적 보강

- ▶ 경제적인 이유나 보강공사 중 건축물의 계속 사용을 하여야 할 경우에 단계적인 보강을 택할 수 있다.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계적 보강순서를 고려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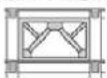
(5) 외부 보강

- ▶ 보수보강 공사 중에도 건축물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외부 보강을 선택할 수 있다. 외부 보강은 건축물의 외부에 버팀벽 및 가새 등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라.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내진성능 향상방법

▶ 보강목적에 따른 특성을 정리하면 (표 1.2)에서(표 1.4)와 같다

(표 1.2) 내력 향상 공법

공법명	공법개요			
	비용	공기	건축 및 설비와의 관계	상용 중의 시공성
철근콘크리트벽증설 	◎	△	○ 개구부 크기에 제한이 있음	○ 콘크리트 타설이 필요 현장 마감에 용이
철골가새증설 	○	○	◎ 채광 및 통풍 확보가 용이	◎ 외부 시공에 적용 용이 반입 크기에 제한이 있음
철판벽증설 	○	○	○ 개구부 크기에 제한이 있음	○ 반입 크기에 제한이 있고 마감이 어려움
벽 개구부 패쇄 	○	△	○ 거실 공간에 영향이 있음	○ 적은 보강량
PC벽판 증설 	○	◎	○ 개구부 크기에 제한이 있음	◎ 설치 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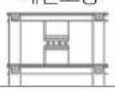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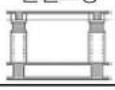
◎ : 매우 좋음, ○ : 양호, △ : 보통

(표 1.3) 인성 향상 공법

공법명	공법개요			
	비용	공기	건축 및 설비와의 관계	상용 중의 시공성
기동 철판 감기 	○	○	◎ 개구부 크기에 제한이 있음	○ 콘크리트 타설이 필요 현장 마감에 용이
기동 섬유 감기 	◎	◎	○ 채광 및 통풍 확보가 용이	◎ 외부 시공에 적용 용이 반입 크기에 제한이 있음

◎ : 매우 좋음, ○ : 양호, △ : 보통

(표 1.4) 응답제어 및 입력저감 공법

공법명	공법개요			
	비용	공기	건축 및 설비와의 관계	상용 중의 시공성
제진보강 	○	○	○ 개구부 크기에 제한이 있음	◎ 콘크리트 타설이 필요 현장 마감이 용이
면진보강 	△	○	○ 채광 및 통풍 확보가 용이	◎ 외부 시공에 적용 용이 반입 크기에 제한이 있음

◎ : 매우 좋음, ○ : 양호, △ : 보통

1) 시스템 보강 전략

(1) 일반사항

▶ 부재 신설

- 기존 건축물에 보, 기둥, 전단벽, 가새, 버팀벽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의 강도와 강성을 향상시킨다. 부재 신설로 인하여 구조 방식이 변경된 경우에는 구조 방식의 변경을 따른다.

▶ 구조 방식의 변경

- 반응수정계수를 결정하는 골조 형식을 변경한다. 즉, 철근콘크리트 모멘트 골조를 가새골조나 전단벽 구조 또는 이중골조로 변경한다. 이 경우 해당 방식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 거동 방식의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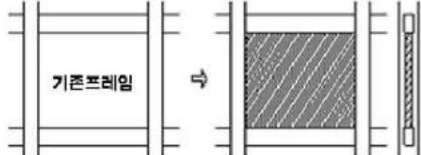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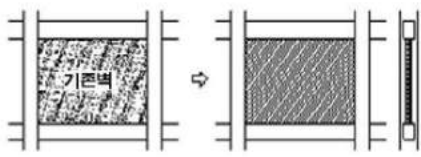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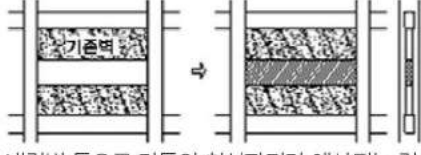
- 철근콘크리트 보나 전단벽에서 주철근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강기둥-약보 거동을 유도하거나 휨 파괴를 유도한다.

▶ 지진하중의 저감

- 건물 내부의 비구조재를 제거하여 건물의 중량을 감소시키거나 건물에 면진장치 또는 제진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지진하중을 경감시킨다.

(2) 전단벽 신설

(표 1.5) 전단벽 신설 공법 개요

구분	내용	
보강방법	증설내진벽	
	덧침벽	
	기존벽의 개구부 폐쇄	 * 내림벽 등으로 기둥의 취성파괴가 예상되는 경우
파괴모드	전단파괴형	· 전단벽 : 전단내력 상승
	휨 항복형	· 휨 벽 : 주변골조의 휨 항복유도
	기초부상형	· 회전벽 : 벽기초의 부상에 의한 전체골조의 내력 결정
보강목표	내진성능 증진(강성 및 강성분포, 극한내력, 변형능력, 파괴모드) · 강도 향상 (강도저항형) · 변형능력 향상 (인성저항형) · 강도, 변형능력 동시 향상 (강도, 인성저항형 보강) · 건물의 평면, 입면 강성분포를 변형 (형상지표 개선) · 건물의 수평강성 증가 (과대변형 방지)	
구조상세	벽판의 구성요소	· 현장타설 콘크리트 벽판 · P.C. 콘크리트 벽판 · 철골 판넬 · 콘크리트 블럭
	기존골조와 접합	· 전단접합 · 코터접합 · 철근용접 접합 · 강판용접 접합

(3) 가새 신설

〔표 1.6〕가새 신설 공법 개요

구분	내용
개요	- 강도저항형 내진보강은 RC 내진벽 증설이 일반적이나 중량증가로 인하여 기초 허용지력 문제발생 - 기초의 축력증가 억제책으로 기존골조내의 철골브레이스 설치
보강목표	- 강도항상형이 일반적 - RC 벽과 동등한 연성 향상효과 - 철골요소의 위치선정은 건물의 용도 및 환경상의 장애 고려
공법종류	- 틀 부착 철골보강법 - 기존 골조에 부착공법
장점	- 기초 부담 줄일 수 있음 / 현장에서 공사기간 단축할 수 있음 - 시공성이 좋음 / 개구부를 크게 할 수 있음

(4) 기둥 날개벽 추가

〔표 1.7〕기둥 날개벽 추가공법 개요

구분	내용
보강방법	- 작은 벽판, 즉 날개벽을 기둥의 한쪽 또는 양쪽에 덧붙여서 기둥의 강도 및 인성개선 - 일체화공법 : 후프근을 잘라낸 후 날개벽의 수평근을 용접하여 기존골조와 일체성 도모 - 매입식 앵커볼트 이용 공법 : 매입식 앵커 및 앵커 철물을 사용하여 날개벽에 용접 또는 P.C.판을 설치
보강목표	- 기둥의 강도 개선, 보 항복형 골조계획 및 인성개선 - 평면적, 입면적인 강성분포 개선
보강에 적합한 건물	- 전단파괴형 기둥 - 기둥의 보유내력을 증가시켜 전체 보유내력이 높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건축물 - 기둥의 항복형에서 보 항복으로 붕괴모드 변경시켜 내진성능 확보 가능한 건축물 - 기능면에서 채광과 동선관계에 의해 후 타설 벽의 설치가 불가능한 건물

(5) 보 보강

〔표 1.8〕보 보강공법 개요

구분	내용
적용대상	· 건물의 용도변경에 의한 하중증대, 보의 과대하중 작용시
보강종류	강판에 의한 방법 · 보의 하단에 강판부착 : 휨에 의한 인장강도 보강 · 보의 측면에 강판부착 : 전단강도 증가
	아라미드, 탄소섬유에 의한 방법 · 보의 하단에 아라미드, 탄소섬유부착 : 휨에 의한 인장강도 보강 · 보의 측면에 아라미드, 탄소섬유부착 : 전단강도 증가

(6) 기둥 보강

〔표 1.9〕 기둥 보강공법 개요

구분	내용
적용대상	· 건물의 용도상 벽의 증설이 곤란한 경우에 사용 · 기둥이 전단내력이 부족한 건물 · 동일 층의 기둥강성이 불균등한 건물 및 기둥에 큰 내력과 변형능력이 필요한 피로티 형식의 건물
보강목표	· 벽체에 비하여 적은 내력상승 · 기존 기둥의 전단 파괴를 막고 연성을 높이는 보강 · 휨 항복 선행형으로 조절하면 충분한 인성발휘, 연성항상형 내진보강 · 동일층의 기둥강성을
공법종류	· 용접철망 감싸기 공법 / · 용접폐쇄후 감싸기 공법 · 철판감싸기 공법 / · 띠판 감싸기 공법 · 아라미드, 탄소섬유 감싸기 공법 / · FRP 감싸기 공법 · 허리벽, 내림벽의 제거, 끊기 / · 기둥단면의 증대 · 균열부근에의 에폭시 수지주입

(7) 기초 보강

〔표 1.10〕 기초 보강공법 개요

구분	내용
보강개요	· 지진발생으로 인한 부동침하 보강 · 내진성 향상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강은 그리 흔치 않음 · 기초의 보강은 국부적인 보강이 되지 않고 대규모 공사 · 기초보강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함 (증설보강 부재로 인해 증설하중을 저감하는 방법, 기존건물을 경량화를 도모 방법)
보강방향	· 상부구조의 내진보강에 의한 하중 증대로 기초에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초 보강을 하지 않고 경량화를 도모하는 보강공법 사용 · 보강후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도의 방법을 이용, 진단의 정밀도 높여서 과대보강이 되지 않도록 함. · 보강 후 내진성능 목표치를 최저한으로 함. · 기존 방수의 경량화, 파라펫 등을 철거하여 기존 건물의 하중을 감소
보강방법	· 기초의 증설 / · 기존저판의 확대 · 말뚝을 타설하는 방법
기초보강을 실시하는 경우	· 보강에 의해 내진성능이 현저히 향상되고, 경제성도 있는 경우 · 지진으로 기초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 보강부재의 하중증가에 따른 지지력의 부족 · 인발효과가 내진성능의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경우 · 기둥 등 연직부재의 증설에 따른 기초의 증설 · 건물 증축으로 새롭게 기초를 설치하는 경우

(8) 건축물의 중량 저감

- ▶ 지진하중에 대한 성능향상이 필요할 경우 비구조재를 제거하여 가새로 치환할 수 있다. 비구조재 제거시 주요 구조부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면진 및 제진 장치의 추가

- ▶ 면진장치의 설치
- ▶ 수동 감쇠기의 설치
- ▶ 능동 감쇠기의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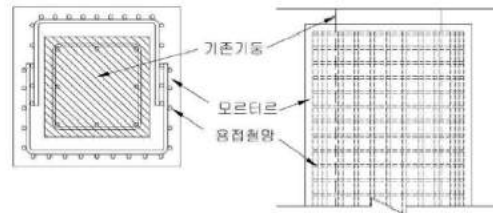
2) 부재 보강 전략

(1) 일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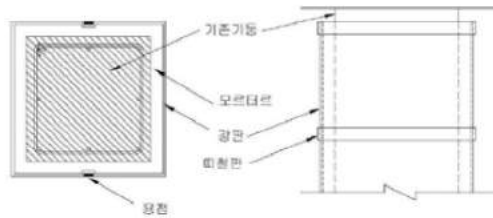
- ▶ 부재에 새로운 재료를 덧붙이거나 단면을 증대시켜 강도 및 연성도를 높이는 내진성능 향상방법으로서, 건물의 강도 요구량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경우나 시스템 수준의 내진성능 향상방법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한다.

(2) 기존 부재에 덧씌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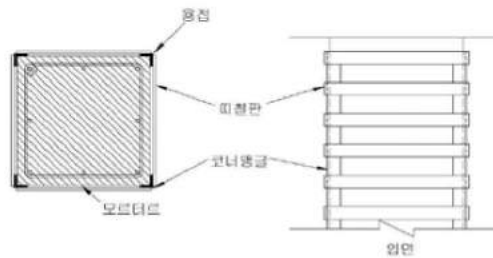
- ▶ 기둥에 용접철망 감기
- ▶ 기둥에 용접폐쇄형 후프 감기
- ▶ 기둥에 철판 감기
- ▶ 기둥에 띠철판 감기
- ▶ 기둥의 아라미드, 탄소섬유보강
- ▶ 보의 강판보강
- ▶ 보의 아라미드, 탄소섬유보강
- ▶ 기존벽에 콘크리트 타설하기
- ▶ 기존벽의 강판보강
- ▶ 슬래브의 두께보강
- ▶ 슬래브 접합부 보강



(a) 용접철망 감기 공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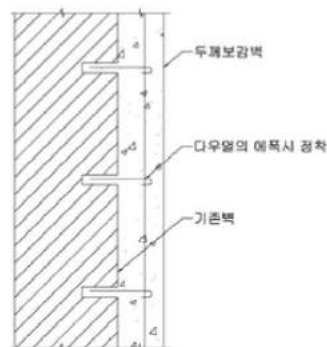


(b) 강판감기 공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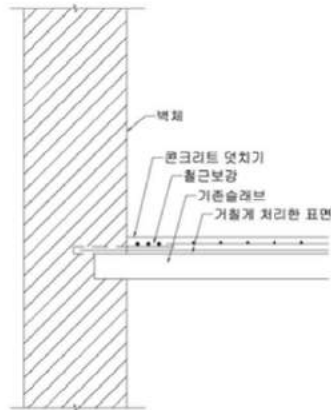


(c) 띠철판 감기 공법

〈그림 1.4〉 기둥의 내진성능 향상 공법



〈그림 1.5〉 철근콘크리트 전단벽의 두께보강 공법



〈그림 1.6〉 슬래브 두께보강 공법

(3) 철근상세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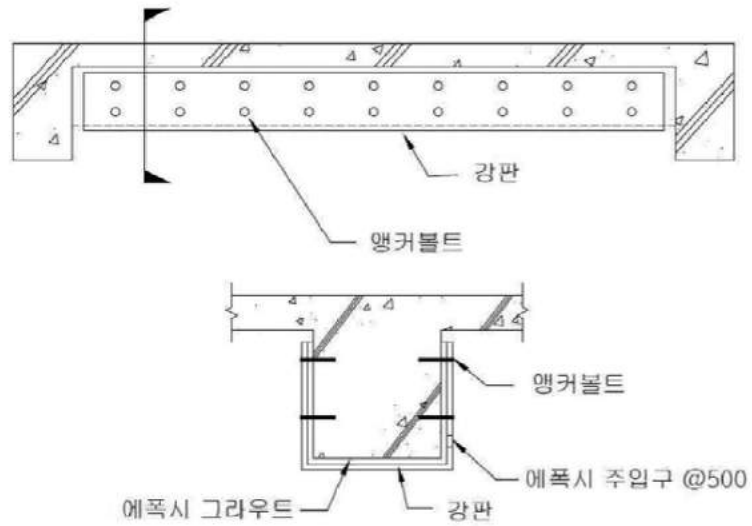
- ▶ 기둥이나 보의 피복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철근의 상세를 변경한 후 콘크리트를 새로 타설하여 강도와 연성을 향상시킨다. 이 경우 콘크리트 제거시 중심부의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조사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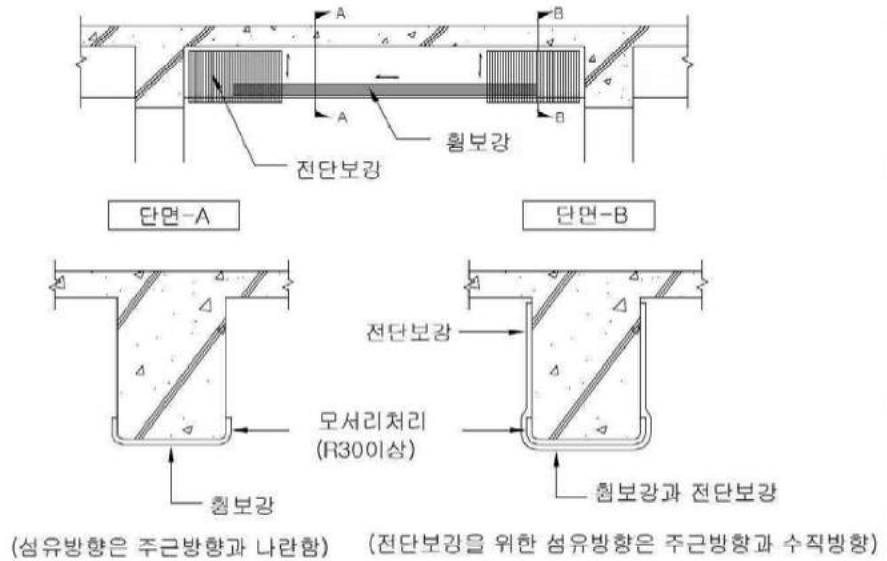
- ▶ 기존 건축물을 정확히 해석/평가하고 내진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용된 재료의 역학적 성질과 부재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량화시켜야 한다.
- ▶ 설계자는 시공 당시 재료특성과 부재성질에 대하여 설계 및 시공 도서를 통하여 조사를 수행한 후, 현장재료에 대한 물성실험을 실시한다.

(5) 휨 설계

- ▶ 휨 설계 및 해석은 실제 부재의 역학적인 거동을 고려하여 변형을 적합조건 및 힘의 평형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 이질 재료 간에는 미끄러짐이나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합되어야 한다. 신·구 재료가 완전 접착이 된 경우에는 모든 재료가 일체로 거동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부재의 강도를 산정할 수 있다.
- ▶ 보강방법으로는 섬유복합체 보강, 강판 보강, 증타 보강이 있다.



〈그림 1.7〉 보의 내진성능 향상 공법(강판보강법)



〈그림 1.8〉 보의 내진성능 향상 공법(아라미드, 탄소섬유보강법)

(6) 압축 설계

- ▶ 힘과 압축을 동시에 받는 부재의 내력은 휨 모멘트와 압축력의 상호작용을 고려한다.
- ▶ 압축부재의 설계 및 해석은 변형률 적합조건 및 힘의 평형조건을 만족하도록 한다.
- ▶ 신·구재료가 완전접착이 된 경우에는 모든 재료가 일체로 거동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부재의 압축내력을 산정할 수 있다.
- ▶ 보강방법으로는 섬유복합체 보강, 강판 보강, 증타 보강이 있다.

(7) 전단 설계

- ▶ 각 재료의 전단성능을 합하여 부재의 전단내력으로 산정할 수 있다.
- ▶ 전단보강을 하는 경우에도 철근을 포함하는 보강재의 공칭전단강도는 $\frac{2}{3} \sqrt{f_{ck}} b_w d (N)$ 를 초과할 수 없다.
- ▶ 보강방법으로는 섬유복합체 보강, 강판 보강이 있다.

(8) 기존재료와 보강재료의 접합

- ▶ 신·구 콘크리트 사이의 접합
- ▶ 합성수지 접합

(9) 기초 보강

- ▶ 기초의 신설, 기존 기초의 보강 및 지반을 개량한 경우 하중이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부등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철골구조의 내진성능 향상 방법

1) 시스템 보강 전략

▶ 부재 추가

- 보, 기둥, 전단벽 등의 부재를 추가하여 강도, 강성도, 연성도를 보강한다.

▶ 골조 형식 변경

- 반응수정계수를 결정하는 골조형식을 변경하여 보강한다. 즉, 가새골조를 이중골조 방식으로, 보통모멘트골조를 연성 모멘트골조 방식 또는 이중골조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 경우 해당 방식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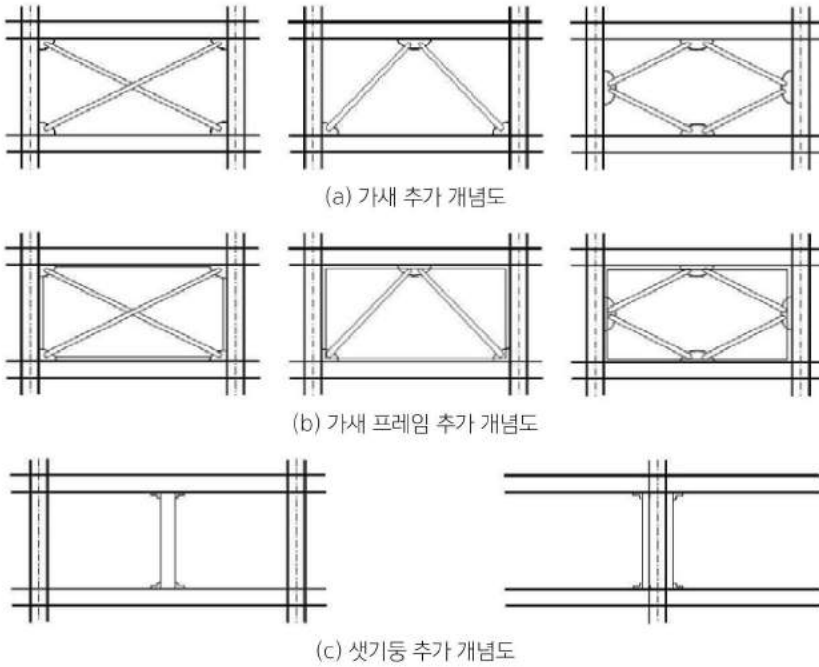
▶ 다이아프램 바닥구조 보강

- 지진하중에 의한 횡력이 하부구조로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바닥구조가 다이아프램 역할을 하는지 검토하며, 필요시 보강하여야 한다.

- ▶ 시스템 보강 방법으로는 가새 추가 또는 가새 단면 보강, 내부 가새 프레임 추가, 전단벽 추가, 기둥 추가, 단순접합을 모멘트접합으로 보강, 보통모멘트 골조를 연성모멘트골조로 보강, 바닥구조 다이아프램 보강, 건축물의 중량 저감, 진 및 제진장치의 추가 등이 있다.

2) 부재 보강 전략

- ▶ 부재 보강방법으로는 부재 치환, 단면형상 보강, 좌굴 방지 가새 설치, 스티프너 설치 등이 있다.



〈그림 1.9〉 가새 보강방법

3) 접합부 보강 전략

- ▶ 일반적으로 용접보다는 고력 볼트로 시공하고, 적절한 볼트 간격을 유지하며, 불연속성이 있는 부분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 접합부 보강 방법으로는 용접 추가, 고력볼트 추가, 패널존 보강방법이 있다.

4) 주각부 보강

- ▶ 증가된 부재력을 기초로 전달
 - 주각부는 지진하중의 증가 또는 상부 골조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기둥에 증가된 부재력, 즉 축력과 모멘트, 전단력을 기초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 주각부 전체적인 검토와 보강

- 주각부를 구성하는 모든 소재, 즉 베이스 플레이트의 휨 내력, 앵커볼트의 인장내력 및 전단내력, 기초판의 지압내력이 확보되었는지를 검토하여 필요시 보강하여야 한다.

▶ 주각부는 베이스 플레이트, 앵커볼트로 보강한다.

5) 특수부위 보수

▶ 녹 제거와 방청 처리

▶ 피로 균열 부위 보강

▶ 소성변형 부위 보강

▶ 라멜라 테어링 가능 부위 보강

바. 비보강 조적조의 내진성능 향상 방법

1) 시스템 보강 전략

▶ 철근콘크리트 부재를 사용한 시스템 수준의 내진보강전략을 따른다.

▶ 강재를 사용한 시스템 수준의 내진보강전략을 따른다.

2) 부재 보강 전략

▶ 철근콘크리트 부재를 사용한 부재 수준의 내진보강전략을 따른다.

▶ 강재를 사용한 부재 수준의 내진보강전략을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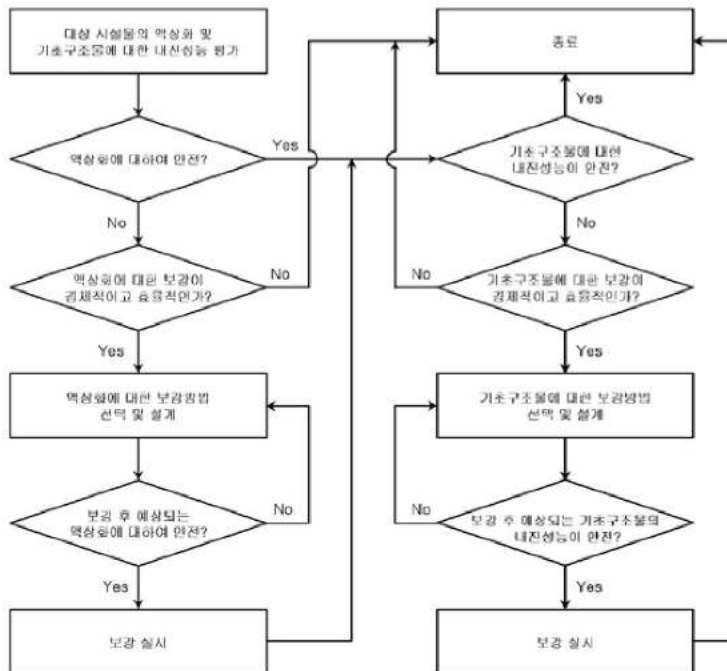
▶ 합성섬유를 사용하여 부재 수준의 내진보강을 실시하는 경우, 철근콘크리트를 따른다.

2. 기초구조물의 내진보강

가. 방법

- ▶ 기초-지반의 내진성능 향상은 먼저 액상화에 대해 안정성 검토를 실시한다. 안정성 검토 방법은 “기존 시설물의 기초 및 지반의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참조한다. 액상화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보강을 실시하고 기초 안정성을 평가한다. 액상화에 대하여 지반 보강을 실시할 경우 기초 내진성능도 증진될 수 있으므로 보강 후 기초의 내진성능을 검토한다. 이때 안정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각 세부기초구조물에 대하여 보강방법을 결정하고 보강 후 예상되는 안정성을 재검토한다. 기초 및 지반의 내진성능 향상 절차는 다음과 같다. 액상화에 대한 내진성능향상 방법은 본 보고서 액상화 내진보강의 액상화편을 참조하여 수행한다.

나. 절차



〈그림 2.1〉 기초 및 지반의 내진성능 향상 절차

다. 내진성능 향상 방법

- ▶ 구조물 종류별로 세부적인 보강방법이 있으며, 다음의 표에 의한 보강공법을 적용하여 내진성능을 향상시킨다.

(표 2.1) 구조물 종류별 세부 보강공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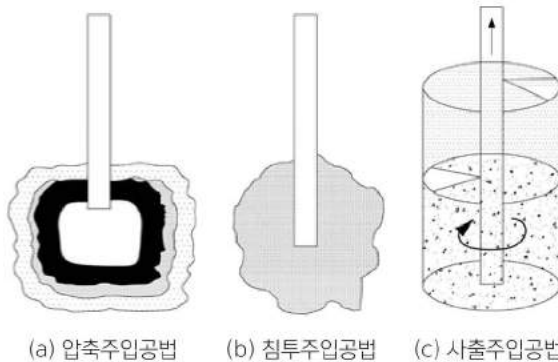
구 분	향상방법	적용 공법
직접기초	기초개량공법	· 압축주입공법 · 침투주입공법 · 차출주입공법
	기초단면 확대공법	· 확대기초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방법
	콘크리트 캡설치공법	· 일정 두께를 갖는 콘크리트 캡(concrete cap)을 설치하는 방법
	언더피닝공법	· 기존의 독립 또는 확대기초 아래 및 주변에 일정깊이(지지력이 양호한 부분, 암반)까지 마이크로파일을 설치
	앵커 정착공법	· 앵커에 의한 정착으로 동적하중에 대한 안정성을 증대
	기초형식 변경	· 기초 또는 기초형식의 전면 교체
케이슨기초	지반개량 공법	· 압축주입공법 · 침투주입공법 · 차출주입공법
	락앵커 정착공법	· 케이슨기초를 락앵커로 정착함
	기초방호공 설치공법	· 세굴에 의한 지지력 부족시 적용
교대기초	배면토압 감소공법	· 뒤채움 상부지반을 경량의 지반재료(슬래그, 기포혼합 처리토 등)로 치환하거나 뒤채움
	침하 슬래브 설치공법	· 침하 슬래브(settlement slab)를 적용
	앵커 설치공법	· 앵커(soil anchor)를 설치
	토사교반공법	· 그라우팅 또는 토사교반공법
	교대의 중량화 공법	· 교대 자체의 중량을 증가
	기초특성에 따른 보강	· 교대의 기초특성에 따라 그 기초 형식에 해당하는 보강방법
말뚝기초	지반개량 공법	· 압축주입공법 · 침투주입공법 · 차출주입공법
	말뚝캡 보강공법	· 말뚝캡의 강성을 증가
	말뚝추가 공법	· 새로운 말뚝을 추가로 설치하여 보강
	앵커 정착 공법	· 기초지반에 이르는 앵커를 정착
	언더피닝 공법	· 마이크로파일을 이용한 언더피닝공법

1) 직접기초

- ▶ 기존 교각은 내진성능 평가 방법에 따라 내진성능 평가를 먼저 시행한 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교각의 휨 연성, 전단 및 휨 강도 등 내진성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1) 지반개량 공법

- ▶ 흙의 제거, 치환방법 및 진동다짐공법 등은 구조물 침하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초 지지력(bearing capacity)을 향상시키는 공법에는 제한이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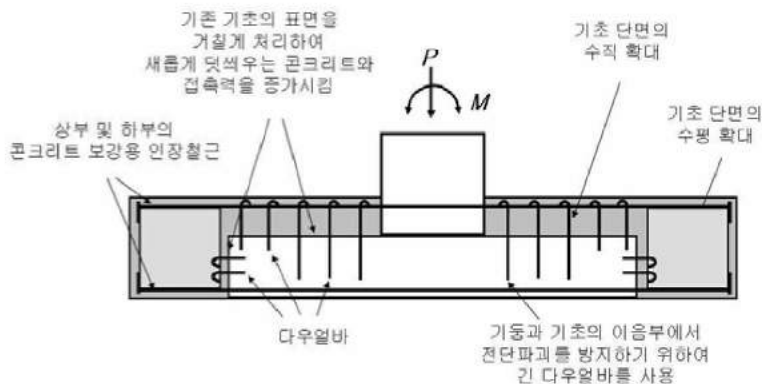


〈그림 2.2〉 다양한 지반개량(주입)공법의 개요도

(2) 기초단면 확대공법

- ▶ 직접기초의 단면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초의 두께를 증가시키거나 기초와 지반이 접촉하는 면적을 증가시켜야 하며, 두 가지 모두를 적용할 수도 있다. 설계 기준에 안전한지를 먼저 검토한 후 단면 확대를 실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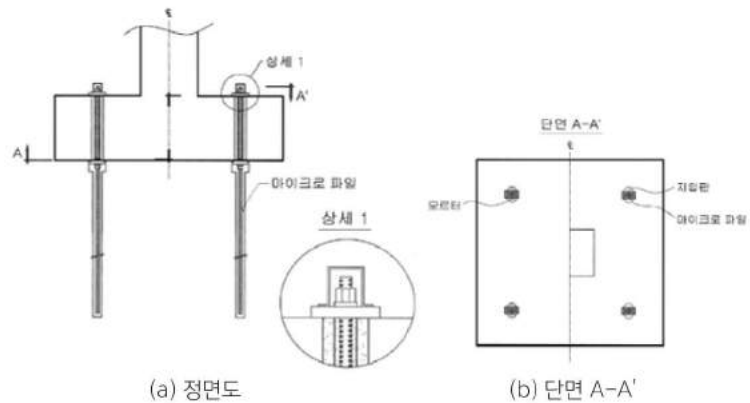
〈그림 2.3〉은 기초판의 확대 및 단면보강의 예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3〉 기초판의 확대 및 단면보강

(3) 언더피닝 공법

- ▶ 지진하중과 같은 동적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기존의 교각이나 건물의 독립기초 및 확대 기초콘크리트 아래에 일정 깊이까지 마이크로 파일을 설치하는 언더피닝 공법을 통하여 지지력 및 수평저항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림 2.4>에 직접 기초콘크리트에서의 언더피닝 공법의 개요를 나타내었다.
- ▶ 기존의 기초콘크리트에 고강도 강봉을 기초콘크리트 하단에서 상단까지 관통시키고 기초콘크리트 하단에서 강봉에 지지판과 고정너트를 체결하여 고정 정착단을 만들고, 기초콘크리트 상단에서 강봉을 긴장하여 정착시킴으로써 콘크리트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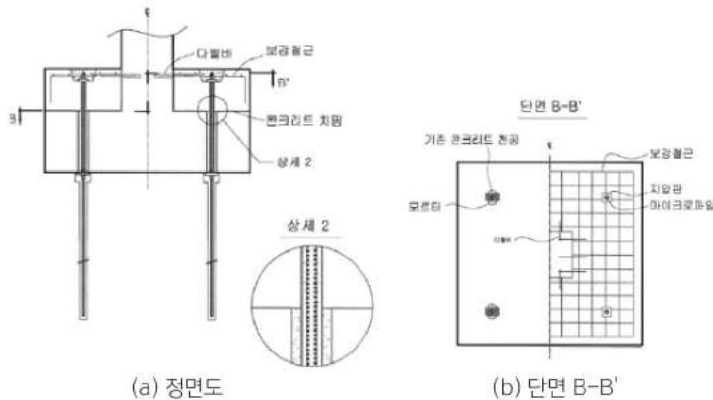
<그림 2.4> 언더피닝에 의한 직접기초의 보강

(4) 전도방지 공법

- ▶ 지진하중과 같은 동적하중으로 기존 기초콘크리트의 전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락앵 카 타이다운(lock anchor tie-down)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 ▶ 한편 기초 지반이 토사 등의 지내력이 약한 지반일 경우, 지진하중에 대한 지반 지지력 부족 및 기존 기초콘크리트의 전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이크로파일로 언더피닝 공법에 서와 같은 방법으로 보강한다.

(5) 콘크리트 캡 설치 공법

- ▶ 기존 콘크리트 재질의 성능이 저하 되었거나 지진의 동적하중이 과다하여 기존 콘크리트의 기능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존 기초콘크리트 상면 위에 보강철근을 설치한 신설 보강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기초콘크리트 아래에 일정 깊이까지 마이크로파일을 설치하는 언더피닝 공법을 이용할 수 있다.
- ▶ 기존 및 신설 보강콘크리트를 관통하고 암반 아래까지 천공하여 고강도 강봉을 삽입하고 직접 기초콘크리트 하단에서 강봉에 지지판과 고정너트로 고정하여 신설 콘크리트 상단에서 강봉을 인장하여 정착시킨다. <그림 2.5>에 캡 콘크리트를 보강한 직접 기초콘크리트에서의 언더피닝 공법 개요를 나타내었다.



<그림 2.5> 콘크리트 캡 추가 설치에 의한 직접기초의 보강

(6) 기초형식 변경

- ▶ 대형구조물이 아닌 경우, 즉 일반 저층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기초의 손상이 심하거나 기술적 인 이유로 보수·보강이 어려울 경우에 유압잭으로 상부구조물을 들어올린 상태에서 기존의 기초를 일부분 제거하고 새로운 기초로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직접기초로써 지지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말뚝기초로 기초형식 자체를 변경하여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

2) 케이슨기초

- ▶ 케이슨기초의 보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동적하중 등에 의해 발생하는 변위를 최소화하여 상부구조물의 파괴를 방지하는 것이다.
- ▶ 케이슨기초는 지지면과의 접지면적이 넓고 대부분 단단한 지지면 위에 놓이므로 연직지지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기초 단면적이 크기 때문에 횡방향 하중에 대한 저항력이 큰 기초구조물이다. 그러나 케이슨기초를 사용하는 상부구조물은 매우 중요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지진 하중 등에 의해 발생하는 변위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표 2.2) 케이슨기초 보강공법

공법명	공법개요
지반개량 공법	직접기초와 동일한 공법으로 보수보강을 실시한다.
락앵커 정착공법	케이슨기초를 락앵커로 정착함으로써 저항력 증가 및 변위 감소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공법이다.
기초방호공 설치공법	세굴에 의한 지지력 부족시 적용하는 공법이다.

(1) 지반개량 공법

- ▶ 케이슨기초의 보강은 부재 자체의 보강과 기초가 위치한 인접지반에 대한 보강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재 자체의 보강이란 오히려 보강작업이 더 힘들고 경제적 부담이 커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기초인접지반에 대한 보강이 경제적이라 할 수 있다.

(2) 락앵커 정착 공법

- ▶ 케이슨기초는 대부분 단단한 암반 위에 놓이기 때문에 락앵커를 설치하기가 용이하다. 지진하중 등이 작용하면 앵커의 인발저항에 의하여 미끄러짐과 양압력에 대한 저항력이 증가하고 수평 및 전도에 대한 변위가 억제된다.

(3) 기초방호공 설치 공법

- ▶ 케이슨기초가 교량의 기초로 사용되는 경우 세굴에 의해서 지지력이 부족해지면 기초 방호공에 의해 지반을 보강하여 지지력을 높일 수 있다.

3) 교대기초

- ▶ 기존 교량에서 상황에 따라 지진시 교대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측하고 이를 고려하여 파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공법을 결정한다.
- ▶ 액상화에 의한 파괴 또는 경간 끝단에서의 지지력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교대의 파괴는 구조물의 붕괴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따라서 내진에 의한 대책공법도 교대 자체의 강성을 증가시키기보다는 교대와 교량구조물과의 연결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지진시 교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교대의 과도한 수평변위 또는 교대 뒤택움재의 침하로 인한 교량구조물과의 단절 가능성이다. 더구나 교대 베어링에서 상대적인 변위를 제한하기 위해 사용되는 구속장치(restrainer)는 훨씬 큰 교대 작용힘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지진시 교대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측하고 이를 고려하여 파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공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2.3) 교대기초 보강공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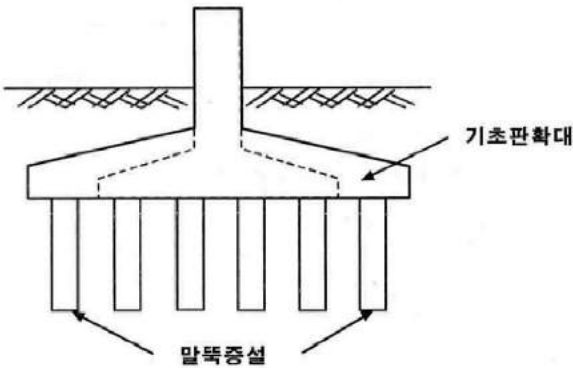
공법명	공법개요
배면토압 감소공법	· 뒤택움 상부지반을 경량의 지반재료(슬래그, 기포혼합 처리토 등)로 치환하거나, 뒤택움 지반 전체를 마찰각이 큰 석재 또는 사전혼합처리토로 치환하거나, 뒤택움 지반을 고결하여 강도를 증가시키는 방법 등으로 교대에 작용하는 횡방향 작용력을 감소시킴으로써 교대에 발생하는 과도한 변위를 방지할 수 있다.
침하 슬래브 설치공법	· 교대 뒤택움재(abutment fills)의 침하에 의한 교량과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하 슬래브(settlement slab)를 적용할 수 있다.
앵커 설치공법	· 교대의 수평변위로 인한 교량구조물과의 단절은 앵커(soil anchor)를 설치하여 방지할 수 있다.
토사교반공법	· 그라우팅 또는 토사교반공법에 의하여 기초지반의 지지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교대의 중량화 공법	· 교대 상부 또는 측면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교대 자체의 중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바닥면과의 마찰특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기초특성에 따른 보강	· 교대의 기초특성에 따라 그 기초 형식에 해당하는 보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교대의 경우 뒤택움 지반에서 가해지는 작용력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직접기초 또는 말뚝기초로 분류할 수 있다.

4) 말뚝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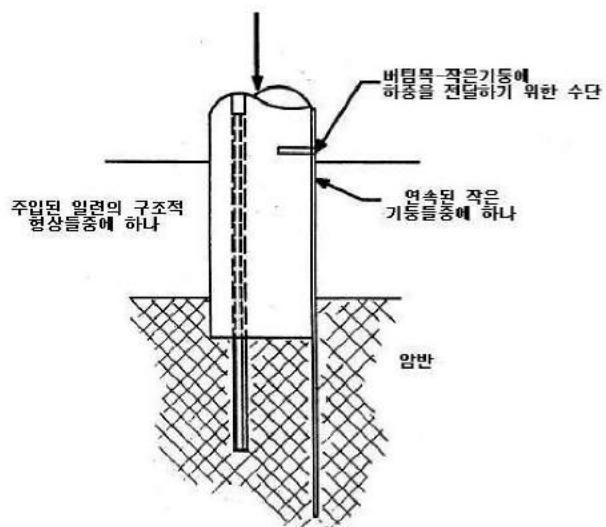
▶ 말뚝기초의 보강공법에는 다음과 같은 공법이 있으며, 시공현장에 따라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을 채택하여 적용한다.

(표 2.4) 말뚝기초 보강공법

공법명	공법개요
지반개량 공법	· 그라우팅 또는 다짐말뚝과 같은 방법으로 기초에 인접한 지반의 강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말뚝기초-지반 시스템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말뚝캡 보강공법	· 말뚝캡의 강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내진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보강방법은 직접기초에 대한 보강방법에서 콘크리트 캡 설치공법과 언더피닝 공법을 참조한다.
말뚝추가 공법	· 기존의 말뚝기초가 설계지진에 대하여 지지력 및 수평변위 등이 내진성에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새로운 말뚝을 추가로 설치하여 보강할 수 있다.
앵커 정착 공법	· 말뚝캡으로부터 기초지반에 이르는 앵커를 정착하면 앵커의 인발저항에 의하여 기초의 횡방향 저항력이 증가한다.
언더피닝 공법	· 기존의 말뚝의 직경이 큰 경우에는 마이크로파일을 이용한 언더피닝 공법으로 말뚝의 지지력 및 수평저항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림 2.6〉 말뚝의 추가 및 말뚝캡의 확대



〈그림 2.7〉 언더피닝 공법